제주역사 자료총서 27

承政院日記 濟州記事Ⅶ

- 正祖代(1776~1781) -

(下)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정치, 행정, 외교, 일상의 기록을 총망라한 귀중한 사료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산입니다. 국왕의 재위 기간에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전해왔기에 그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대부분 초서체의 한문으로 쓰여 있어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려워 빠른 번역 작업이 필요합니다.

《승정원일기》 번역은 단순히 역사 사료의 소개에 머물지 않고 조선시대 지역의 사회·문화, 행정, 역사 등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사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작업입니다.

이번엔 발간하는《승정원일기》정조대(1776-1781) 제주기사 자료집은 정조 즉위년부터 약 6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의 제주 관련 기사 1,334건을 발췌하여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고 기사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주 목민관 등 인사 임명, 마정 및 진상에 관한 기록, 재해와 진휼, 군제 관련 폐단, 제주 표류·표도인 송환 문제, 시재 운영 및 제주 인재 등용 문제 등 당시 제주 사회 상황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정조가 직접 제주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주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기사가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승정원일기》에 담긴 생생한 기록들은 당시 국왕으로서 정조가 제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통치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고 조선 후기 제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탐구의 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 일기 원문을 발췌하느라 애쓴 고수미, 노우정 선생님과 늘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힘써주신 문숙자,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문과 주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하느라 애쓴 우리 센터 임승희, 김우리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출간하기까지 오랜 시간 편집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일신옵셋인쇄사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자료집 후속편 발간과 더불어 제주의 중요한 사료 발굴과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듯한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2024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 일러두기

1. 본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승정원 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발간하고 있다.

3. 본서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76~1781)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제주기사는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문숙자: 1776년(정조 즉위년) 4월 1일 ~ 1777년(정조 1) 4월 26일
   2) 백종진: 1777년(정조 1) 5월 5일 ~ 1779년(정조 3) 10월 28일
   3) 오창명: 1779년(정조 3) 11월 2일 ~ 1781년(정조 5) 12월 21일

8. 《승정원일기》 정조대(1776~1781) 제주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제어별 중복된 기사를 포함하면, 2,386건이나 1,052건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총 1,334건에 대해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 분량: 총 1,334건

주제어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비고
건수	850건	151건	304건	21건	8건	1,334건	중복 기사 제외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건)
정조 즉위년 (1776)	97	78(24)	222(63)	4(3)	4(1)	405(91)
정조 1년 (1777)	100	65(23)	169(81)	66(58)	0	400(162)
정조 2년 (1778)	148	90(50)	159(108)	112(107)	1(1)	510(266)
정조 3년 (1779)	179	22(19)	112(111)	54(52)	0	367(182)
정조 4년 (1780)	248	4(4)	193(188)	127(126)	2(1)	574(319)
정조 5년 (1781)	78	21(9)	14(14)	11(7)	6(2)	130(32)
소계	850	280(129)	869(565)	374(353)	13(5)	2,386(1,052) /1,334

목 차

발 간 사 ····· i
일러두기 ····· iii

正祖

1779

3年 1月 7日(壬辰) ····· 944
3年 1月 7日(壬辰) ····· 945
3年 1月 8日(癸巳) ····· 947
3年 1月 8日(癸巳) ····· 948
3年 1月 9日(甲午) ····· 949
3年 1月 9日(甲午) ····· 950
3年 1月 13日(戊戌) ····· 953
3年 1月 14日(己亥) ····· 955
3年 1月 15日(庚子) ····· 956
3年 1月 16日(辛丑) ····· 957
3年 1月 16日(辛丑) ····· 959
3年 1月 17日(壬寅) ····· 961
3年 1月 28日(癸丑) ····· 962
3年 1月 29日(甲寅) ····· 963
3年 2月 8日(癸亥) ····· 965
3年 2月 12日(丁卯) ····· 966
3年 2月 21日(丙子) ····· 967
3年 2月 21日(丙子) ····· 968
3年 2月 21日(丙子) ····· 970
3年 2月 25日(庚辰) ····· 971
3年 3月 8日(壬辰) ····· 972
3年 3月 9日(癸巳) ····· 973
3年 3月 11日(乙未) ····· 975
3年 3月 15日(己亥) ····· 976
3年 3月 22日(丙午) ····· 978
3年 3月 24日(戊申) ····· 979
3年 3月 27日(辛亥) ····· 980
3年 3月 28日(壬子) ····· 982
3年 4月 1日(丙辰[乙卯]) ····· 983
3年 4月 2日(丁巳[丙辰]) ····· 984
3年 4月 3日(戊午[丁巳]) ····· 985
3年 4月 4日(戊午[己未]) ····· 986
3年 4月 9日(癸亥) ····· 988
3年 4月 11日(乙丑) ····· 989
3年 4月 17日(辛未) ····· 990
3年 4月 19日(甲戌[癸酉]) ····· 991
3年 4月 19日(甲戌[癸酉]) ····· 992
3年 4月 19日(甲戌[癸酉]) ····· 993
3年 4月 20日(乙亥[甲戌]) ····· 994
3年 4月 23日(戊寅[丁丑]) ····· 995
3年 4月 23日(戊寅[丁丑]) ····· 996
3年 4月 23日(戊寅[丁丑]) ····· 998
3年 4月 24日(己卯[戊寅]) ····· 999
3年 4月 25日(庚辰[己卯]) ····· 1000
3年 4月 27日(壬午[辛巳]) ····· 1001
3年 4月 28日(癸未[壬午]) ····· 1002
3年 4月 29日(甲申[癸未]) ····· 1003
3年 5月 2日(丙戌[乙酉]) ····· 1004
3年 5月 2日(丙戌[乙酉]) ····· 1005
3年 5月 2日(丙戌[乙酉]) ····· 1006
3年 5月 22日(乙巳) ····· 1007
3年 6月 1日(癸丑) ····· 1008
3年 6月 6日(戊午) ····· 1009
3年 6月 6日(戊午) ····· 1010

3年 6月 6日(戊午) ····· 1011
3年 6月 12日(甲子) ····· 1012
3年 6月 13日(乙丑) ····· 1014
3年 6月 13日(乙丑) ····· 1015
3年 6月 14日(丙寅) ····· 1016
3年 6月 14日(丙寅) ····· 1017
3年 6月 14日(丙寅) ····· 1018
3年 6月 15日(丁卯) ····· 1020
3年 6月 19日(辛未) ····· 1021
3年 6月 25日(丁丑) ····· 1022
3年 6月 28日(庚辰) ····· 1023
3年 6月 30日(壬午) ····· 1025
3年 6月 30日(壬午) ····· 1026
3年 6月 30日(壬午) ····· 1029
3年 7月 1日(癸未) ····· 1031
3年 7月 1日(癸未) ····· 1032
3年 7月 1日(癸未) ····· 1033
3年 7月 6日(戊子) ····· 1034
3年 7月 7日(己丑) ····· 1036
3年 7月 10日(壬辰) ····· 1037
3年 7月 10日(壬辰) ····· 1038
3年 7月 12日(甲午) ····· 1039
3年 7月 14日(丙申) ····· 1040
3年 7月 20日(壬寅) ····· 1041
3年 7月 22日(甲辰) ····· 1043
3年 7月 22日(甲辰) ····· 1044
3年 7月 22日(甲辰) ····· 1045
3年 7月 23日(乙巳) ····· 1046
3年 7月 23日(乙巳) ····· 1047
3年 7月 23日(乙巳) ····· 1048
3年 7月 24日(丙午) ····· 1049
3年 7月 25日(丁未) ····· 1051
3年 7月 26日(戊申) ····· 1053
3年 7月 26日(戊申) ····· 1054
3年 7月 26日(戊申) ····· 1055
3年 7月 27日(己酉) ····· 1056
3年 7月 27日(己酉) ····· 1057
3年 7月 27日(己酉) ····· 1058
3年 7月 28日(庚戌) ····· 1059
3年 7月 28日(庚戌) ····· 1060
3年 7月 29日(辛亥) ····· 1061
3年 7月 29日(辛亥) ····· 1062
3年 7月 29日(辛亥) ····· 1063
3年 8月 15日(丙寅) ····· 1064
3年 8月 19日(庚午) ····· 1066
3年 8月 23日(甲戌) ····· 1067
3年 8月 23日(甲戌) ····· 1068
3年 8月 23日(甲戌) ····· 1071
3年 8月 25日(丙子) ····· 1073
3年 8月 27日(戊寅) ····· 1074
3年 8月 27日(戊寅) ····· 1075
3年 8月 27日(戊寅) ····· 1076
3年 8月 28日(己卯) ····· 1077
3年 8月 29日(庚辰) ····· 1078
3年 9月 5日(丙戌) ····· 1079
3年 9月 24日(癸巳[乙巳]) ····· 1080
3年 10月 9日(己未) ····· 1082
3年 10月 9日(己未) ····· 1083
3年 10月 10日(庚申) ····· 1085
3年 10月 10日(庚申) ····· 1086
3年 10月 10日(庚申) ····· 1087
3年 10月 11日(辛酉) ····· 1089
3年 10月 11日(辛酉) ····· 1090
3年 10月 11日(辛酉) ····· 1091
3年 10月 12日(壬戌) ····· 1092
3年 10月 12日(壬戌) ····· 1093
3年 10月 12日(壬戌) ····· 1094
3年 10月 13日(癸亥) ····· 1095

3年 10月 13日(癸亥) ····· 1096
3年 10月 13日(癸亥) ····· 1097
3年 10月 14日(甲子) ····· 1098
3年 10月 14日(甲子) ····· 1099
3年 10月 14日(甲子) ····· 1100
3年 10月 15日(乙丑) ····· 1101
3年 10月 18日(戊辰) ····· 1102
3年 10月 18日(戊辰) ····· 1103
3年 10月 18日(戊辰) ····· 1104
3年 10月 19日(己巳) ····· 1105
3年 10月 20日(庚午) ····· 1106
3年 10月 21日(辛未) ····· 1108
3年 10月 28日(戊寅) ····· 1109
3年 11月 2日(壬午) ····· 1110
3年 11月 2日(壬午) ····· 1111
3年 11月 2日(壬午) ····· 1113
3年 11月 3日(癸未) ····· 1114
3年 11月 4日(甲申) ····· 1115
3年 11月 4日(甲申) ····· 1116
3年 11月 4日(甲申) ····· 1117
3年 11月 9日(己丑) ····· 1118
3年 11月 9日(己丑) ····· 1119
3年 11月 9日(己丑) ····· 1120
3年 11月 11日(辛卯) ····· 1121
3年 11月 11日(辛卯) ····· 1122
3年 11月 11日(辛卯) ····· 1123
3年 11月 12日(壬辰) ····· 1124
3年 11月 12日(壬辰) ····· 1125
3年 11月 12日(壬辰) ····· 1126
3年 11月 17日(丁酉) ····· 1127
3年 11月 18日(戊戌) ····· 1128
3年 11月 24日(甲辰) ····· 1129
3年 11月 24日(甲辰) ····· 1130
3年 11月 24日(甲辰) ····· 1131
3年 11月 25日(乙巳) ····· 1132
3年 11月 25日(乙巳) ····· 1133
3年 11月 25日(乙巳) ····· 1134
3年 11月 26日(丙午) ····· 1135
3年 11月 26日(丙午) ····· 1136
3年 11月 26日(丙午) ····· 1137
3年 11月 27日(丁未) ····· 1138
3年 11月 27日(丁未) ····· 1139
3年 11月 27日(丁未) ····· 1140
3年 11月 28日(戊申) ····· 1141
3年 11月 30日(庚戌) ····· 1142
3年 11月 30日(庚戌) ····· 1143
3年 11月 30日(庚戌) ····· 1144
3年 12月 1日(辛亥) ····· 1145
3年 12月 2日(壬子) ····· 1146
3年 12月 2日(壬子) ····· 1147
3年 12月 2日(壬子) ····· 1148
3年 12月 9日(辛酉[己未]) ····· 1149
3年 12月 10日(庚申) ····· 1151
3年 12月 10日(庚申) ····· 1152
3年 12月 12日(甲子[壬戌]) ····· 1154
3年 12月 12日(甲子[壬戌]) ····· 1155
3年 12月 12日(甲子[壬戌]) ····· 1156
3年 12月 15日(丁卯[乙丑]) ····· 1157
3年 12月 19日(辛未[己巳]) ····· 1159
3年 12月 19日(辛未[己巳]) ····· 1160
3年 12月 25日(丁丑[乙亥]) ····· 1161
3年 12月 25日(丁丑[乙亥]) ····· 1162
3年 12月 26日(戊寅[丙子]) ····· 1163
3年 12月 27日(己卯[丁丑]) ····· 1164

1780

4年 1月 3日(壬午) ····· 1168

4年 1月 8日(丁亥) ····· 1169
4年 1月 10日(己丑) ····· 1170
4年 1月 11日(庚寅) ····· 1172
4年 1月 11日(庚寅) ····· 1173
4年 1月 11日(庚寅) ····· 1174
4年 1月 15日(甲午) ····· 1175
4年 1月 17日(丙申) ····· 1177
4年 1月 18日(丁酉) ····· 1178
4年 1月 22日(辛丑) ····· 1179
4年 1月 22日(辛丑) ····· 1180
4年 1月 22日(辛丑) ····· 1181
4年 1月 23日(壬寅) ····· 1182
4年 1月 24日(癸卯) ····· 1184
4年 1月 24日(癸卯) ····· 1185
4年 1月 24日(癸卯) ····· 1186
4年 1月 25日(甲辰) ····· 1187
4年 1月 25日(甲辰) ····· 1188
4年 1月 25日(甲辰) ····· 1189
4年 1月 26日(乙巳) ····· 1190
4年 1月 27日(丙午) ····· 1192
4年 1月 28日(丁未) ····· 1195
4年 2月 4日(癸丑) ····· 1197
4年 2月 4日(癸丑) ····· 1198
4年 2月 11日(庚申) ····· 1200
4年 2月 11日(庚申) ····· 1201
4年 2月 11日(庚申) ····· 1202
4年 2月 12日(辛酉) ····· 1203
4年 2月 13日(壬戌) ····· 1204
4年 2月 14日(癸未) ····· 1206
4年 2月 18日(丁卯) ····· 1207
4年 2月 18日(丁卯) ····· 1208
4年 2月 18日(丁卯) ····· 1209
4年 2月 19日(戊辰) ····· 1210
4年 2月 20日(己巳) ····· 1212
4年 2月 21日(庚午) ····· 1214
4年 2月 25日(甲戌) ····· 1215
4年 2月 25日(甲戌) ····· 1216
4年 2月 25日(甲戌) ····· 1217
4年 2月 26日(乙亥) ····· 1218
4年 2月 26日(乙亥) ····· 1219
4年 2月 26日(乙亥) ····· 1220
4年 2月 27日(丙子) ····· 1221
4年 2月 27日(丙子) ····· 1222
4年 2月 27日(丙子) ····· 1223
4年 2月 29日(戊寅) ····· 1224
4年 2月 29日(戊寅) ····· 1225
4年 2月 29日(戊寅) ····· 1226
4年 3月 3日(壬午) ····· 1228
4年 3月 7日(丙戌) ····· 1230
4年 3月 7日(丙戌) ····· 1231
4年 3月 7日(丙戌) ····· 1232
4年 3月 14日(癸巳) ····· 1233
4年 3月 14日(癸巳) ····· 1234
4年 3月 14日(癸巳) ····· 1235
4年 3月 14日(癸巳) ····· 1236
4年 3月 14日(癸巳) ····· 1237
4年 3月 15日(甲午) ····· 1238
4年 3月 15日(甲午) ····· 1239
4年 3月 15日(甲午) ····· 1240
4年 3月 15日(甲午) ····· 1241
4年 3月 17日(丙申) ····· 1242
4年 3月 17日(丙申) ····· 1243
4年 3月 17日(丙申) ····· 1244
4年 3月 18日(丁酉) ····· 1245
4年 3月 20日(己亥) ····· 1246
4年 3月 21日(庚子) ····· 1248
4年 3月 22日(辛丑) ····· 1250
4年 3月 27日(丙午) ····· 1251

4年 4月 1日(己酉) ····· 1252
4年 4月 1日(己酉) ····· 1253
4年 4月 1日(己酉) ····· 1255
4年 4月 2日(庚戌) ····· 1256
4年 4月 2日(庚戌) ····· 1257
4年 4月 2日(庚戌) ····· 1258
4年 4月 3日(辛亥) ····· 1259
4年 4月 3日(辛亥) ····· 1260
4年 4月 4日(壬子) ····· 1261
4年 4月 4日(壬子) ····· 1262
4年 4月 4日(壬子) ····· 1263
4年 4月 5日(癸丑) ····· 1264
4年 4月 5日(癸丑) ····· 1265
4年 4月 5日(癸丑) ····· 1266
4年 4月 8日(丙辰) ····· 1267
4年 4月 8日(丙辰) ····· 1268
4年 4月 16日(甲子) ····· 1269
4年 4月 16日(甲子) ····· 1270
4年 4月 16日(甲子) ····· 1271
4年 4月 17日(乙丑) ····· 1272
4年 4月 17日(乙丑) ····· 1273
4年 4月 17日(乙丑) ····· 1274
4年 4月 18日(丙寅) ····· 1275
4年 4月 18日(丙寅) ····· 1276
4年 4月 18日(丙寅) ····· 1277
4年 4月 19日(丁卯) ····· 1278
4年 4月 19日(丁卯) ····· 1279
4年 4月 19日(丁卯) ····· 1280
4年 4月 19日(丁卯) ····· 1281
4年 4月 20日(戊辰) ····· 1282
4年 4月 21日(己巳) ····· 1284
4年 4月 28日(丙子) ····· 1285
4年 4月 28日(丙子) ····· 1287
4年 5月 11日(己丑) ····· 1289
4年 5月 12日(庚寅) ····· 1291
4年 5月 22日(庚子) ····· 1292
4年 5月 22日(庚子) ····· 1293
4年 5月 29日(丁未) ····· 1294
4年 5月 29日(丁未) ····· 1295
4年 6月 1日(戊申) ····· 1296
4年 6月 1日(戊申) ····· 1298
4年 6月 2日(己酉) ····· 1299
4年 6月 2日(己酉) ····· 1300
4年 6月 3日(庚戌) ····· 1301
4年 6月 3日(庚戌) ····· 1302
4年 6月 4日(辛亥) ····· 1303
4年 6月 4日(辛亥) ····· 1304
4年 6月 5日(壬子) ····· 1305
4年 6月 6日(癸丑) ····· 1307
4年 6月 9日(丙辰) ····· 1309
4年 6月 9日(丙辰) ····· 1310
4年 6月 10日(丁巳) ····· 1311
4年 6月 10日(丁巳) ····· 1312
4年 6月 11日(戊午) ····· 1313
4年 6月 12日(己未) ····· 1314
4年 6月 13日(庚申) ····· 1315
4年 6月 13日(庚申) ····· 1316
4年 6月 14日(辛酉) ····· 1317
4年 6月 15日(壬戌) ····· 1319
4年 6月 15日(壬戌) ····· 1320
4年 6月 16日(癸亥) ····· 1321
4年 6月 16日(癸亥) ····· 1322
4年 6月 19日(丙寅) ····· 1223
4年 6月 19日(丙寅) ····· 1324
4年 6月 20日(丁卯) ····· 1325
4年 6月 23日(庚午) ····· 1327
4年 6月 24日(辛未) ····· 1328
4年 6月 24日(辛未) ····· 1329

4年 6月 25日(壬申) ····· 1330
4年 6月 25日(壬申) ····· 1331
4年 7月 1日(丁丑) ····· 1332
4年 7月 1日(丁丑) ····· 1333
4年 7月 3日(己卯) ····· 1334
4年 7月 3日(己卯) ····· 1335
4年 7月 4日(庚辰) ····· 1336
4年 7月 5日(辛巳) ····· 1337
4年 7月 6日(壬午) ····· 1339
4年 7月 6日(壬午) ····· 1340
4年 7月 11日(丁亥) ····· 1341
4年 7月 12日(戊子) ····· 1342
4年 7月 13日(己丑) ····· 1343
4年 7月 15日(辛卯) ····· 1344
4年 7月 16日(壬辰) ····· 1345
4年 7月 17日(癸巳) ····· 1346
4年 7月 21日(丁酉) ····· 1347
4年 7月 22日(戊戌) ····· 1349
4年 7月 23日(己亥) ····· 1351
4年 7月 24日(庚子) ····· 1352
4年 7月 27日(癸卯) ····· 1353
4年 7月 28日(甲辰) ····· 1354
4年 7月 30日(丙午) ····· 1355
4年 8月 4日(庚戌) ····· 1357
4年 8月 6日(壬子) ····· 1358
4年 8月 6日(壬子) ····· 1359
4年 8月 9日(乙卯) ····· 1360
4年 8月 10日(丙辰) ····· 1362
4年 8月 10日(丙辰) ····· 1363
4年 8月 11日(丁巳) ····· 1364
4年 8月 20日(丙寅) ····· 1365
4年 8月 27日(癸酉) ····· 1367
4年 8月 27日(癸酉) ····· 1368
4年 9月 5日(庚辰) ····· 1369
4年 9月 5日(庚辰) ····· 1370
4年 9月 6日(辛巳) ····· 1371
4年 9月 12日(丁亥) ····· 1372
4年 9月 12日(丁亥) ····· 1373
4年 9月 13日(戊子) ····· 1374
4年 9月 14日(己丑) ····· 1375
4年 9月 14日(己丑) ····· 1376
4年 9月 15日(庚寅) ····· 1377
4年 9月 15日(庚寅) ····· 1378
4年 9月 16日(辛卯) ····· 1379
4年 9月 16日(辛卯) ····· 1380
4年 9月 16日(辛卯) ····· 1381
4年 9月 18日(癸巳) ····· 1382
4年 9月 19日(甲午) ····· 1384
4年 9月 19日(甲午) ····· 1386
4年 9月 20日(乙未) ····· 1387
4年 9月 24日(己亥) ····· 1389
4年 9月 25日(庚子) ····· 1390
4年 9月 25日(庚子) ····· 1391
4年 9月 26日(辛丑) ····· 1392
4年 9月 26日(辛丑) ····· 1393
4年 9月 27日(壬寅) ····· 1394
4年 9月 28日(癸卯) ····· 1396
4年 10月 7日(壬子) ····· 1398
4年 10月 7日(壬子) ····· 1399
4年 10月 8日(癸丑) ····· 1400
4年 10月 9日(甲寅) ····· 1401
4年 10月 10日(乙卯) ····· 1402
4年 10月 12日(丁巳) ····· 1403
4年 10月 13日(戊午) ····· 1405
4年 10月 13日(戊午) ····· 1406
4年 10月 18日(癸亥) ····· 1407
4年 10月 19日(甲子) ····· 1409
4年 10月 20日(乙丑) ····· 1411

4年 10月 21日(丙寅) ····· 1412
4年 10月 22日(丁卯) ····· 1413
4年 10月 23日(戊辰) ····· 1414
4年 10月 27日(壬申) ····· 1415
4年 11月 9日(癸未) ····· 1416
4年 11月 11日(乙酉) ····· 1417
4年 11月 11日(乙酉) ····· 1418
4年 11月 12日(丙戌) ····· 1419
4年 11月 17日(辛卯) ····· 1421
4年 11月 18日(壬辰) ····· 1423
4年 11月 19日(癸巳) ····· 1424
4年 11月 20日(甲午) ····· 1425
4年 11月 20日(甲午) ····· 1426
4年 11月 20日(甲午) ····· 1427
4年 11月 21日(乙未) ····· 1429
4年 11月 22日(丙申) ····· 1430
4年 11月 23日(丁酉) ····· 1431
4年 11月 24日(戊戌) ····· 1432
4年 11月 27日(辛丑) ····· 1433
4年 11月 28日(壬寅) ····· 1435
4年 11月 29日(癸卯) ····· 1437
4年 11月 30日(甲辰) ····· 1439
4年 12月 1日(乙巳) ····· 1441
4年 12月 2日(丙午) ····· 1443
4年 12月 3日(丁未) ····· 1445
4年 12月 10日(甲寅) ····· 1447
4年 12月 11日(乙卯) ····· 1448
4年 12月 11日(乙卯) ····· 1449
4年 12月 12日(丙辰) ····· 1450
4年 12月 12日(丙辰) ····· 1451
4年 12月 14日(戊午) ····· 1452
4年 12月 15日(己未) ····· 1454
4年 12月 15日(己未) ····· 1455
4年 12月 15日(己未) ····· 1456
4年 12月 16日(庚申) ····· 1457
4年 12月 17日(辛酉) ····· 1459
4年 12月 18日(壬戌) ····· 1461
4年 12月 19日(癸亥) ····· 1462
4年 12月 21日(乙丑) ····· 1463
4年 12月 21日(乙丑) ····· 1464
4年 12月 21日(乙丑) ····· 1465
4年 12月 22日(丙寅) ····· 1466
4年 12月 22日(丙寅) ····· 1467
4年 12月 25日(己巳) ····· 1469
4年 12月 26日(庚午) ····· 1471
4年 12月 27日(辛未) ····· 1472
4年 12月 28日(壬申) ····· 1473
4年 12月 29日(癸酉) ····· 1474

1781

5年 1月 5日(戊寅) ····· 1476
5年 1月 6日(己卯) ····· 1477
5年 1月 8日(辛巳) ····· 1478
5年 1月 9日(壬午) ····· 1480
5年 1月 9日(壬午) ····· 1481
5年 1月 14日(丁亥) ····· 1482
5年 1月 15日(戊子) ····· 1483
5年 1月 16日(己丑) ····· 1484
5年 1月 16日(己丑) ····· 1485
5年 2月 10日(癸丑) ····· 1486
5年 2月 13日(丙辰) ····· 1488
5年 2月 19日(壬戌) ····· 1489
5年 2月 19日(壬戌) ····· 1490
5年 2月 19日(壬戌) ····· 1491
5年 2月 19日(壬戌) ····· 1492
5年 2月 19日(壬戌) ····· 1493
5年 2月 25日(戊辰) ····· 1494

5年 2月 25日(戊辰) ····· 1495
5年 3月 27日(庚子) ····· 1496
5年 3月 28日(辛丑) ····· 1497
5年 3月 28日(辛丑) ····· 1498
5年 4月 6日(己酉) ····· 1499
5年 5月 30日(壬寅) ····· 1500
5年 6月 15日(丙戌) ····· 1501
5年 6月 15日(丙戌) ····· 1503
5年 6月 15日(丙戌) ····· 1504
5年 6月 15日(丙戌) ····· 1505
5年 6月 16日(丁亥) ····· 1506
5年 6月 16日(丁亥) ····· 1507
5年 6月 16日(丁亥) ····· 1508
5年 6月 16日(丁亥) ····· 1509
5年 6月 16日(丁亥) ····· 1510
5年 6月 16日(丁亥) ····· 1511
5年 6月 16日(丁亥) ····· 1512
5年 6月 17日(戊子) ····· 1515
5年 6月 17日(戊子) ····· 1516
5年 6月 17日(戊子) ····· 1517
5年 6月 17日(戊子) ····· 1518
5年 6月 19日(庚寅) ····· 1519
5年 6月 19日(庚寅) ····· 1520
5年 6月 19日(庚寅) ····· 1521
5年 6月 19日(庚寅) ····· 1522
5年 6月 21日(壬辰) ····· 1523
5年 6月 21日(壬辰) ····· 1524
5年 6月 26日(丁酉) ····· 1525
5年 6月 26日(丁酉) ····· 1528
5年 6月 27日(戊戌) ····· 1529
5年 6月 28日(己亥) ····· 1532
5年 6月 29日(庚子) ····· 1534
5年 7月 2日(壬寅) ····· 1535
5年 7月 4日(甲辰) ····· 1536
5年 7月 4日(甲辰) ····· 1537
5年 7月 8日(戊申) ····· 1538
5年 7月 8日(戊申) ····· 1539
5年 7月 8日(戊申) ····· 1540
5年 7月 9日(己酉) ····· 1541
5年 7月 12日(壬子) ····· 1544
5年 7月 20日(庚申) ····· 1546
5年 7月 24日(甲子) ····· 1548
5年 8月 12日(辛巳[壬午]) ····· 1549
5年 8月 12日(辛巳[壬午]) ····· 1550
5年 8月 13日(癸未) ····· 1551
5年 8月 16日(丙戌) ····· 1553
5年 8月 17日(丙戌[丁亥]) ····· 1554
5年 8月 18日(戊子) ····· 1555
5年 9月 11日(庚戌) ····· 1556
5年 9月 12日(辛亥) ····· 1557
5年 9月 14日(癸丑) ····· 1559
5年 9月 21日(庚申) ····· 1560
5年 9月 24日(癸亥) ····· 1562
5年 9月 29日(戊辰) ····· 1564
5年 10月 9日(戊寅) ····· 1566
5年 10月 9日(戊寅) ····· 1567
5年 10月 9日(戊寅) ····· 1568
5年 10月 12日(辛巳) ····· 1569
5年 10月 13日(壬午) ····· 1570
5年 10月 13日(壬午) ····· 1571
5年 10月 13日(壬午) ····· 1572
5年 10月 14日(癸未) ····· 1573
5年 10月 18日(丁亥) ····· 1575
5年 10月 18日(丁亥) ····· 1577
5年 10月 23日(壬辰) ····· 1578
5年 10月 26日(乙未) ····· 1580
5年 10月 26日(乙未) ····· 1581
5年 11月 5日(癸卯) ····· 1582
5年 11月 6日(甲辰) ····· 1584

5年 11月 11日(己酉) ····· 1585
5年 11月 20日(戊午) ····· 1587
5年 12月 6日(甲戌) ····· 1589
5年 12月 6日(甲戌) ····· 1590
5年 12月 6日(甲戌) ····· 1591
5年 12月 9日(丁丑) ····· 1592
5年 12月 9日(丁丑) ····· 1593
5年 12月 10日(戊寅) ····· 1595
5年 12月 10日(戊寅) ····· 1596
5年 12月 15日(癸未) ····· 1597
5年 12月 20日(戊子) ····· 1599
5年 12月 21日(己丑) ····· 1600

1779年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七日 壬辰

○ 柳義養, 以吏曹言啓曰, 新除授旌義縣監全佐天呈狀內, 矣身老母年今七十歲, 海島之邑, 法不當冒赴云, 親年七十者, 勿許三百里外遠邑守令事, 載在法典矣, 旌義縣監全佐天,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7일(임진)

□ 전좌천(全佐天)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이조의 계

○ 유의양(柳義養)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된 전좌천(全佐天)의 정장(呈狀)에, ‘저의 노모의 나이가 지금 70세이니 해도(海島)의 읍은 법으로 볼 때 함부로 부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70세인 자는 300리 밖의 먼 고을의 수령을 허락하지 말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정의현감 전좌천을 규례대로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전좌천, 개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七日 壬辰

○ 己亥正月初七日辰時, 上御熙政堂. 朝講入侍時, 領事徐命善, 特進官洪樂性·沈頤之, 同知事李普行, 參贊官洪國榮, 侍講官沈豐之, 檢討官李儒慶, 掌令柳雲羽, 正言尹得孚, 記事官李兢淵·金勉柱·李信祜, 以次進伏訖. …… 雲羽·得孚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措辭見上】…… 得孚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7일(임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유운우(柳雲羽) 등의 계

○ 기해년(1779) 1월 7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조강에 입시할 때 영사 서명선(徐命善), 특진관 홍낙성(洪樂性)·심이지(沈頤之), 동지사 이보행(李普行), 참찬관 홍국영(洪國榮), 시강관 심풍지(沈豐之), 검토관 이유경(李儒慶), 장령 유운우(柳雲羽), 정언 윤득부(尹得孚), 기사관 이긍연(李兢淵)·김면주(金勉柱)·이신우(李信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운우[1]·윤득부[2]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윤득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

1) 유운우(1730~?): 본관 진주(晉州). 자 봉지(鳳之).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2) 윤득부(1723~1799): 본관 해평(海平). 자 사휴(士休), 호 신재(信齋).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승지, 형조참판, 대사간 역임.

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성중, 유신, 종갑, 의준,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八日 癸巳

○ 沈念祖,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言啓曰, 濟州牧所封去戊戌十一月令各種山果進上, 自十七運二十運至, 來到本院, 而開櫝看品, 則其中腐傷者金橘爲一百四十箇, 橙子橘爲一百三十箇, 山橘爲三百四十箇,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8일(계사)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산과(山果) 중 썩고 상한 것의 봉입(捧入) 여부를 묻는 사옹원의 초기

○ 심염조(沈念祖)가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감선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封)한 지난 무술년(1778)의 11월령 각종 산과(山果) 진상이 17운(運)부터 20운까지 본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궤(櫝)를 열어 간품(看品)하니, 그 가운데 썩고 상한 것이 금귤(金橘)은 140개, 등자귤(橙子橘)은 130개, 산귤(山橘)은 340개가 됩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라 해도 막중한 진상을 규례대로 봉입(捧入)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봉입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과, 진상, 봉입.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九日 甲午

○ 有政. 吏批, 判書鄭尙淳進, 參判徐浩修進, 參議李義翊牌不進, 右承旨徐有防進. …… 宋重鉉爲旌義縣監,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8일(계사)

□ 송중현(宋重鉉)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나왔고, 참판 서호수(徐浩修)가 나왔고, 참의 이의익(李義翊)은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고, 우승지 서유방(徐有防)이 나왔다. 〈중략〉 송중현(宋重鉉)[3]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송중현, 정의현감.

3) 송중현(1737~?): 본관 홍주(洪州). 자 인옥(仁玉).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1779년(정조 3) 3월에 도임하고, 1781년(정조 5) 윤5월에 나거(拿去)되었다.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九日 甲午

○ 李義弼,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言啓曰, 濟州牧所封去戊戌十一月令進上唐柚子來到本院, 而開櫝看品, 則元數五百七十箇內, 腐傷爲五十三箇,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9일(갑오)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당유자(唐柚子) 중 썩고 상한 것의 봉입(捧入) 여부를 묻는 사옹원의 초기

○ 이의필(李義弼)이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감선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封)한 지난 무술년(1778)의 11월령 진상 당유자(唐柚子)가 본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궤(櫝)를 열어 간품(看品)하니, 원수(元數) 570개 가운데 썩고 상한 것이 53개가 됩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라 해도 막중한 진상을 규례대로 봉입(捧入)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봉입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당유자, 진상, 봉입.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九日 甲午

○ 己亥正月初九日辰時, 上御宣政殿, 晝講. 大臣·備局堂上同爲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左參贊洪樂性,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知敦寧洪樂純, 禮曹判書權導, 刑曹判書鄭好仁, 戶曹判書金華鎭, 行司直李國賢, 行大司成李衍祥, 行都承旨洪國榮, 同知李普行, 江華留守李鎭衡, 副司直柳戇, 持平宋樂, 行 左承旨鄭民始, 知事蔡濟恭, 特進官徐浩修, 經筵官宋德相, 參贊官徐有防, 侍讀官金憙, 檢討官南鶴聞, 記事官李兢淵·金勉柱·李信祜, 事變假注書朴師默·疑善君燧, 副護軍鄭汝曾, 以次進伏訖. …… 樂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堣,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鶴聞曰, 今番倭學處分, 極爲嚴正, 凡在瞻聆, 孰不欽仰? 大抵此輩擅弄公貨, 專事牟利之習, 由來久矣. 其中罪惡之最甚, 而爲牟利之窩主者, 卽前察訪吳道鈺也. 渠家素稱富豪, 略挾才能, 托跡權門, 恣行不法, 曾爲完營幕裨, 首尾十餘年, 營庫錢貨, 開門爛用, 侵漁小民, 鉤贏弋利, 湖南之民, 至今欲食其肉. 且渠得罪於先朝, 至命嚴刑島配, 配所卽椒子島也, 而乃敢潛囑道臣, 初不赴謫, 晏然留住於山寺, 未久蒙宥而歸, 此乃擧世之所共聞知, 而所共憤痛者也. 今者朴敏行處分, 猶不無太寬之失, 則況此道鈺之罪, 有浮於敏行十倍, 而尙自積擁財貨, 偃息安享, 蔑法牟利之輩, 顧何所懲畏乎? 蟣蝨之類, 不足以汚諸筆舌, 而今當查治此輩之時, 如許奸惡罪魁, 豈容倖逭? 臣謂吳道鈺亟令該府另加嚴刑後, 必於其前日所配之島, 勿限年定配, 以懲其前後罪惡, 斷不可已也. 上曰, 依爲之.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9일(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낙(宋樂)의 계와 모리(牟利)를 일삼은 전 찰방 오도옥(吳道鈺)을 추자도(楸子島)로 다시 정배(定配)할 것을 청하는 남학문(南鶴聞)의 계

○ 기해년(1779) 1월 9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홍낙성(洪樂性),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

大), 지돈녕 홍낙순(洪樂純), 예조판서 권도(權導),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 사직 이국현(李國賢), 행 대사성 이연상(李衍祥),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동지 이보행(李普行), 강화유수 이진형(李鎭衡), 부사직 유당(柳戇), 지평 송낙(宋樂),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서호수(徐浩修), 경연관 송덕상(宋德相), 참찬관 서유방(徐有防), 시독관 김희(金憙), 검토관 남학문(南鶴聞), 기사관 이긍연(李兢淵)·김면주(金勉柱)·이신호(李信祜), 사변가주서 박사묵(朴師默)·응선군 이희(爔), 부호군 정여증(鄭汝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송낙[4]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남학문이 아뢰기를,[5] "이번에 왜학(倭學)에 대한 처분은 매우 엄정하였으니, 보고 들은 자라면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저 이 무리가 공화(公貨)를 제멋대로 농단하여 오로지 모리(牟利) 하는 버릇을 일삼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악이 가장 심한 것으로 모리의 와주(窩主)가 되는 자는 전 찰방 오도옥(吳道鈺)입니다. 그의 집은 평소 부호(富豪)라고 일컬으며 재능을 간략히 믿고서 권문(權門)에 몸을 의탁하여 불법을 자행하여 일찍이 전라감영의 막비(幕裨)가 되었는데, 앞뒤로 10년 동안 영고(營庫)의 전화(錢貨)를 개문(開門)하여 함부로 쓰고, 소민(小民)을 침탈하여 이익을 긁어 이익을 추구하여 호남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살을 씹어먹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는 선조(先朝) 때에 죄를 얻어 엄히 형신(刑訊)하여 도배(島配)하도록 명하기까지 하였고, 배소는 바로 추자도(椒子島)입니다. 그런데 감히 관찰사에게 몰래 부탁하여 처음에는 적소(謫所)에 가지 않고 태연히 산사(山

4) 송낙(1731~?): 본관 여산(礪山). 자 성리(聖履).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5) 이하 오도옥 관련 내용은 《정조실록》 정조 3년 1월 15일자에 간략한 기사가 확인됨.

寺)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래지 않아 용서를 받고 돌아왔으니, 이는 온 세상이 모두 들어서 알고있는 바이며 함께 분통해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민행(朴敏行)에 대한 처분이 오히려 너무 관대한 잘못이 없지 않은데, 하물며 김도옥의 죄는 박민행보다 10배나 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재화를 쌓아 끼고 편안히 지내고 있으니 법을 무시하는 모리배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나 서캐와 같은 부류가 필설(筆舌)을 더럽힐 수 없는데, 지금 이 무리를 조사하여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이 간악한 괴수가 어찌 요행히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오도옥을 속히 해당 부(府)로 하여금 특별히 엄히 형신하게 한 뒤에 반드시 전날 정배했던 섬에 무기한으로 정배하여 전후의 죄악을 징계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6]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오도옥.

6) 《정조실록》 정조 3년 1월 15일자 기사에 오도옥의 추자도 정배와 관련한 내용이 간략히 확인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十三日 戊戌

○ 持平宋樂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曰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崴之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滅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旣以後翼爲弟, 且以量·鍰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13일(무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지평 송낙(宋樂)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崴)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

(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鋏)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十四日 己亥

○ 掌令洪明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14일(기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명호(洪明浩)의 계

○ 장령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처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十五日 庚子

○ 持平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15일(경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지평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十六日 辛丑

○ 鄭民始,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許壑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16일(신축)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허도(許壑)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허도(許壑)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허도,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十六日 辛丑

○ 己亥正月十六日辰時, 上御仁政門. 朝參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右承旨徐有防, 左副承旨李義弼, 右副承旨柳義養, 同副承旨沈念祖, 記事官李兢淵, 注書徐鼎修, 記事官李信祐·鄭東浚, 以次侍立訖. …… 明浩·樂·夔·孟養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熳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之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章,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明浩·樂·夔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哉?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明浩等曰,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岊之弟, 今番諸逆之凶謀逆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申,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明浩等曰,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容,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明浩等曰, 後樂, 旣以後翼爲弟, 且以量·錥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遊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孟養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孟養曰,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惡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16일(신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홍명호(洪明浩) 등의 계

○ 기해년(1779) 1월 16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朝參)에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좌부승지 이의필(李義弼), 우부승지 유의양(柳義養), 동부승지 심염조(沈念祖), 기사관 이긍연(李兢淵), 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이신우(李信祐)·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홍명호(洪明浩)·송락(宋樂)·이기(李夔)·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이성운(李成運)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홍명호·송락·이기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명호 등이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峸)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홍명호 등이 아뢰기를,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

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명호 등이 아뢰기를,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鋏)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7]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윤범성.

7)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十七日 壬寅

○ 正言柳孟養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17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맹양(柳孟養)의 계

○ 정언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二十八日 癸丑

○ 正言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28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맹양(柳孟養)의 계

○ 정언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一月 二十九日 甲寅

○ 己亥正月二十九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兼漢城判尹蔡濟恭, 行司直具允鉅, 行兵曹判書李徽之, 吏曹判書鄭尙淳, 刑曹判書鄭好仁, 戶曹判書金華鎭, 開城留守兪彦鎬, 吏曹參判徐浩修, 行都承旨洪國榮, 校理李度默, 正言柳孟養, 行左承旨鄭民始, 假注書徐鼎修, 事變假注書尹載命, 記事官金勉柱·鄭東浚, 以次進伏訖. …… 浩修曰, 祀享犧牲, 事體何等重大, 而近來外邑封進之際, 旣不擇捧, 喂養之方, 亦不致意, 雖以日前濟州牧所進, 戊戌條加定黑牛觀之, 體小如犢, 瘦瘠且甚, 洪州·靑山等五邑分養者, 一無可取. 故纔已論報春曹, 竝爲退送, 而前後朝廷申飭之下, 奉行之若是慢忽, 誠極駭然. 瘦瘠之責, 在於分養各邑, 體小之責, 在於封進邑及都會官, 當該分養五邑守令, 姑先從重推考. 以觀來頭, 至於封進官濟州前牧使, 及都會官恩津縣監, 則必承別般處分, 然後可懲來後,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封進官罷職, 都會官拿處, 可也.【出擧條】上曰, 臺臣進前. 孟養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孟養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월 29일(갑인)

□ 사향(祀享)에 사용하는 희생(犧牲)의 진상을 잘하지 못한 봉진관(封進官)과 도회관(都會官) 및 이것을 잘 기르지 못한 5개 읍의 수령에 대한 처벌을 청하는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의 계와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유맹양(柳孟養)의 계

○ 기해년(1779) 1월 29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한성판윤 채제공(蔡濟恭), 행 사직 구윤옥(具允鉅),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교리 이도묵(李度默), 정언 유맹양(柳孟養),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사변가주서 윤재명(尹載命), 기사관 김면주(金勉柱)·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호수가 아뢰기를, "사향(祀享)에 사용하는 희생(犧牲)은 일의 체모가 얼마나 중한 것입니까. 그런

데 근래 외읍(外邑)에서 봉진할 때 잘 골라서 바치지 않고, 먹여 기르는 방법도 또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비록 일전에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것으로 무술년조에 더 배정한 흑우를 가지고 보더라도 크기가 송아지처럼 작고, 수척한 것이 또한 심하여 홍주(洪州)·청산(靑山) 등 다섯 읍에 나누어 기르는 것은 하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예조에 논보(論報)하여 모두를 물리쳐 보냈습니다. 앞뒤로 조정에서 단단히 타일러 경계했는데도 봉행을 이와 같이 소홀히 하였으니 참으로 지극히 놀랍습니다. 수척한 책임은 나누어 기른 각 읍에 있고, 몸집이 작은 책임은 봉진한 읍과 도회관(都會官)에게 있으니, 해당 나누어 기른 다섯 읍의 수령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고, 봉진관 전 제주목사 및 도회관 은진현감(恩津縣監)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처분을 받든 후에야 후일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감히 이와같이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봉진관은 파직하고, 도회관은 잡아다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흑우, 진상, 봉진관, 도회관, 파직.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二月 八日 癸亥

○ 己亥二月初八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判中樞府事徐命膺, 行司直具允鋐·李重祜, 行兵曹判書李徽之,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右參贊洪樂純, 禮曹判書權儁, 刑曹判書鄭好仁, 戶曹判書金華鎭, 開城留守兪彦鎬, 行訓鍊都正李國賢, 行大司成李衍祥, 行都承旨洪國榮, 同知中樞府事李普行, 江華留守李鎭衡, 行副司直柳戇, 掌令洪明浩, 校理金憙, 持平宋樂, 正言柳孟養, 行左承旨鄭民始, 假注書徐鼎修·李信祜, 記事官金勉柱·鄭東浚, 以次進伏訖. …… 明浩·樂·孟養曰, 臣等謂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宜矣.【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2월 8일(계해)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홍명호(洪明浩) 등의 계

○ 기해년(1779) 2월 8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판중추부사 서명응(徐命膺), 행 사직 구윤옥(具允鋐)·이중호(李重祜),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우참찬 홍낙순(洪樂純), 예조판서 권도(權儁),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행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행 대사성 이연상(李衍祥),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동지중추부사 이보행(李普行), 강화유수 이진형(李鎭衡), 행 부사직 유당(柳戇), 장령 홍명호(洪明浩), 교리 김희(金憙), 지평 송락(宋樂), 정언 유맹양(柳孟養),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서정수(徐鼎修)·이신호(李信祜), 기사관 김면주(金勉柱)·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명호·송락·유맹양이 아뢰기를, "신들은 제주목(濟州牧)에 이배(移配)한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二月 十二日 丁卯

○ 柳戇,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吳道鈺, 另加嚴刑後, 前日所配之島, 勿限年定配事, 承傳啓下矣. 吳道鈺已準三次之刑, 全羅道靈巖郡楸子島, 勿限年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2월 12일(정묘)

□ 죄인 오도옥(吳道鈺)을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유당(柳戇)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오도옥(吳道鈺)을 별도로 엄하게 형신(刑訊)한 뒤에 전에 정배(定配)했던 섬에 무기한으로 정배하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오도옥은 이미 세 차례 형문(刑問)을 받았으니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무기한으로 정배하되, 승전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오도옥, 추자도, 정배, 압송.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二月 二十一日 丙子

○ 掌令洪明浩, 持平宋樂·姜文煥, 正言柳孟養啓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熳[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2월 21일(병자)

□ 경빈(敬彬)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명호(洪明浩) 등의 계

○ 장령 홍명호(洪明浩), 지평 송락(宋樂)·강문환(姜文煥), 정언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이성운(李成運)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二月 二十一日 丙子

○ 持平姜文煥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岼之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節,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 旣以後翼爲弟, 且以量·鍥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熳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2월 21일(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강문환(姜文煥)의 계

○ 지평 강문환(姜文煥)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岼)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鋟)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二月 二十一日 丙子

○ 正言柳孟養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伸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安置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2월 21일(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맹양(柳孟養)의 계

○ 정언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二月 二十五日 庚辰

○ 己亥二月二十五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判敦寧具善復, 判中樞府事徐命膺, 行知敦寧具允鋐, 行司直李重祜, 行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尹東暹,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左參贊洪樂純, 禮曹判書權徸, 戶曹判書金華鎭, 開城留守兪彦鎬, 行都承旨洪國榮, 行副司直鄭民始, 漢城右尹李普行, 正言柳孟養, 副修撰吳大益, 右承旨徐有防, 假注書徐鼎修, 事變假注書權中憲,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以次進伏訖. …… 上曰, 臺臣進前. 孟養進伏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孟養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2월 25일(경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맹양(柳孟養)의 계

○ 기해년 2월 25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판돈녕 구선복(具善復), 판중추부사 서명응(徐命膺), 행 지돈녕 구윤옥(具允鋐), 행 사직 이중호(李重祜),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윤동섬(尹東暹),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좌참찬 홍낙순(洪樂純), 예조판서 권도(權徸),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부사직 정민시(鄭民始), 한성우윤 이보행(李普行), 정언 유맹양(柳孟養), 부수찬 오대익(吳大益),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사변가주서 권중헌(權中憲),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유맹양이 나와 엎드려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八日 壬辰

○ 洪檢啓曰, 卽伏見全羅監司鄭元始, 去秋冬等濟州褒貶啓本, 則守令·邊將中, 無一人居中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當該濟州牧使金永綬,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8일(임진)

□ 포폄(褒貶)을 부실하게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기를 청하는 홍검(洪檢)의 계

○ 홍검(洪檢)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정원시(鄭元始)가 올린 지난 추동등(秋冬等) 제주(濟州)의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보니, 수령과 변장 중에 한 사람도 중(中)을 맞거나 하(下)를 맞은 사람이 없어 전최(殿最)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목사 김영수(金永綬)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경책.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九日 癸巳

○ 己亥三月初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判敦寧府事具善復, 判中樞府事徐命膺, 行知敦寧府事具允鋐, 行司直李重祜, 刑曹判書尹東暹,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右參贊洪樂純, 禮曹判書權儁, 戶曹判書金華鎭, 行都承旨洪國榮, 行副司直鄭民始, 大司憲徐有慶, 副校理趙尙鎭, 右承旨李義翊, 假注書徐鼎修, 事變假注書兪任柱, 記事官金勉柱·李信祜, 以次進伏訖. …… 尙喆曰, 此濟州牧使金永綏狀啓也. 以爲附近邑哨司鍊, 當爲擧行, 而反耕方張, 齎糧聚待, 亦多擾民之弊, 依近例停退之意, 知委各邑而固當稟旨, 恭俟指揮, 候風往來之際, 每致不及之患, 依例停退爲辭矣. 哨司鍊之停退, 事勢誠然, 使之依狀請擧行, 而狀啓中擧條, 謄書之際, 臣之名字不書, 難免不察, 當該牧使,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9일(계사)

□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가 장계로 보고한 부근 읍의 초사련(哨司鍊) 거행의 기한을 물리는 것에 대해 논의함

○ 기해년(1779) 3월 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판돈녕부사 구선복(具善復), 판중추부사 서명응(徐命膺), 행 지돈녕부사 구윤옥(具允鋐), 행 사직 이중호(李重祜), 형조판서 윤동섬(尹東暹),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우참찬 홍낙순(洪樂純), 예조판서 권도(權儁),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부사직 정민시(鄭民始),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부교리 조상진(趙尙鎭),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사변가주서 유임주(兪任柱), 기사관 김면주(金勉柱)·이신호(李信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상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입니다. '부근 읍의 초사련(哨司鍊)을 거행해야 하는데, 밭갈이가 한창일 때에 양식을 싸 가지고 모여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또한 백성을 동요시키는 폐단이 많으니, 근래의 사례대로 기한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각 읍에 통지하였습니다. 마땅히 품지(稟旨)를 올려 공손히 지휘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바람을 기다려 왕래하자면 매번 제때에

미치지 못하는 근심이 있으니, 사례대로 기한을 물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초사련의 기한을 물리는 것은 일의 형세상 참으로 그러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장계 가운데 거조(擧條)를 등서할 때 신(臣)의 이름자를 쓰지 않았으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목사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8]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초사련.

8) 《비변사등록》 정조 3년 3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十一日 乙未

○ **己亥三月十一日, 記事官姜彙鉦. 司僕寺啓目, 觀此濟州牧使黃最彦啓本啓下者, 本州山馬監牧官金以範瓜滿, 代以獻馬人金萬鎰姓孫中金光燧等望報矣, 依伏請分付該曹, 何如? 傳曰, 依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11일(을미)

□ 임기가 찬 산마감목관 김이범(金以範)을 대신할 자의 차정(差定)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목

○ 기해년(1779) 3월 11일이다. 기사관은 강휘옥(姜彙鉦)이다. 사복시의 계목(啓目)에,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의 계본(啓本)에 계하(啓下)[9]한 것을 보니, 본주(本州) 산마감목관 김이범(金以範)이 임기가 찼으므로 대신하여 헌마인 김만일(金萬鎰)의 성손 중 김광수(金光燧) 등을 망보(望報)[10] 하였습니다. 요청한 대로 해당 조(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이범, 김광수, 망보.

---

9) 계하(啓下: 상주(上奏)한 문건을 임금이 본 뒤에 계(啓) 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로 내리는 것을 말함.

10) 망보(望報): 후보자 세 명의 이름을 써서 보고하던 일, 또는 그 보고.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十五日 己亥

○ 己亥三月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朝講·次對同爲入侍時, 領事金尙喆, 知事李徽之, 特進官鄭尙淳, 參贊官洪國榮, 特進官鄭民始, 侍讀官李度默, 檢討官鄭志儉, 大司憲徐有慶, 獻納李命勳, 假注書徐鼎修, 記事官李信祜·鄭東浚, 左議政徐命善, 判敦寧具善復, 判中樞徐命膺, 行知敦寧具允鋐, 行司直李重祜, 刑曹判書尹東暹, 行副司直金孝大, 江華留守洪樂純, 右參贊權儁, 戶曹判書金華鎭, 行副司直柳戇, 行左承旨李義翊, 事變假注書宋文述, 以次進伏訖. …… 有慶·命勳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有慶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有慶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嵲, 亟寢配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有慶曰,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有慶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命勳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15일(기해)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등의 계

○ 기해년(1779) 3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조강(朝講)과 차대(次對)가 함께 입시할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지사 이휘지(李徽之), 특진관 정상순(鄭尙淳), 참찬관 홍국영(洪國榮), 특진관 정민시(鄭民始), 시독관 이도묵(李度默), 검토관 정지검(鄭志儉),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헌납 이명훈(李命勳),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판돈녕 구선복(具善復), 판중추 서명응(徐命膺), 행 지돈녕 구윤옥(具允鋐), 행 사직 이중호(李重祜), 형조판서 윤동섬(尹東暹),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강화유수 홍낙순(洪樂純), 우참찬 권도(權儁),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 부사직 유당(柳戇), 행 좌승지 이의익(李義翊), 사변가주서 송문술(宋文述)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유경[11]·이명훈[12]이 아뢰기

11) 서유경(1727~1788): 본관 대구(大丘). 자 선여(善餘). 1750년(영조 26) 문과 급제. 공조판서, 예조판서, 의정부우참찬 역임.

12) 이명훈(1734~?): 본관 전주(全州). 자 성집(聖集).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정언, 지평, 헌납 역임.

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말하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서유경이 말하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말하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명훈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二十二日 丙午

○ 以濟州防禦使狀啓, 莫重正朝陳賀箋文, 阻風過限, 惶恐待罪事, 傳于鄭民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22일(병오)

□ 정조(正朝) 진하전문(陳賀箋文)의 기한을 넘겨 대죄(待罪)한다고 올린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내린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막중한 정조(正朝)의 진하전문(陳賀箋文)이 바람에 길이 막혀 기한을 넘겼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정민시(鄭民始)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진하전문, 대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二十四日 戊申

○ (金思穆)又以刑曹言啓曰, 因持平朴聖泰上疏, 趾賊母與妻竝絶島散配事, 依施事, 命下矣. 依傳敎, 逆賊趾海母希全羅道珍島郡, 妻槮濟州牧, 竝絶島散配, 而罪人等時在京畿龍仁縣, 令道臣卽爲押送配所事, 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24일(무신)

□ 역적 홍지해(洪趾海)의 처 등을 제주목(濟州牧) 등에 정배하여 압송하도록 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김사목(金思穆)[13]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평 박성태(朴聖泰)의 상소로 인하여 홍지해(洪趾海)의 어미와 처를 모두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정배(定配)하는 일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역적 홍지해의 어미 희(希)를 전라도 진도군에, 처 삼(槮)을 제주목(濟州牧)에 모두 절도에 분산하여 정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지금 경기 용인현(龍仁縣)에 있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즉시 배소로 압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처, 제주목, 정배, 압송.

13) 김사목(1740~1829): 본관 경주(慶州). 자 백심(伯深). 호 운소(雲巢). 시호 경헌(敬獻).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황해도관찰사, 예조판서, 우의정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二十七日 辛亥

○ 己亥三月二十七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兼漢城判尹具善復, 行禮曹判書李重祜, 行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尹東暹, 吏曹判書鄭尙淳, 戶曹判書金華鎭, 訓鍊都正李敬懋,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禮曹參議柳戇, 校理嚴思晩, 持平朴聖泰, 行右承旨李義翊, 假注書徐鼎修, 事變假注書宋文述,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以次進伏訖. …… 上曰, 臺臣進前. 聖泰進伏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聖泰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聖泰曰,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聖泰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27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박성태(朴聖泰)의 계

○ 기해년(1779) 3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예조판서 이중호(李重祜),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윤동섬(尹東暹),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예조참의 유당(柳戇), 교리 엄사만(嚴思晩), 지평 박성태(朴聖泰), 행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사변가주서 송문술(宋文述),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박성태가 나와 엎드려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성태가 말하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

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박성태가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성태가 말하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三月 二十八日 壬子

○ 持平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竄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3월 28일(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박성태(朴聖泰)의 계

○ 지평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一日 丙辰[乙卯]

○ 大司憲徐有慶, 持平朴聖泰, 正言盧瑞國啓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熳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1일(병진[을묘])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등의 계

○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지평 박성태(朴聖泰), 정언 노서국(盧瑞國)[14]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이성운(李成運)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14) 노서국(1723~?): 본관 풍천(豊川). 자 공신(公信).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日 丁巳[丙辰]

○ 大司憲徐有慶, 持平朴聖泰, 正言盧瑞國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일(정사[병진])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등의 계

○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지평 박성태(朴聖泰), 정언 노서국(盧瑞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三日 戊午[丁巳]

○ 大司憲徐有慶, 持平朴聖泰, 正言盧瑞國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3일(무오[정사])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등의 계

○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지평 박성태(朴聖泰), 정언 노서국(盧瑞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四日 己未[戊午]

○ 己亥四月初四日辰時, 上御熙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 同爲入侍時, 特進官李重祜, 知事李徽之, 參贊官洪檢, 侍讀官鄭淵淳, 檢討官金宇鎭, 假注書徐鼎修, 記事官徐龍輔·鄭東浚, 安川君烓, 行副護軍李彦熙,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漢城判尹具善復, 行司直具允鈺, 行司直洪樂性, 刑曹判書尹東暹,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知中樞府事鄭光漢, 行訓鍊都正李敬懋,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持平朴聖泰, 正言盧瑞國, 行右承旨李義翊, 事變假注書宋文述, 以次進伏訖. …… 聖泰·瑞國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4일(기미[무오])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등의 계

○ 기해년(1779) 4월 4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함께 입시할 때 특진관 이중호(李重祜), 지사 이휘지(李徽之), 참찬관 홍검(洪檢), 시독관 정연순(鄭淵淳), 검토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정동준(鄭東浚), 안천군 이계(李烓), 행 부호군 이언희(李彦熙),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사직 구윤옥(具允鈺), 행 사직 홍낙순(洪樂性), 형조판서 윤동섬(尹東暹),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지중추부사 정광한(鄭光漢), 행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지평 박성태(朴聖泰), 정언 노서국(盧瑞國), 행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사변가주서 송문술(宋文述)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박성태·노서국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이성운(李成運)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九日 癸亥

○ 司諫李恒祚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範聖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9일(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이항조(李恒祚)의 계

○ 사간 이항조(李恒祚)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十一日 乙丑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司諫李恒祚, 正言尹行元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11일(을축)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항조(李恒祚), 정언윤행원(尹行元)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十七日 辛未

○ 李義翊,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黃取彦,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17일(신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取彦)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取彦)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최언,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十九日 甲戌[癸酉]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司諫李恒祚, 持平洪樂淵, 獻納李枰, 正言尹行元·申應淵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19일(갑술[계유])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항조(李恒祚)[15], 지평 홍낙연(洪樂淵), 헌납 이평(李枰), 정언 윤행원(尹行元)·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15) 이항조(1716~?): 본관 전주(全州). 자 백상(伯常).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十九日 甲戌[癸酉]

○ 大司憲鄭昌順, 持平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19일(갑술[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지평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十九日 甲戌[癸酉]

○ 大司諫金文淳, 獻納李枰, 正言尹行元·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19일(갑술[계유])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등의 계

○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헌납 이평(李枰), 정언 윤행원(尹行元)·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국청, 처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日 乙亥[甲戌]

○ 正言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0일(을해[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응연(申應淵)의 계

○ 정언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三日 戊寅[丁丑]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司諫李恒祚, 持平洪樂淵, 獻納李枰, 正言尹行元·申應淵啓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3일(무인[정축])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항조(李恒祚), 지평 홍낙연(洪樂淵), 헌납 이평(李枰), 정언 윤행원(尹行元)·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이성운(李成運)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三日 戊寅[丁丑]

○ 持平洪樂淵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崴之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情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 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 旣以後翼爲弟, 且以量·鍥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 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3일(무인[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홍낙연(洪樂淵)의 계

○ 지평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崴)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鋟)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三日 戊寅[丁丑]

○ 獻納李枰, 正言尹行允·申應淵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3일(무인[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헌납 이평(李枰) 등의 계

○ 헌납 이평(李枰), 정언 윤행윤(尹行允)·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16]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16)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四日 己卯[戊寅]

○ 己亥四月二十四日辰時, 上御熙政堂. 晝講, 詣臺臺臣, 同爲入侍時, 知事黃景源, 特進官李在協, 經筵官宋德相, 參贊官洪檢, 侍讀官鄭淵淳, 檢討官金宇鎭, 假注書金載瓚, 記事官李信祜·鄭東浚, 宗臣凝善君爚, 行副護軍金廷遇, 大司諫金文淳, 以次進伏訖. …… 文淳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又所啓,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4일(기묘[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김문순(金文淳)의 계

○ 기해년(1779) 4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이재협(李在協), 경연관 송덕상(宋德相), 참찬관 홍검(洪檢), 시독관 정연순(鄭淵淳), 검토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김재찬(金載瓚),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 종신 응선군 이희(李爚), 행 부호군 김정우(金廷遇), 대사간 김문순(金文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문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五日 庚辰[己卯]

○ 己亥四月二十五日卯時, 上御宣政殿.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允鋐, 行司直洪樂性, 行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尹東暹,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江華留守洪樂純, 右參贊權道, 禮曹判書鄭光漢, 戶曹判書金華鎭,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漢城右尹李性源, 吏曹參議柳戇, 行右承旨李義翊, 同副承旨申應顯, 大司諫金文淳, 校理鄭淵淳, 假注書金載瓚,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事變假注書白師謹, 以次進伏訖. …… 文淳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又所啓,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5일(경진[기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김문순(金文淳)의 계

○ 기해년(1779) 4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지중추부사 구윤옥(具允鋐), 행 사직 홍낙성(洪樂性),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윤동섬(尹東暹),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강화유수 홍낙순(洪樂純), 우참찬 권도(權道), 예조판서 정광한(鄭光漢),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한성우윤 이성원(李性源), 이조참의 유당(柳戇), 행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동부승지 신응현(申應顯),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교리 정연순(鄭淵淳), 가주서 김재찬(金載瓚),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백사근(白師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문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七日 壬午[辛巳]

○ 正言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7일(임오[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신응연(申應淵)의 계

○ 정언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八日 癸未[壬午]

○ 獻納李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8일(계미[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헌납 이평(李枰)의 계

○ 헌납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四月 二十九日 甲申[癸未]

○ 正言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4월 29일(갑신[계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신응연(申應淵)의 계

○ 정언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五月 二日 丙戌[乙酉]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司諫李恒祚, 掌令李奎緯, 獻納李枰, 正言申應淵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5월 2일(병술[을유])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항조(李恒祚), 장령 이규위(李奎緯)[17], 헌납 이평(李枰), 정언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17) 이규위(1731~?): 본관 한산(韓山). 자 평서(平瑞).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대사간, 곡산부사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五月 二日 丙戌[乙酉]

○ 掌令李奎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5월 2일(병술[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장령 이규위(李奎緯)의 계

○ 장령 이규위(李奎緯)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五月 二日 丙戌[乙酉]

○ 正言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5월 2일(병술[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신응연(申應淵)의 계

○ 정언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五月 二十二日 乙巳

○ 己亥五月二十二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左承旨鄭民始, 左副承旨徐有防, 右副承旨申應顯, 同副承旨李秉模, 假注書金載瓚,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以次進伏訖. …… 上命諸承旨, 讀奏公事. …… (民始)又讀奏濟州牧使趾海妻檨到配啓本. ……

❖ 정조 3년(1779) 기해년 5월 22일(을사)

□ 좌승지 정민시(鄭民始)가 홍지해(洪趾海)의 처 삼(檨)이 배소에 도착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을 읽어 아룀

○ 기해년(1779) 5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 우부승지 신응현(申應顯), 동부승지 이병모(李秉模), 가주서 김재찬(金載瓚),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승지들에게 명하여 공사를 읽어 아뢰도록 하였다. 〈중략〉 정민시가 또 홍지해(洪趾海)의 처 삼(檨)이 배소에 도착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을 읽어 아뢌다. 〈하략〉.

△ 주제어: 홍지해, 제주목사, 계본.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一日 癸丑

○ 己亥六月初一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判府事徐命膺, 知中樞府事具允鈺, 行司直李重祜·李徽之,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江華留守洪樂純, 右參贊權道, 禮曹判書鄭光漢, 戶曹判書金華鎭, 禮曹參判兪彦鎬, 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衍祥·洪國榮, 大司成李普行, 開城留守李鎭衡, 右尹李性源, 吏曹參議柳戇, 大司諫蔡弘履, 右承旨申應顯, 副校理尹行元, 假注書洪仁浩, 記事官徐龍輔·李信祜, 事變假注書兪任柱, 以次進伏訖. …… 弘履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채홍리(蔡弘履)의 계

○ 기해년 6월 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판부사 서명응(徐命膺), 지중추부사 구윤옥(具允鈺), 행 사직 이중호(李重祜)·이휘지(李徽之),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강화유수 홍낙순(洪樂純), 우참찬 권도(權道), 예조판서 정광한(鄭光漢),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예조참판 유언호(兪彦鎬),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이연상(李衍祥)·홍국영(洪國榮), 대사성 이보행(李普行), 개성유수 이진형(李鎭衡), 우윤 이성원(李性源), 이조참의 유당(柳戇), 대사간 채홍리(蔡弘履), 우승지 신응현(申應顯), 부교리 윤행원(尹行元), 가주서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이신호(李信祜), 사변가주서 유임주(兪任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홍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六日 戊午

○ 大司諫林得浩, 掌令南鶴聞, 正言徐郁修所啓,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6일(무오)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등의 계

○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장령 남학문(南鶴聞), 정언 서욱수(徐郁修)[18]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18) 서욱수(1738~?): 본관 대구(大丘). 자 사빈(士彬).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六日 戊午

○ 掌令南鶴聞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竄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6일(무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장령 남학문(南鶴聞)의 계

○ 장령 남학문(南鶴聞)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六日 戊午

○ 正言徐郁修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6일(무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서욱수(徐郁修)의 계

○ 정언 서욱수(徐郁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二日 甲子

○ 大司諫林得浩疏曰, …… 且伏念凶逆餘醜之竄配於絶島者, 法意甚嚴, 而臣於待罪南邑時, 詳察楸子一島之地形, 則此島以周回三十里之地, 西通珍島之鳥島, 東接康津之呂鼠島, 南距濟州, 其北卽靈岩郡所通之處, 而距官門爲陸路百餘里, 水路三百餘里, 商舶漁船之來往於本島者, 可謂四通五達, 而其所管領之責, 則專屬於靈岩一邑, 爲守令者, 雖欲伺察動靜, 其威令之所及, 只在於北一邊, 而至於東西南三面, 則窺察無策, 其爲踈虞, 孰甚於此哉? 以羅州之黑山島, 康津之薪智島言之, 或有別將, 或有萬戶, 一島事情, 主管有人, 獨於此島而不然, 有欠於嚴隄防之意. 臣愚見, 依他道例, 設置別將, 斷不可已也. 答曰, 省疏具悉所陳, 當留意, 末端事依施, 爾其勿辭察職.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2일(갑자)

□ 추자도(楸子島)에 별장(別將)을 둘 것을 청하는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상소

○ 대사간 임득호(林得浩)가 상소하였다. "〈상략〉 또 삼가 생각건대, 흉악한 역적의 잔당들을 절도(絶島)에 찬배(竄配)하는 것은 법의(法意)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남쪽 고을의 수령이 되었을 때 추자도(楸子島) 한 섬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섬은 둘레가 30리의 땅으로 서쪽으로는 진도(珍島)의 조도(鳥島)에 통하고, 동쪽으로는 강진(康津)의 여서도(呂鼠島)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제주(濟州)에 이르고, 그 북쪽은 영암군(靈岩郡)에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문(官門)과의 거리가 육로로 100여 리, 수로로 300여 리가 되어 상선과 어선이 이 섬에 왕래하는 것이 사통오달(四通五達)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관할하는 책임이 오직 영암(靈岩) 한 고을에 소속되어 수령된 자가 비록 동정을 살피고자 하더라도 그 위령(威令)이 미치는 바가 단지 북쪽 한쪽에만 있고, 동·서·남 3면에 이르러서는 규찰할 대책이 없으니 그 허술함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나주(羅州)의 흑산도(黑山島)와 강진의 신지도(薪智島)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혹은 별장(別將)이 있고 혹은 만호(萬戶)가 있어서 한 섬의 사정(事情)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독 이 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제방(隄防)을 엄히 하는 뜻에 흠이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타도(他道)의 사례에 의거하여 별장을 설치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으니 유의하겠

다. 말단에 언급한 사항은 그대로 시행하겠으니 너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별장, 상소.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三日 乙丑

○ 大司憲李坤, 大司諫林得浩, 正言安廷玹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3일(을축)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이곤(李坤) 등의 계

○ 대사헌 이곤(李坤)[19],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19) 이곤(1737~1795): 본관 연안(延安). 자 신경(信卿).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예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三日 乙丑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3일(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四日 丙寅

○ 大司憲李坤, 正言安廷玹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4일(병인)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이곤(李坤) 등의 계

○ 대사헌 이곤(李坤)[20],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20) 이곤(1737~1795): 본관 연안(延安). 자 신경(信卿).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예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四日 丙寅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答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4일(병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유신, 종갑, 의준,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四日 丙寅

○ 己亥六月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 慶尙道暗行御史, 右副承旨, 同爲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判敦寧具允鈺, 行刑曹判書李徽之,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江華留守洪樂純, 兵曹判書權道, 禮曹判書鄭光漢, 戶曹判書金華鎭, 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衍祥, 開城留守李鎭衡, 漢城右尹李性源, 大司憲李坤, 大司諫林得浩, 校理鄭淵淳, 正言安廷玹, 副修撰沈樂洙, 御史黃昇源, 右承旨尹勉升, 右副承旨吳載紹, 假注書李錫夏, 事變假注書兪任柱, 記注官崔大奎, 記事官金健修, 以次進伏訖. …… 道曰, 因大司諫林得浩陳疏, 請差出楸子島別將而蒙允矣. 當此新設之初, 宜究接濟之道, 分付道臣, 以爲報備局, 區劃之地, 何如? 上曰, 後日次對, 更稟, 可也. 【出擧條】…….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4일(병인)

□ 추자도(楸子島)에 신설된 별장(別將)에 대한 접제(接濟) 방도를 강구할 것을 청하는 병조판서 권도(權道)의 계

○ 기해년(1779) 6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하는 자리에 경상도 암행어사, 우부승지가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판돈녕 구윤옥(具允鈺), 행 형조판서 이휘지(李徽之),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강화유수 홍낙순(洪樂純), 병조판서 권도(權道), 예조판서 정광한(鄭光漢),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이연상(李衍祥), 개성유수 이진형(李鎭衡), 한성우윤 이성원(李性源), 대사헌 이곤(李坤),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교리 정연순(鄭淵淳), 정언 안정현(安廷玹), 부수찬 심낙수(沈樂洙), 어사 황승원(黃昇源), 우승지 윤면승(尹勉升), 우부승지 오재소(吳載紹), 가주서 이석하(李錫夏), 사변가주서 유임주(兪任柱), 기주관 최대규(崔大奎), 기사관 김건수(金健修)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권도가 아뢰기를, "대사간 임득호(林得浩)가 상소를 올려 추자도(楸子島)에 별장(別將)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설하는 초기에 마땅히 접제(接濟)[21]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니,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비국에 보고하여 구획(區劃)하게 하는 것

21) 접제(接濟):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어서 살아 나갈 방도를 세우는 것을 말함.

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 차대(次對)에 다시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22]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별장, 신설.

22) 《비변사등록》 정조 3년 6월 1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五日 丁卯

○ 徐有元, 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長鬐縣遠竄罪人聖中, 全羅康津縣古今島移配事, 草記批旨內, 更定配所以入事, 命下矣. 罪人聖中, 濟州牧大靜縣移配,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自長鬐縣配所, 執捉押送,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5일(정묘)

□ 죄인 성중(聖中)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서유원(徐有元)(徐有元)[23]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 장기현(長鬐縣)에 원찬(遠竄) 한 죄인 성중(聖中)을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로 이배하는 일에 대한 초기(草記)의 비지(批旨)[24]에 다시 배소(配所)를 정하여 들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성중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이배(移配)하고 전 죄목에 따라서 규례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장기현(長鬐縣)의 배소에서 붙잡아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성중, 대정현, 이배.

23) 서유원(徐有元)(1735~?): 본관 대구(大丘). 자 춘보(春甫).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24) 비지(批旨): 임금이 내린 비답(批答).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十九日 辛未

○ 正言安廷玹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19일(신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유신, 종갑, 의준,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二十五日 丁丑

○ 尹塾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永綏封進農形狀啓, 則皮封不爲具銜, 莫重狀聞, 如是疎忽, 事體未安. 原狀啓依例捧入, 而不可無飭, 濟州牧使金永綏,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25일(정축)

□ 장계의 피봉(皮封)에 직함을 갖추지 쓰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 하라는 윤숙(尹塾)의 계

○ 윤숙(尹塾)이 아뢰기를, "방금 삼가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가 올린 농형장계(農形狀啓)를 보니 피봉(皮封)에 직함을 갖추지 쓰지 않았습니다. 막중한 장계를 이처럼 소홀히 하였으니 일의 체모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래의 장계는 규례대로 거두어 들이되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목사 김영수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경책.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二十八日 庚辰

○ 己亥六月二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吏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金孝大, 江華留守洪樂純, 兵曹判書權徬, 戶曹判書金華鎭, 吏曹參判兪彦鎬, 行副司直李衍祥, 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洪國榮, 開城留守李鎭衡, 吏曹參議柳戇, 大司諫李奎緯, 校理韓晩裕, 左副承旨鄭元始, 假注書李百亨, 事變假注書朴奎淳, 記事官金健修·李信祜, 以次進伏訖. …… 徬曰, 以楸子島別將新設事, 有後日次對稟處之命矣. 敢此仰稟. 上曰, 前道臣武將之意, 何如? 左副承旨鄭民始曰, 本島設鎭之論, 不無所見, 而臣意則此是彈丸小島, 與黑山島等地有異, 自本郡, 足以管束島中凡事, 設置官長, 則館舍廩祿等節, 亦必先爲區劃, 然後始可議爲, 而物力亦無出處, 似難輕議矣. 訓鍊大將洪國榮曰, 臣未諳其形便, 亦未知其財力所入之幾何, 有難臆對矣. 御營大將李敬懋曰, 今此設鎭之論, 非爲關防, 而專出於慮弊句檢之意, 則不必設鎭將, 自本官擇定鄕人將校中有風力者一人, 作爲任窠, 留置本島, 使之嚴加檢束, 似好矣. 權徬曰, 本島無官長之地, 重罪人編配, 事涉疎虞. 前諫長林得浩之請置邊將者, 不無意見, 而前道臣鄭元始之言, 亦自有理矣. 聞島中凡事, 自本郡檢察, 則反有勝於卑微之一邊將, 且雖欲設置, 而館舍及廩祿接濟之節, 亦不可不先爲措置, 然後始可議定, 令本道道臣, 詳察事勢當否, 以爲狀聞處之之地, 何如? 上曰, 令本道道臣, 設置之便否, 區劃之物力, 參量事情, 出意見論理狀聞後, 更爲稟處, 可也.【出擧條】…….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28일(경진)

□ 병조판서 권도 등이 입시하여 추자도(楸子島)에 별장(別將)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기해년(1779) 6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이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강화유수 홍낙순(洪樂純), 병조판서 권도(權徬),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이조참판 유언호(兪彦鎬), 행 부사직 이연상(李衍祥),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홍국영(洪國榮), 개성유수 이진형(李鎭衡), 이조참의 유당(柳戇), 대사간 이규위(李奎緯), 교리 한만유(韓晩裕), 좌부승지 정원시(鄭元始), 가주서 이백형(李百亨), 사변

가주서 박규순(朴奎淳), 기사관 김건수(金健修)·이신호(李信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권도가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별장(別將)을 신설하는 일에 대해 후일 차대(次對)에 아뢰어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 관찰사와 무장(武將)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도(本島)에 진(鎭)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이 섬은 탄환만큼 작은 섬으로 흑산도(黑山島) 등지와는 다름이 있어 본군(本郡)에서 섬 안의 모든 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장(官長)을 설치하면 관사(館舍)와 봉급 등 모든 절차를 또한 반드시 먼저 구획(區劃)한 연후에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데, 물력(物力)이 또한 나올 곳이 없으니 가벼이 논의하기를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훈련대장 홍국영이 아뢰기를, “신은 그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재력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억측으로 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어영대장 이경무가 아뢰기를, “지금 여기에 진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관방(關防)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폐단을 염려하여 단속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인즉 진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관(本官)에서 향인 장교(鄕人將校) 가운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자 1인을 택정(擇定)하여 책임질 자리를 만들어 본도(本島)에 머물게 하여 엄히 검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권도가 아뢰기를, “본도(本島)는 관장(官長)이 없는 곳인데 중죄인(重罪人)이 편중되게 유배되어 허술할 염려가 있습니다. 전 대사간 임득호(林得浩)가 변장(邊將)을 두자고 청한 것은 뜻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관찰사 정원시의 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섬의 모든 일을 듣고 본군(本郡)에서 검찰하는 것이 지위가 낮고 하찮은 1인의 변장보다 도리어 낫습니다. 또한 비록 설치하고자 해도 관사와 봉급을 접제(接濟)하는 절차를 또한 먼저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후에야 비로소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도(本道) 관찰사로 하여금 일의 형세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자세히 살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설치의 편부(便否)와 구획할 물력과 사정을 참작하여 의견을 내어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 다시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25]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추자도, 별장, 신설.

25) 《비변사등록》 정조 3년 6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三十日 壬午

○ 大司憲趙時俊, 司諫洪彦喆, 掌令南鶴聞, 持平洪樂淵, 獻納李碩九, 正言安廷玹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熳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30일(임오)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사간 홍언철(洪彦喆), 장령 남학문(南鶴聞), 지평 홍낙연(洪樂淵), 헌납 이석구(李碩九)[26],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경빈(敬彬)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26) 이석구(1721~1785): 본관 성산(星山). 자(字) 성여(成汝). 호 동계(東溪). 1751년(영조 27) 문과 급제. 영해부사, 사간, 사헌부집의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三十日 壬午

○ 掌令南鶴聞, 持平洪樂淵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痛矣, 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辰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經年爭執, 尙逭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岉之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 旣以後翼爲弟, 且以量·錥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遊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 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30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장령 남학문(南鶴聞) 등의 계

○ 장령 남학문(南鶴聞), 지평 홍낙순(洪樂淵)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

(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성중(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27]과 더불어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식(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峸)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27)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사도세자의 일로 영조를 무욕(誣辱)한 사건이 일어나 이덕사, 조재한 등이 복주(伏誅)되고 환관 김수현(金壽賢)과 이흥록(李興祿) 등이 귀양감.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鋏)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六月 三十日 壬午

○ 司諫洪彦喆, 獻納李碩九, 正言安廷玹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旣皆伏法, 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迹旣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此輩久逭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6월 30일(임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헌납 이석구(李碩九),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성중(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

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성중(聖中)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28]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28)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一日 癸未

○ 大司憲趙時俊, 司諫洪彦喆, 掌令南鶴聞, 持平洪樂淵, 獻納李碩九, 正言安廷玹·徐有鍊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일(계미)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사간 홍언철(洪彦喆), 장령 남학문(南鶴聞), 지평 홍낙연(洪樂淵), 헌납 이석구(李碩九), 정언 안정현(安廷玹)·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一日 癸未

○ 持平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일(계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홍낙연(洪樂淵)의 계

○ 지평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一日 癸未

○ 正言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志遜,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일(계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지손(志遜)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유신, 종갑, 의준, 지손.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六日 戊子

○ 大司憲趙時俊, 司諫洪彦喆, 持平洪樂淵, 獻納李碩九, 校理鄭淵淳, 副校理柳孟養·尹行元, 正言安廷玹·徐有鍊, 修撰徐有成·趙鼎鎭, 副修撰金宇鎭·沈樂洙啓曰, 請喬桐府黜置罪人鄭致達妻, 快正王法. 以洩神人之憤. …… 答曰, 不允. 大司憲趙時俊, 司諫洪彦喆, 持平洪樂淵, 獻納李碩九, 正言安延玹·徐有鍊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持平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獻納李碩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6일(무자)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홍낙연(洪樂淵), 헌납 이석구(李碩九), 교리 정연순(鄭淵淳), 부교리 유맹양(柳孟養)·윤행원(尹行元), 정언 안정현(安廷玹)·서유련(徐有鍊), 수찬 서유성(徐有成)·조정진(趙鼎鎭), 부수찬 김우진(金宇鎭)·심낙수(沈樂洙)가 아뢰기를, "청컨대 교동부에 출치한 안치달의 처에 대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조시준, 사간 홍언철, 지평 홍낙연, 헌납 이석구, 정언 안정현·서유련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지평 홍낙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헌납 이석구(李

碩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한후락,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七日 己丑

○ 司諫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7일(기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十日 壬辰

○ 徐有防, 以承文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濟州漂民尹道俊等九名出送事, 禮部咨文, 纔已出來矣. 令槐院撰出回咨, 正書安寶, 定禁軍給馬, 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 以爲轉送北京之地, 漂民出送後, 例有無方物謝表矣. 謝表亦爲撰出, 順付於節使行之意, 分付槐院及該曹,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0일(임진)

□ 제주(濟州) 표민(漂民)을 보내준 일로 보내온 자문(咨文)에 대해 회자(回咨)하기를 청하는 승문원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승문원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 표민(濟州漂民) 윤도준(尹道俊) 등 9명을 보내준 일로 예부 자문(禮部咨文)이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자문을 지어내어 정서(正書)하여 옥새를 찍고, 금군을 정하여 말을 지급하여 만부(灣府)로 내려보내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하여 북경(北京)으로 전송(轉送)하도록 하고, 표민을 내보낸 뒤에는 으레 방물(方物)과 사표(謝表)가 없었습니다. 사표 또한 지어 절사(節使)의 행차편에 부치도록 승문원과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9)]

△ 주제어: 표민, 윤도준, 자문, 회자.

29) 《비변사등록》 정조 3년 7월 1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十日 壬辰

○ 李義翊, 以備邊司言啓曰, 自北京回還漂人全羅道濟州人尹道俊等七名, 臨陂人鄭奉贊等二名, 縣次替送, 繞已上來, 故使本司郎廳, 詳細問情後, 所供辭緣, 別單書入, 而今無留置更問之事, 下去時, 分付沿路各道, 使之善爲饋食, 所騎刷馬, 次次替給之意, 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0일(임진)

□ 제주(濟州) 표류인(漂流人) 윤도준(尹道俊) 등을 문정한 내용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내려갈 때 음식과 쇄마를 지급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북경(北京)에서 돌아오는 전라도 제주인(濟州人) 윤도준(尹道俊) 등 7명과 임피인 정봉찬 등 2명이 현차(縣次)로 체송(替送)되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본사 낭청으로 하여금 자세히 문정(問情)한 후에 진술한 사연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지금은 더 머물러 두어도 다시 물을 것이 없으니, 내려갈 때 연로(沿路)의 각 도(各道)에 분부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타고 갈 쇄마(刷馬)를 차례로 지급해 주라는 뜻으로 또한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30]

△ 주제어: 표민, 윤도준, 문정, 별단, 쇄마, 지급.

30) 《비변사등록》 정조 3년 7월 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十二日 甲午

○ (徐有防)又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各樣進上馬八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2일(갑오)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각양 진상마(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또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각양 진상마(先運各樣進上馬) 88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별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十四日 丙申

○ 鄭民始,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進上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康津病留, 三匹到衿川病留, 合五匹計除, 實納馬一百九十五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14일(병신)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진상세공마(進上歲貢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진상세공마(後運進上歲貢馬) 200필 가운데 1필은 배에서 죽고, 1필은 강진(康津)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3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어서 합 5필을 제외하면 실제로 바치는 말 195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별단.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日 壬寅

○ 己亥七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漢城判尹具善復, 行知中樞府事洪樂性, 判敦寧府事具允鈺, 禮曹判書鄭光漢, 江華留守洪樂純, 右參贊權儁,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漢城右尹李性源, 校理權以綱, 持平宋樂, 右副承旨李秉模, 記事官李兢淵, 事變假注書趙衍德, 記事官徐龍輔·李信祜, 以次進伏訖. …… 樂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0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기해년(1779) 7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지중추부사 홍낙성(洪樂性), 판돈녕부사 구윤옥(具允鈺), 예조판서 정광한(鄭光漢), 강화유수 홍낙순(洪樂純), 우참찬 권도(權儁),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 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한성우윤 이성원(李性源), 교리 권이강(權以綱), 지평 송락(宋樂), 우부승지 이병모(李秉模), 기사관 이긍연(李兢淵), 사변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이신호(李信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송락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二日 甲辰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申應淵·宋樂, 正言朴天行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2일(갑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신응연(申應淵)·송락(宋樂),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이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二日 甲辰

○ 府啓, 持平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2일(갑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二日 甲辰

○ 院啓, 正言朴天行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2일(갑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박천행(朴天行)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三日 乙巳

○ 三司合啓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宋樂·申應淵, 正言朴天行,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3일(을사)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와 홍문관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송락(宋樂)·신응연(申應淵),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三日 乙巳

○ 持平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定縣[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3일(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지평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三日 乙巳

○ 正言朴天行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3일(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박천행(朴天行)의 계

○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四日 丙午

○ 三司合啓.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申應淵·宋樂, 正言朴天行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持平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如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正言朴天行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星,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4일(병오)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와 홍문관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신응연(申應淵)·송락(宋樂),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지평 신응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정언 박천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

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한후락,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五日 丁未

○ 三司合啓,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宋樂·申應淵, 獻納李命勳, 正言朴天行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持平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獻納李命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5일(정미)

□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헌부와 사간원와 홍문관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송락(宋樂)·신응연(申應淵), 헌납 이명훈(李命勳),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지평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헌납 이명훈(李命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한후락,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六日 戊申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申應淵·宋樂, 獻納李命勳, 正言朴天行等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6일(무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신응연(申應淵)·송락(宋樂), 헌납 이명훈(李命勳), 정언 박천행(朴天行)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六日 戊申

○ 持平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6일(무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신응연(申應淵)의 계

○ 지평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한후락,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六日 戊申

○ 正言朴天行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6일(무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박천행(朴天行)의 계

○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윤범성, 성중.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七日 己酉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宋樂·申應淵, 獻納李命勳, 正言朴天行等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7일(기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도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송락(宋樂)·신응연(申應淵), 헌납 이명훈(李命勳), 정언 박천행(朴天行)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七日 己酉

○ 持平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7일(기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지평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七日 己酉

○ 獻納李命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7일(기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헌납 이명훈(李命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八日 庚戌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申應淵·宋樂, 獻納李命勳, 正言朴天行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8일(경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신응연(申應淵)·송락(宋樂), 헌납 이명훈(李命勳),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八日 庚戌

○ 持平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正言朴天行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8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신응연(申應淵) 등의 계

○ 지평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한후락,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九日 辛亥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持平宋樂·申應淵, 獻納李命勳, 正言朴天行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9일(신해)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지평 송락(宋樂)·신응연(申應淵), 헌납 이명훈(李命勳), 정언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九日 辛亥

○ 持平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9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락(宋樂)의 계

○ 지평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七月 二十九日 辛亥

○ 獻納李命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7월 29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헌납 이명훈(李命勳)의 계

○ 헌납 이명훈(李命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十五日 丙寅

○ 司諫李東郁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待,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旣皆伏法, 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迹旣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此輩久逭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15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이동욱(李東郁)의 계

○ 사간 이동욱(李東郁)[31]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성중(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

31) 이동욱(1739~?): 본관 평창(平昌). 자 유문(幼文). 호 소암(蘇巖).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의주부윤, 참판 역임.

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성중(聖中)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32]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32)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十九日 庚午

○ 正言李亮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19일(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이양재(李亮載)의 계

○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三日 甲戌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行大司諫鄭晩淳, 司諫李東郁, 持平徐有成, 正言李亮載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熳[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3일(갑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행 대사간 정만순(鄭晩淳), 사간 이동욱(李東郁), 지평 서유성(徐有成),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경빈(敬彬)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三日 甲戌

○ 持平徐有成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昨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經年爭執, 尙逭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岐之弟, 今番諸賊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 旣以後翼爲弟, 且以量·鍥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3일(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서유성(徐有成)의 계

○ 지평 서유성(徐有成)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성중(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 (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33]과 더불어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식(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峸)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鍥)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33)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사도세자의 일로 영조를 무욕(誣辱)한 사건이 일어나 이덕사, 조재한 등이 복주(伏誅)되고 환관 김수현(金壽賢)과 이흥록(李興祿) 등이 귀양감.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三日 甲戌

○ 正言李亮載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旣皆伏法, 則顧此群兇, 獨可容貸耶? 情迹旣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此輩久逭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3일(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양재(李亮載)의 계

○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성중(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

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성중(聖中)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34]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34)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五日 丙子

○ 己亥八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前洪忠監司同爲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兼漢城判尹具善復, 戶曹判書金華鎭, 禮曹判書李福源, 工曹判書鄭好仁, 刑曹判書趙浚, 訓鍊院都正李敬懋, 行都承旨洪國榮, 漢城右尹李性源, 前洪忠監司李命植, 持平徐有成, 正言李亮載·李正薰, 校理金翊休, 副修撰沈樂洙, 同副承旨南鶴聞, 假注書徐鼎修, 事變假注書黃仁炫, 記事官金勉柱·鄭東浚, 以次進伏訖. …… 有成·亮載·正薰曰, 臣等謂濟州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宜矣.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5일(병자)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서유성(徐有成) 등의 계

○ 기해년(1779) 8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전 홍충감사가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겸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예조판서 이복원(李福源), 공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형조판서 조준(趙浚), 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한성우윤 이성원(李性源), 전 홍충감사 이명식(李命植), 지평 서유성(徐有成), 정언 이양재(李亮載)·이정훈(李正薰)[35], 교리 김익휴(金翊休), 부수찬 심낙수(沈樂洙),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사변가주서 황인현(黃仁炫), 기사관 김면주(金勉柱)·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유성·이양재·이정훈이 아뢰기를, "신들은 제주(濟州)에 이배(移配)한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국청.

35) 이정훈(1740~?): 본관 평창(平昌). 자 원직(元直).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七日 戊寅

○ 兩司合啓, 大司憲趙時俊, 行大司諫鄭晩淳, 持平徐有成, 正言李亮載·李正薰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7일(무인)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서유성(徐有成)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행 대사간 정만순(鄭晩淳), 지평 서유성(徐有成), 정언 이양재(李亮載)·이정훈(李正薰)이 아뢰기를, "이경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七日 戊寅

○ 持平徐有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請慶源府定配罪人鳴遠,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7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서유성(徐有成) 등의 계

○ 지평 서유성(徐有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七日 戊寅

○ 正言李正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7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정훈(李正薰)의 계

○ 정언 이정훈(李正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八日 己卯

○ 正言李亮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8일(기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양재(李亮載)의 계

○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八月 二十九日 庚辰

○ 己亥八月二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特進官洪樂性, 知事黃景源, 經筵官宋德相, 參贊官李在學, 侍讀官嚴思晩, 檢討官金宇鎭, 假注書徐鼎修, 記事官李信祜·鄭東浚, 安川君烓, 行副護軍李潤禧, 司諫沈命德, 以次進伏訖. …… 命德進前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命德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命德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8월 29일(경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심명덕(沈命德)의 계

○ 기해년(1779) 8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특진관 홍낙성(洪樂性), 지사 황경원(黃景源), 경연관 송덕상(宋德相), 참찬관 이재학(李在學), 시독관 엄사만(嚴思晩), 검토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 안천군 이계(李烓), 행 부호군 이윤희(李潤禧),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명덕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명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九月 五日 丙戌

○ …… **丁未華人漂船泊耽羅, 不改漢衣冠, 朝廷過慮, 執送於虜, 乃蹶然而起曰, 此大義所關, 遂製一疏, 因道臣投呈. 先正臣李珥之被誣於凶黨也, 上疏伸辨, 以救斯文之禍. 蓋其平居絶口時事, 而至於尊周大義, 衛道抑邪, 奮不顧身, 可使懦夫立而頑夫廉也. …….**

❖ 정조 3년(1779) 기해년 9월 5일(병술)

□ **중국인의 탐라(耽羅) 표류**

○ 〈상략〉 정미년(1677, 헌종 8년)에 중국 사람이 탐라(耽羅)에 표류하여 와서 정박하였는데 중국의 의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잡아서 되[虜]에게 보내니 떨쳐 일어나, '이것은 대의(大義)에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소(疏)를 지어 올리니, 이로 인하여 도신(道臣)이 투정(投呈)하면서, '선정신(先正臣) 이집(李珥)은 흉당(凶黨)에게 무함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소하여 억울함을 밝혀서 사문(斯文)의 화(禍)를 구하였습니다. 대개 평소에는 시사(時事)를 전혀 말하지 않았으나 존주(尊周)[36]의 대의에 대하여는 분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니, 나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서고 완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청렴해지도록 할 만하였습니다. 〈하략〉.

△ 주제어: 탐라, 화인, 표선.

36) 존주(尊周): 주(周)나라 왕실(王室)을 존숭(尊崇)하는 것. 곧 왕실을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명(明)나라를 존숭하고 청(淸)나라를 배척하는 뜻으로 쓰였음.

❖ 乾隆 四十四年 己亥 九月 二十四日 癸巳[乙巳]

○ 正言許霳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嘻嘻, 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如德師·載翰輩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旣皆伏法, 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跡旣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此輩久逭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範聖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迹叵測, 雖以渠之拱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9월 24일(계사[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허담(許霳)의 계

○ 정언 허담(許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성중(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

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성중(聖中)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37]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37)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九日 己未

○ 兩司合啓, 大司諫趙英鎭, 掌令尹行晉, 持平宋民載·林道浩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9일(기미)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장령 윤행진(尹行晉)[38], 지평 송민재(宋民載)[39]·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경빈(敬彬)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 가운데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 합당한 법률을 아직 시행하지 있지 않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이경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38) 윤행진(1733~?): 본관 남원(南原).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39) 송민재(?~?): 홍문관교리, 사헌부집의, 사간원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九日 己未

○ 府啓, 持平宋民載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罪人趙嵎, 以物故罪人岼之弟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緖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 旣以後翼爲弟, 且以量·鍥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遊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時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 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9일(기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嵎)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岼)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鍥)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日 庚申

○ 兩司合啓, 持平宋民載·林道浩, 正言姜儐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0일(경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지평 송민재(宋民載)·임도호(林道浩),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日 庚申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0일(경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日 庚申

○ 正言姜俔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 罪犯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旣皆伏法, 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跡旣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隷,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絶島, 而此輩之逭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0일(경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강인(姜俔)의 계

○ 정언 강인(姜俔)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성중(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

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꿰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성중(聖中)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隷)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40]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40)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一日 辛酉

○ 兩司合啓, 持平宋民載, 正言姜儃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1일(신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지평 송민재(宋民載), 정언 강인(姜儃)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一日 辛酉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1일(신유)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一日 辛酉

○ 正言姜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1일(신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강인(姜儁)의 계

○ 정언 강인(姜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二日 壬戌

○ 兩司合啓,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持平宋民載·林道浩, 正言姜儐·嚴思憲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2일(임술)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송민재(宋民載)·임도호(林道浩), 정언 강인(姜儐)·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二日 壬戌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爲[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2일(임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二日 壬戌

○ 正言姜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2일(임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강인(姜儃)의 계

○ 정언 강인(姜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三日 癸亥

○ 兩司合啓,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持平宋民載·林道浩, 正言姜儐·嚴思憲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3일(계해)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송민재(宋民載)·임도호(林道浩), 정언 강인(姜儐)·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三日 癸亥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3일(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三日 癸亥

○ 正言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3일(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四日 甲子

○ 兩司合啓,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尹行晉, 持平宋民載·林道浩, 正言姜僩·嚴思憲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4일(갑자)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송민재(宋民載)·임도호(林道浩), 정언 강인(姜僩)·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제주목,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四日 甲子

○ 掌令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4일(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장령 윤행진(尹行晉)의 계

○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四日 甲子

○ 正言姜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4일(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강인(姜儃)의 계

○ 정언 강인(姜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五日 乙丑

○ 正言姜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5일(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강인(姜儃)의 계

○ 정언 강인(姜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八日 戊辰

○ 兩司合啓, 大司諫徐有元, 持平尹得孚,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8일(무진)

□ 경빈(敬彬)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서유원(徐有元)(徐有元)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간 서유원(徐有元)(徐有元), 지평 윤득부(尹得孚), 정언 이제만(李濟萬)[41]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경빈, 국청.

41) 이제만(1738~1810): 본관 전의(全義). 자 겸지(兼之). 호 수와(守窩).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이조정랑, 좌부승지, 병조참의 역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八日 戊辰

○ 持平尹得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8일(무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윤득부(尹得孚)의 계

○ 지평 윤득부(尹得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八日 戊辰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8일(무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十九日 己巳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19일(기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二十日 庚午

○ 己亥十月二十日辰時, 上御宣政殿. 初啓覆入侍時, 東班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純, 漢城判尹具善復, 左參贊黃景源, 戶曹判書金華鎭, 禮曹判書李福源, 漢城右尹徐有慶, 吏曹參議鄭元始, 大司諫徐有元, 副校理沈樂洙, 西班判中樞府事鄭弘淳·海溪君烋·綾恩君具允明, 判敦寧具允鉅, 知中樞府事韓光會, 刑曹判書鄭尙淳, 工曹參判沈墩, 刑曹參判趙時俊, 兵曹參判李普行, 參議兪恒柱, 刑曹參議李在學, 左承旨李亨逵, 右承旨李得臣, 左副承旨金文淳, 同副承旨朴祐源, 假注書李錫夏·徐鼎修,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以次侍立訖, …… 有元·樂洙·濟萬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樂洙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有元·濟萬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20일(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서유원(徐有元)(徐有元) 등의 계

○ 기해년(1779) 10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첫 계복(啓覆)[42]에 입시할 때 동반에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순(洪樂純),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예조판서 이복원(李福源), 한성우윤 서유경(徐有慶), 이조참의 정원시(鄭元始), 대사간 서유원(徐有元)(徐有元), 부교리 심낙수(沈樂洙), 서반에 판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해계군 이집(李㷜)·능은군 구윤명(具允明), 판돈녕 구윤옥(具允鉅), 지중추부사 한광회(韓光會), 형조판서 정상순(鄭尙淳), 공조참판 심발(沈墩), 형조참판 조시준(趙時俊), 병조참판 이보행(李普行), 참의 유항주(兪恒柱), 형조참의 이재학(李在學),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우승지 이득신(李得臣), 좌

42) 계복(啓覆): 사형수(死刑囚)를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다시 심리(審理)하는 일.

부승지 김문순(金文淳), 동부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이석하(李錫夏)·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서유원(徐有元)·심낙수·이제만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낙수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원(徐有元)·이제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二十一日 辛未

○ 持平沈樂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堣,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21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심낙수(沈樂洙)의 계

○ 지평 심낙수(沈樂洙)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嵎)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조우,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月 二十八日 戊寅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0월 28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日 壬午

○ 掌令申致權, 正言李濟萬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澤遂爛漫同參於啓能凶慘不道之謀, 而只誅其身, 王章已失, 輿憤未洩, 其陰凶情節, 其父其弟, 萬無不知之理. 請彦衡·養遂·獻遂竝令王府, 設鞫嚴問. 會遂之罪惡, 與澤遂一而二, 二而一, 則啓能凶慘不道之謀, 決無不知, 而忍杖不服, 遽有酌處之命, 有乖獄體. 請還寢會遂絶島定配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移配罪人) 경빈(敬彬)의 국청(鞫廳)을 청하는 장령 신치권(申致權) 등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경빈(敬彬)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더불어 난만하게 서로 체결된 정상이 이미 여러 적의 초사(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항변하고 승복하지 않아서 마땅히 율(律)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왕법(王法)으로 따지면 너무 관대(寬大)하게 처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移配罪人) 이경빈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그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日 壬午

○ 掌令申致權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匈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有臣·宗甲·義駿, 和應聖中叵測之說, 推詡薦引, 看作奇貨, 敢於書筵出入之時, 肆然迭奏. 噫嘻痛矣, 聖中之主張凶論, 罪不容誅, 而此輩之同一心腸, 尤極痛惋, 究厥罪犯, 與聖中, 豈可異同?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일(임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들에 대한 설국(設鞫)과 엄국(嚴鞫)을 청하는 장령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利)를 좋아하는 흉도(匈徒)를 체결(締結)하여 난만(爛漫)하게 상통(和通)한 정상은, 그가 이미 명백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곧 하루라도 어찌 천지간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란 지극히 엄한 것이니, 도현(島縣)에 노로 삼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대로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定配罪人)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문(嚴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캐어내어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은 노정중과 화응(和應)하여 망측(罔測)한 말을 한 것을 추켜세워 자랑하고 천인(薦引)하여, 기화(奇貨)로 여겨, 감히 서연(書筵)에 출입할 때에 사연(肆然)히 질주(迭奏)하였습니다. 아, 통탄할 만합니다. 성중(聖中)의 주장은 흉악한 논리라서 그 죄를 목베는 것으로 용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마음을 먹은 것으로 극히 통탄할 만한 것이니, 그 죄범(罪犯)을 따져서, 성중(聖中)과 더불어서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定配罪人)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여,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어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定配罪人)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국을 가하게 한 뒤에 기어이 실정을 알도록 하십시오. 〈하략〉."
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日 壬午

○ 李濟萬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星, 依律處斷.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일(임오)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에 대한 심문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론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문(嚴問)하게 하고,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定配罪人)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물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해서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星)을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배죄인, 노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三日 癸未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3일(계미)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들에게 엄히 실정을 묻게 한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定配罪人)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실정을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서,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定配罪人)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여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定配罪人)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더욱 엄국(嚴鞫)하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四日 甲申

○ 大司憲趙時俊, 掌令申致權, 持平沈樂洙·尹得孚,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請彦衡·會遂·獻遂, 竝令王府, 設鞫嚴問.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4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移配罪人) 경빈(敬彬)에 대한 엄문(嚴問)을 청하는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장령 신치권(申致權), 지평 심낙수(沈樂洙)·윤득부(尹得孚),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移配罪人)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이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四日 甲申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4일(갑신)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들에 대한 엄문(嚴問)을 청하는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定配罪人)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물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해서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定配罪人) 조우(趙嵎)를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머추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定配罪人)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더욱 엄국(嚴鞫)하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四日 甲申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設鞫嚴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星,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4일(갑신)

□ 대정현(大靜縣),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들에 대한 엄문(嚴問)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실정을 묻게 하고,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실정을 묻게 한 뒤에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속히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 윤범성(尹範星)을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배죄인,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九日 己丑

○ 大司憲趙時俊, 大司諫徐有元, 掌令申致權,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9일(기축)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鞫廳)과 엄문(嚴問)을 청하는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서유원(徐有元)(徐有元), 장령 신치권(申致權),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이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九日 己丑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堣,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9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에 대한 엄문(嚴問)을 청하는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범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속히 작처(酌處)하라는 법을 거두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더욱 엄국하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노성중, 추자도, 정배죄인, 조우, 제주목,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九日 己丑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星, 依律處斷. 請柒原縣定配罪人志遜,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9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에 대한 엄문(嚴問)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실정을 물어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실정을 묻게 한 뒤에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 윤범성(尹範星)을 법대로 처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배죄인, 노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一日 辛卯

○ 大司憲趙時俊, 大司諫徐有元, 司諫李東郁, 掌令申致權, 持平沈樂洙,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竝令王府, 設鞫嚴問. 請還寢會遂絶島定配之命, 仍令王府, 嚴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1일(신묘)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에 대한 국청(鞫廳) 설치를 청하는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서유원(徐有元)(徐有元), 사간 이동욱(李東郁), 장령 신치권(申致權), 지평 심낙수(沈樂洙),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 〈중략〉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얻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니,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국청.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一日 辛卯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1일(신묘)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에 대한 국문을 청하는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게 한 사람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에 감사(減死)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남흥로(南興老)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기를 청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정배죄인, 조우, 제주목,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一日 辛卯

○ 司諫李東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1일(신묘)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 처단 건을 청하는 이동욱(李東郁)의 계

○ 사간 이동욱(李東郁)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정배죄인,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二日 壬辰

○ 大司憲趙時俊, 大司諫徐有元, 司諫李東郁, 掌令申致權, 持平沈樂洙,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2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서유원(徐有元), 사간 이동욱(李東郁), 장령 신치권(申致權), 지평 심낙수(沈樂洙),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이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二日 壬辰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2일(임진)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문을 청하는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얻도록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조우, 정배죄인, 제주목, 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二日 壬辰

○ 司諫李東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2일(임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처단과 대정현 죄인 국문, 제주목(濟州牧) 죄인 처단을 청하는 이동욱(李東郁)의 계

○ 사간 이동욱(李東郁)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 방축(放逐)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노성중, 정배죄인,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七日 丁酉

○ 獻納趙錫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7일(정유)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에 대한 국문과 처단을 청하는 조석목(趙錫穆)의 계

○ 헌납 조석목(趙錫穆)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유신, 종갑, 의준,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十八日 戊戌

○ 獻納趙錫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18일(무술)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에 대한 국문과 처단을 청하는 조석목(趙錫穆)의 계

○ 헌납 조석목(趙錫穆)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四日 甲辰

○ 持平嚴思憲, 獻納趙錫穆, 正言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4일(갑진)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 등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 헌납 조석목(趙錫穆),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 웅천현 정배죄인 성군(成運)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四日 甲辰

○ 持平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4일(갑진)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정의현(旌義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 감사(減死) 안치죄인(安置罪人) 남흥로(南興老)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조우, 정의현, 남흥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四日 甲辰

○ 正言趙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4일(갑진)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을 청하는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유하는 일이니,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五日 乙巳

○ 持平嚴思憲, 獻納趙錫穆, 正言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5일(을사)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 등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 헌납 조석목(趙錫穆),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과 웅천현 정배죄인 성군(成運)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五日 乙巳

○ 持平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5일(을사)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정의현(旌義縣),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 감사(減死) 안치죄인(安置罪人) 남흥로(南興老)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 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조우, 정의현, 남흥로,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五日 乙巳

○ 正言趙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5일(을사)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을 청하는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안치죄인(安置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유하는 일이니,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六日 丙午

○ 持平嚴思憲, 獻納趙錫穆, 正言趙鼎鎭·姜僎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6일(병오)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 등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 헌납 조석목(趙錫穆), 정언 조정진(趙鼎鎭)·강인(姜僎)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六日 丙午

○ 持平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請慶源府定配罪人鳴遠,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6일(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처단과 국청,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문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六日 丙午

○ 正言姜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6일(병오)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僎)의 계

○ 정언 강인(姜僎)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유신, 종갑, 의준,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七日 丁未

○ 持平嚴思憲, 獻納趙錫穆, 正言趙鼎鎭·姜愼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7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 등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 헌납 조석목(趙錫穆), 정언 조정진(趙鼎鎭)·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과 웅천현 정배죄인 성운(成運)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七日 丁未

○ 持平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7일(정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추자도(楸子島)와 정의현(旌義縣)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엄사헌(嚴思憲)의 계

○ 지평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 감사(減死) 안치죄인(安置罪人) 남흥로(南興老)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 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조우, 정의현, 남흥로,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七日 丁未

○ 正言趙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7일(정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국청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을 청하는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二十八日 戊申

○ 正言姜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28일(무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국청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을 청하는 강인(姜僎)의 계

○ 정언 강인(姜僎)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三十日 庚戌

○ 掌令尹弼秉, 正言姜儐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30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윤필병(尹弼秉) 등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과 웅천현 정배죄인 성운(成運)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三十日 庚戌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30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추자도(楸子島), 정의현(旌義縣)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 감사(減死) 안치죄인(安置罪人) 남흥로(南興老)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조우, 정의현, 남흥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一月 三十日 庚戌

○ 正言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1월 30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一日 辛亥

○ 掌令尹弼兼啓曰,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일(신해)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필겸(尹弼兼)의 계

○ 장령 윤필겸(尹弼兼)이 아뢰기를, "〈상략〉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무릇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日 壬子

○ 掌令尹弼秉, 正言姜儐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일(임자)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경빈(敬彬)은 윤약연(尹若淵)과 홍상간(洪相簡)과 함께 난만하게 서로 체결된 정상이 이미 여러 적의 초사(招辭)에 다 드러났으나, 부인하고 승복하지 않아서 아직 마땅히 율(律)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왕법(王法)으로 따지면 너무 관대(寬大)하게 처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日 壬子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正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일(임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문을 청하는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취소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日 壬子

○ 正言姜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일(임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단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幺麽]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九日 辛酉[己未]

○ 己亥十二月初九日申時, 上御資始門內. …… 上曰, 今日有殿座之命, 而諸承旨, 皆申退, 不善爲之矣. 上曰, 司饔院官員, 率濟州民入來事, 分付, 可也. 賤臣承命召入. 上謂在學曰, 令司饔院官員, 諭之以先朝每召見汝等, 而予之登極後, 今始召見, 汝等長路極寒, 何以上來? 年事豐凶, 弊瘼有無, 次第勞問, 可也. 在學宣敎訖. 上曰, 當使賑恤廳, 給糧以送, 汝等好爲下去事, 更爲慰諭, 可也. 上曰, 試所承旨, 捧試券入來乎? 在學曰, 姑未入來矣. 上曰, 收券勿爲促迫, 緩緩以捧後入來事, 分付, 可也. 賤臣分付後還入. 上曰, 藝文提學, 弘文提學前望單子入之.【竝出榻敎】上曰, 對讀官望中, 以直閣·待敎添入, 可也. 仍還內, 諸臣以次退出.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9일(신유[기미])

□ 제주민(濟州民)을 들이는 일을 대신들과 논의함

○ 기해년 12월 초9일 신시(申時) 임금이 자시문(資始門) 안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사옹원(司饔院) 관원이 제주민(濟州民)을 거느리고 들여올 일에 대하여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부름을 받고 들어왔다. 임금이 이재학(李在學)에게 이르기를, "사옹원 관원으로 하여금 유지하게 하여, 먼저 조정에서 매번 너희들을 소견(召見)하는데, 내가 등극(登極)한 뒤에는 지금에야 비로소 소견하였다. 너희들은 길고 긴 길 이 극한까지 어떻게 올라왔는가. 농사의 풍흉과 폐막(弊瘼)의 유무(有無) 등을 묻고서, 차례대로 노문(勞問)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재학에게 선교(宣敎)하는 것을 마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어 보내게 하고, 너희들은 내려가는 것이 좋으니, 다시 위유(慰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소승지(試所承旨)는 시권(試券)을 받들고 들어왔는가?"라고 하였다. 이재학이 아뢰기를, "잠시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답안지를 거두는 것은 촉박하게 하지 말라. 아주 느리게 받아들인 뒤에 들어올 일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천신이 분분한 뒤에 도로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제학(藝文提學)과 홍문제학(弘文提學)은 전망(前望)과 같이 단자(單子)로 들이라."라고 하였다.【아울러 탑교(榻敎)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대독관(對讀官) 망(望) 가운데, 직각(直閣)·대

교(待敎)를 첨입(添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서, 궁으로 돌아가자, 여러 신하가 차례대로 퇴출하였다.

△ 주제어: 제주민.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日 庚申

○ 李在學,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貢果領來人三十一名處, 回糧米各二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0일(경신)

□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에게 회량미(回糧米)를 분급하는 건을 청하는 이재학(李在學)의 계

○ 이재학(李在學)이 진휼청(賑恤廳)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下敎)에 따라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 31명에게 회량미(回糧米) 각 2말 씩을 전례에 따라 분급(分給)해 주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공과, 영래인, 회량미.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日 庚申

○ 己亥十二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宗簿提調, 入格儒生, 追後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純,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兼兵曹判書具允鈺, 右參贊鄭光漢, 戶曹判書金華鎭,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邦一, 行大司成李命植, 吏曹參判鄭民始, 江華留守李性源, 大司諫林得浩, 校理權以綱, 同副承旨金勉柱, 假注書李錫夏, 事變假注書安策, 記事官徐龍輔·鄭東浚, 以次進伏訖. …… 得浩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0일(경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임득호의 계

○ 기해년 12월 초10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하기 위해 입시하였다. 종부제조(宗簿提調) 입격한 유생이, 추후에 입시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순(洪樂純),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겸 병조 판서 구윤옥(具允鈺), 우참찬 정광한(鄭光漢), 호조 판서 김화진(金華鎭),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 행 대사성 이명식(李命植), 이조 참판 정민시(鄭民始), 강화 유수 이성원(李性源),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행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행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 행 대사성 이명식(李命植), 이조 참판 정민시(鄭民始), 강화 유수 이성원(李性源),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행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행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이방 교리 권이강(權以綱), 동부승지 김면주(金勉柱), 가주서 이석하(李錫夏), 사변가주서 안책(安策),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득호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철저

히 국문하여 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二日 甲子[壬戌]

○ 兩司合啓, 大司憲李普行, 大司諫林得浩, 司諫李一曾, 掌令尹弼秉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2일(갑자[임술])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이보행(李普行) 등의 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 합계(合啓)한 일로, 대사헌 이보행(李普行), 대사간 임득호(林得浩), 사간 이일증(李一曾),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제주목(제주목)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二日 甲子[壬戌]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2일(갑자[임술])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의금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二日 甲子[壬戌]

○ 司諫李一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正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柒原縣定配罪人志遜,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 …….【措辭見上】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2일(갑자[임술])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일증(李一曾)의 계

○ 사간 이일증(李一曾)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범성,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五日 丁卯[乙丑]

○ 己亥十二月十五日午時, 上御誠正閣. 吏兵房承旨, 持褒貶啓本入侍時, 行都承旨李義翊, 右承旨朴祐源, 假注書李錫夏, 記事官徐龍輔·鄭東浚, 以次進伏訖. 上曰, 他承旨入侍.【出榻敎】賤臣承命出來, 左承旨徐有防, 右副承旨李在學, 召入進前. 上命分讀啓本, 義翊·有防, 分讀京畿·咸鏡·黃海·洪忠·江原道·濟州牧啓本, 祐源·在學, ……【出榻敎】義翊曰, 卽伏見江原監司具廣今秋冬等褒貶啓本, 則高城郡守李復永, 以杖或傷濫爲目, 則宜置中考, 而置諸上考, 致勤點下, 濟州牧使金永綬, 三邑褒貶中, 守令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竝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5일(정묘[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의 포폄 계본을 도승지 이의익(李義翊)가 읽어 아룀

○ 기해년 12월 15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이병방승지가 포폄계본(褒貶啓本)을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행 도승지 이의익(李義翊), 우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이석하(李錫夏),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이르기를, 다른 승지는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를 냄】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부승지 이재학(李在學)을 불러들이니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이 계본을 이의익과 서유방에게 나누어 읽게 하였다. 임금이 경기·함경·황해·홍충·강원도·제주목(濟州牧)의 계본을 우박우원과 이재학에게 나누어 읽게 하였다. 〈중략〉【탑교(榻敎)를 냄】이의익이 아뢰기를, "방금 엎드려서, 강원감사 구익(具翼)이 올린, 올 가을과 겨울 등의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보니, 고성군수 이부영은 곤장을 때려 혹 해친 것이 지나치다고 지목할 수가 있으니, 마땅히 중고(中考)에 둬야 하는데 상고(上考)[43]에 두어서 수고롭게 점(點)을 찍어야 합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가 올린, 세 고을의 포폄 중에, 수령(守令)들 한 사람도 하등(下等)에 두지 않았으니, 특별히 전최(殿最)[44]를 엄명(嚴明)하게 하는 뜻으로, 모두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

43) 중고(中考)·상고(上考): 벼슬아치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할 때에 성적이 중등(中等)과 상등(上等)에 두는 것.

44) 전최(殿最):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성적을 고사할 때 상(上)을 최, 하(下)를 전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포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九日 辛未[己巳]

○ **濟州防禦使金永綏狀啓, 箋文方物進上及節果進上愆期事, 惶恐待罪事. 傳于徐有防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9일(신미[기사])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狀啓)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狀啓)에, “전문(箋文)과 방물진상(方物進上), 절과진상(節果進上)에 대해 시기를 늦춘 일은 황공스럽게도 대죄(待罪)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를 내리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김영수, 장계, 전문, 진상.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十九日 辛未[己巳]

○ 傳于李在學曰, 觀此濟州牧使狀啓, 漂人名數, 至於此多, 不可以每年例事, 等閒看過, 另飭各鎭堡, 漂流與滃沒間形止, 星火探問狀聞事, 自備局卽爲分付全羅監司及該牧使處, 各司進排物種之蕩減, 旣有先朝兩年之例云, 何必回啓? 俾勿改封, 仍令蕩減事, 一體分付.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19일(신미[기사])

□ 제주목(濟州牧) 표류인에 대한 처리에 대한 장계

○ 이재학(李在學)에게 전교(傳敎)를 내리기를, "이번의 제주목사(濟州牧使) 장계를 보니, 표류인 여러 명이 이 땅에 많이 이르렀으니, 매번 전례에 따라서 등한히 하고 간과할 수 없는 일이어서 각별히 각 진보(鎭堡)에 더욱 신칙해서, 표류한 일과 엄몰한 사람의 형지(形止)를 신속하게 탐문(探問)하여 장문(狀聞)한 일로, 비국(備局)에서 즉시 전라감사와 해목사(該牧使)에게 분부하여, 각사(各司)에 진배(進排)할 물종(物種)을 탕감(蕩減)해주는 것은 이미 선조(先朝) 양년(兩年)의 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드시 회계(回啓)하도록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서 봉진하지 말게 하고, 그대로 탕감하도록 하는 일 일체를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十五日 丁丑[乙亥]

○ 鄭民始, 以吏曹言啓曰, 濟州判官慶來運, 長水察訪慶明運, 以三年窠守令·察訪, 兩次居中, 其不治, 可知. 竝依例罷黜, 何如? 傳曰, 允.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5일(정축[을해])

□ 제주판관(濟州判官) 경내운(慶來運)의 파출에 관한 건

○ 정민시(鄭民始)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경내운(慶來運), 장수찰방(長水察訪) 경명운(慶明運)을 3년 임기로 수령(守令)과 찰방(察訪)을 맡게 하였는데, 두 차례나 중등에 들었는데도, 그것을 다스리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전례에 따라 파출(罷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경내운, 파출.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十五日 丁丑[乙亥]

○ 以尹行修爲吏曹正郎, …… 黃鱗采爲濟州判官,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5일(정축[을해])

□ 황인채(黃鱗采)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윤행수(尹行修)를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삼고, 〈중략〉 황인채(黃鱗采)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황인채, 제주판관.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十六日 戊寅[丙子]

○ 己亥十二月二十六日辰時, 上御誠正閣. 吏兵房承旨與守令·邊將·初入仕入侍時, 行都承旨鄭民始, 左副承旨朴祐源, 假注書姜彙鈺, 記事官徐龍輔·金載瓚, 以次進伏訖. 上曰, 曾經侍從諸臣, 先爲入侍. …… 濟州判官黃麟采, 進伏. 上以職姓名下詢後, 上曰, 濟州路遠矣. 爾欲入去乎? 麟采曰, 自國家所命, 何處不可往乎? 上曰, 予雖落點, 而程路甚遠, 故憂其入去矣. 鄕人故言辭頗直實矣. 仍命退. …….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6일(무인[병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의 하직 인사

○ 기해년 12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이병방 승지와 수령과 변장 초입사(初入仕)가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정민시(鄭民始), 좌부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강휘옥(姜彙鈺),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시종신을 지낸 신하들은 먼저 입시하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가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직성(職姓)을 물은 뒤에, 이름을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길이 멀다. 그런데도 너는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 황인채가 아뢰기를, "나라의 소명(所命)을 받았는데, 어느 곳인들 가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낙점(落點)하였지만, 노정(程路)이 매우 멀다.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인(鄕人)들의 말은 사실 그대로이다."라고 하였다. 그대로 물러나라고 명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제주판관, 황인채.

❖ 乾隆 四十四年 己亥 十二月 二十七日 己卯[丁丑]

○ 己亥十二月二十七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純,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副司直鄭尙淳, 右參贊鄭光漢, 戶曹判書金華鎭, 禮曹判書李衍祥,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邦一, 行都承旨鄭民始, 江華留守李性源, 左副承旨朴祐源, 假注書朴鋧, 記注官金一衡, 記事官金載瓚, 以次進伏訖. 樂純曰,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 樂純曰, 此濟州牧使金永綏狀啓也. 以爲舊還依朝令停退, 新還期於準捧, 而奴婢身貢米, 每口二斗內減一斗, 男丁大同米, 五斗內減一升, 捧上軍兵合操其弊不貲, 依近例停退, 逃老故病廢之類, 隨闕塡充, 待明春從附近哨司鍊, 而凡諸擧行等事, 固當稟旨, 恭俟指揮, 候風往來之際, 每致不及之慮, 姑先擧行, 竝令廟堂稟處矣. 此是守臣先爲擧行, 依例啓聞者, 依此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3년(1779) 기해년 12월 27일(기묘[정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환자(還子) 관련 장계(狀啓)

○ 기해년 12월 27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기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좌의정 홍낙순(洪樂純),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부사직 정상순(鄭尙淳), 우참찬 정광한(鄭光漢), 호조 판서 김화진(金華鎭), 예조 판서 이연상(李衍祥),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 훈련원 도정 이경무(李敬懋),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 행 도승지 정민시(鄭民始), 강화 유수 이성원(李性源), 좌부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박원(朴鋧), 기주관 김일형(金一衡), 기사관 김재찬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낙순이 아뢰기를, "이번에는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狀啓)에 관한 것입니다. 묵은 환자[舊還][45]는 조령(朝令)에 따라 정퇴(停退)하고, 새 환자[新還]는 기일에 맞게 받아들이고, 노비(奴婢)의 신공미(身貢米)는 매구(每口) 2말 안에서 1말을 줄여주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5말 안에서 1말을 줄여주었습니다. 봉상(捧上)하는 군병(軍兵)을 합하여 조련하면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근례(近例)에 따라 정퇴(停退)를 하면, 도망하거나, 나이로 잃거나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서,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전충(塡充)하는 것은

45) 구환(舊還): 상환년도가 지난 환곡(還穀).

내년 봄을 기다려서 가까운 곳의 초(哨)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거행하는 일을 응당 품지하여 거행하게 하고, 공손히 지휘(指揮)를 기다리다가, 매번 미치지 못하는 염려에 이르게 되니 우선 먼저 거행하였으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신(守臣)이 먼저 거행하였으니, 전례에 따라 계문(啓聞)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뜻으로 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구환, 신환.

178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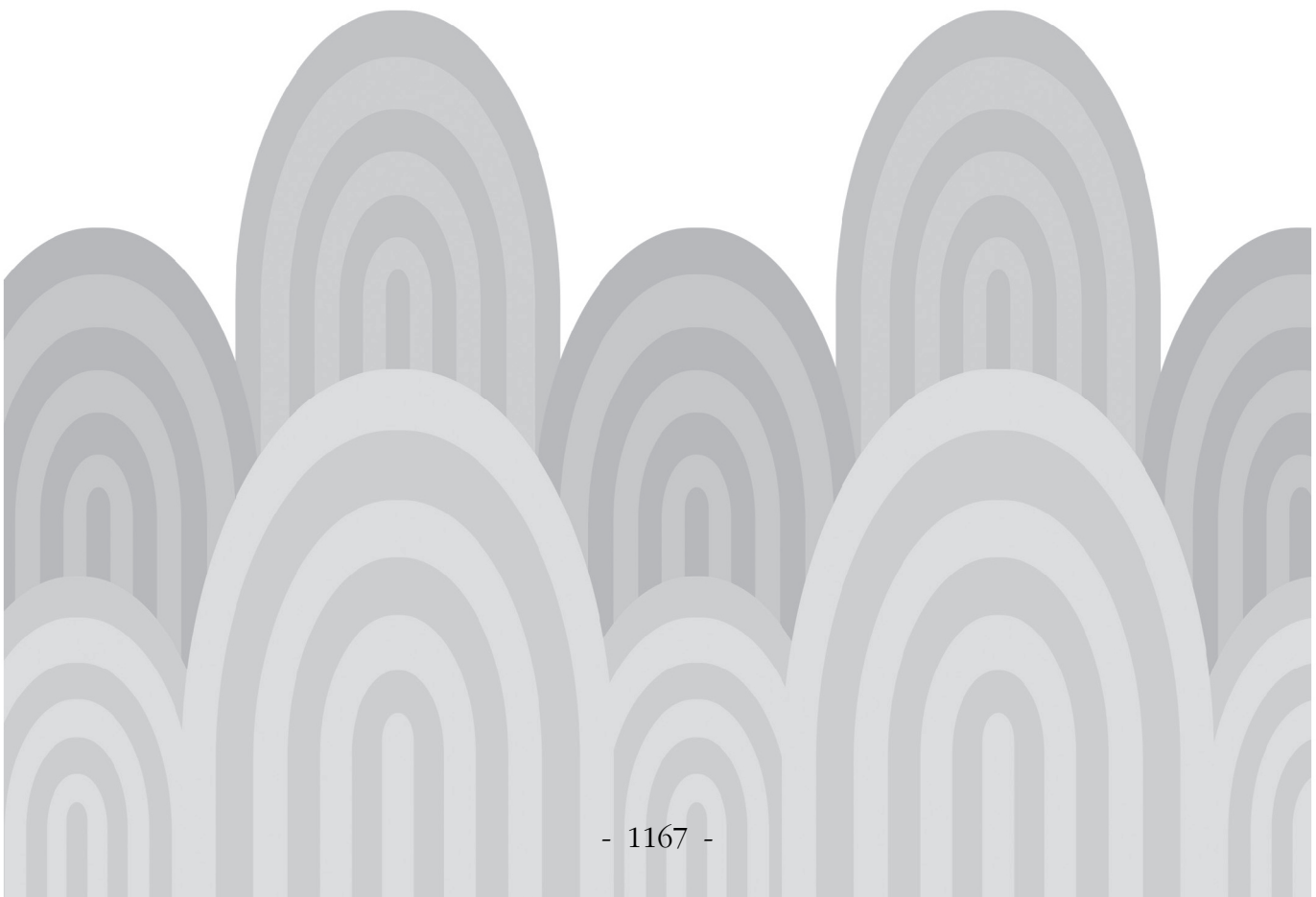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三日 壬午

○ 掌令尹弼秉, 持平許霳啓曰, 妖官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3일(임오)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 지평 허담(許霳)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들과 체결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살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을지라도 법은 지극히 엄한 것이니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여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의금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八日 丁亥

○ 李在學 以義禁府言啓曰 李普行絶島安置事命下矣. 李普行,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 而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8일(정해)

□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추자도(楸子島)로 안치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재학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보행(李普行)을 절도(絶島)에 안치할 일로 명하였습니다. 이보행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하게 하고 전교(傳敎) 안의 뜻에 따라 죄목(罪目)을 갖춰 전례에 따라 의금부의 서리를 보내어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보행, 추자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日 己丑

○ 庚子正月初十日辰時, 上御宣政殿. 常參入侍時, 行都承旨兪彦鎬, 左承旨李亨逵, 右承旨金文淳, 左副承旨朴祐源, 右副承旨李在學, 同副承旨金尙集, 假注書李錫夏·趙興鎭, 記注官權應奎, 記事官金載瓚, 以次進伏訖. …… 義翊·命植·天行·亮載等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義翊·天行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義翊等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義翊等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義翊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命植·亮載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命植等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0일(기축)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정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상참 때에 입시한 행 도승지 유언호(兪彦鎬),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우승지 김문순(金文淳), 좌부승지 박우원(朴祐源), 우부승지 이재학(李在學)과 동부승지 김상집(金尙集), 가주서 이석하(李錫夏)·조흥진(趙興鎭), 기주관 권응규(權應奎),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의익·이명식·박천행·이양재 등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박천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 등이 아뢰기를,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명식·이양재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철저히 국문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명식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대정현, 윤범성, 김수현, 한후락, 추자도, 조우.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一日 庚寅

○ 大司諫李命植, 司諫沈命德, 持平朴天行, 正言李亮載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1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의 국청을 청하는 이명식(李命植) 등의 계

○ 대사간 이명식(李命植),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박천행(朴天行),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경빈(敬彬)은 약연(若淵)·상간(相簡)과 더불어 난만(爛漫)하게 주륙(綢繆)한 실상은 이미 여러 적(賊)의 초사(招辭) 안에서 폭로되었으나, 저뢰(抵賴)하고 승복(承服)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왕법(王法)으로 따지면 너무 관대(寬大)하게 처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一日 庚寅

○ 持平朴天行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1일(경인)

□ 대정현(大靜縣), 제주목(濟州牧),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박천행(朴天行)의 계

○ 지평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들과 체결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살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을지라도 법은 지극히 엄한 것이니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왕부로 하여금 다시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一日 庚寅

○ 正言李亮載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1일(경인)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이양재(李亮載)의 계

○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幺麽]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減死)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五日 甲午

○ 庚子正月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朝講次對同爲入侍時, 領事金尙喆, 知事黃景源, 特進官鄭民始, 特進官金履素, 參贊官李鎭衡, 大司憲李義翊, 侍講官嚴思晩, 檢討官李命勳, 假注書趙興鎭, 記注官權應奎, 記事官金載瓚, 領議政金尙喆,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兼兵曹判書具允鈺, 知中樞府事鄭尙淳, 戶曹判書金華鎭, 禮曹判書李衍祥,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邦一, 行副司直鄭民始, 假注書趙興鎭, 事變假注書李彦祜, 記注官權應奎, 記事官金載瓚, 以次進伏訖. …… 義翊曰, 請大靜縣奴爲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義翊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上曰, 不允. …… 義翊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義翊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亟停勿煩.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5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정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조강에 차대(次對)하기 위해 함께 입시할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정민시(鄭民始)·김이소(金履素), 참찬관 김진형(金鎭衡),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시강관 엄사만(嚴思晩), 검토관 이명훈(李命勳),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기주관 김응규(金應奎), 기사관 김재찬(金載瓚),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겸병조판서 구윤옥(具允鈺), 지중추부사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예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이방일(李邦一), 행부사직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사변가주서 이언호(李彦祜), 기주관 권응규(權應奎),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왕부로 하여금 다시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왕부로 하여금 다시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중략〉”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七日 丙申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請彦衡·養遂·獻遂 竝令王府 設鞫嚴問. …… 答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7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十八日 丁酉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18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二日 辛丑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持平朴天行·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2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박천행(朴天行)·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설처하여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二日 辛丑

○ 持平朴天行·趙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2일(신축)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국문을 청하는 박천행(朴天行) 등의 계

○ 지평 박천행(朴天行)·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二日 辛丑

○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2일(신축)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심명덕(沈命德)의 계

○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三日 壬寅

○ 庚子正月二十三日午時, 上御誠正閣. 晝講入侍, 詣臺臺臣同爲入侍時, 同知事李衍祥, 特進官金履素, 參贊官朴祐源, 侍讀官李儒慶, 檢討官權以綱, 假注書趙興鎭, 編修官金匡國, 記事官權應奎·安川君烓, 行副護軍趙圭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以次進伏訖. …… 命德·度默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命德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命德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上曰, 不允. …… 命德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度默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上曰, 亟停勿煩. …… 度默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3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정월 23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입시한 대각(臺閣)의 신하가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동지사 이연상(李衍祥), 특진관 김이소(金履素), 참찬관 박우원(朴祐源), 시독관 이유경(李儒慶), 검토관(檢討官) 권이강(權以綱),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편수관(編修官) 김광국(金匡國), 기사관 권응규(權應奎)·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 행부호군 조규진(趙圭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심명덕·이도묵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명덕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명덕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여 기어이 실정

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명덕이 아뢰기를, "제주목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도묵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도묵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도묵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게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도묵이 아뢰기를,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성중, 윤범성,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四日 癸卯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4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

○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시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四日 癸卯

○ 持平趙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4일(계묘)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조정진(趙鼎鎭)의 계

○ 지평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기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제주목,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四日 癸卯

○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4일(계묘)

□ 대정현(大靜縣),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심명덕(沈命德)의 계

○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정배죄인(定配罪人)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제주목,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五日 甲辰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5일(갑진)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기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五日 甲辰

○ 掌令李度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措辭見上】答府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5일(갑진)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이도묵(李度默)의 계

○ 장령 이도묵(李度默)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엄하게 묻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쾌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제주목, 한후락, 조우, 성중.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五日 甲辰

○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淶原縣定配罪人志遜, 更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5일(갑진)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심명덕(沈命德)의 계

○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六日 乙巳

○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請彦衡·養遂·獻遂, 竝令王府, 設鞫嚴問.,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請慶源府定配罪人鳴遠, 依律處斷.,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柒原縣定配罪人志遜,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6일(을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상략〉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지평 조정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 심명덕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七日 丙午

○ 庚子正月二十七日辰時 上御熙政堂. 晝講次對 同爲入侍時 特進官洪樂性 知事 鄭尙淳 參贊官金尙集 侍讀官姜忱 檢討官柳孟養·安春君俌 副護軍宋載岳 領議政金尙喆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兼工曹判書洪樂性 兼兵曹判書具允鈺 右參贊 鄭尙淳 戶曹判書金華鎭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邦一 戶曹參判鄭民始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 鼎鎭 校理姜忱 左副承旨朴祐源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彦祜 編修官金匡 國 記事官權應奎 以次進伏訖.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大司憲李義翊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 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嵲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 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旣聞日昨啓批之後 如是傳啓者 大是不諒處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 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上曰 將加鞫問 而口有所出之言 則 將若之何? 上曰 非不欲依啓 姑俟大同之論 不允. ……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 德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 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7일(병오)

□ 대정현(大靜縣)과 제주목(濟州牧),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정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주강에 차대를 위해 함께 입시한 자리에, 특진관 홍낙성(洪樂性), 지사 정상순(鄭尙淳), 참찬관 김상집(金尙集), 시독관 강침(姜忱), 검토관 유맹양(柳孟養)·안춘군(安春君) 이 륭(李俌), 부호군 송재악(宋載岳),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행지중추부사 구선 복(具善復), 겸공조판서 홍낙성(洪樂性), 겸병조판서 구윤옥(具允鈺),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도

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이방일(李邦一), 호조참판 정민시(鄭民始),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조정진(趙鼎鎭), 교리 강침(姜忱), 좌부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박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언호(李彦祜), 편수관 김광국(金匡國), 기사관 권응규(權應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사헌 이의익, 대사간 조영진, 사간 심명덕, 장령 이도묵, 지평 조정진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이의익, 장령 이도묵, 지평 조정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속히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어제 아뢴 것을 듣고서 비답을 내린 뒤에, 이와 같이 전계(傳啓)한 것을 크게 옳다고 이해하지 않은 곳이 있더라도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엄하게 묻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국문(鞫問)을 더하여 입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장차 어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잠시 대동(大同)의 논의를 기다린다.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간 조영진, 사간 심명덕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

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한후락, 추자도, 이보행, 조우.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一月 二十八日 丁未

○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掌令李度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堣 亟寢酌處之命 仍命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更加嚴鞫 快正王法.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월 28일(정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상략〉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 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장령 이도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엄히 묻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심명덕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이보행, 조우,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경빈, 윤범성,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四日 癸丑

○ …… 大司憲李義翊 大司諫趙英鎭 司諫沈命德 掌令李度默 持平趙鼎鎭 獻納柳孟養 正言柳協基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熳[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4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의익(李義翊) 등의 계

○ 〈상략〉 대사헌 이의익(李義翊),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조정진(趙鼎鎭),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경빈(敬彬)은 약연(若淵)·상간(相簡)과 함께 난만(爛熳)하게 주무(綢繆)한 실상은 이미 여러 적(賊)의 초사(招辭)에 폭로되었으나, 부인하고 승복하지 않아서,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王政)으로써 헤아려 보면 너무 관대한 실수가 됩니다.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四日 癸丑

○ 持平趙鼎鎭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正言柳協基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4일(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조정진(趙鼎鎭)의 계

○ 지평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일정의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여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하였는데,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작처(酌處)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은 지엄하것이라서 도현(島縣)에서 노비로 삼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속히 왕부로 하여금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

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하게 묻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자,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은 변변하지 못한[么麽]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한후락, 이보행, 추자도, 조우.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一日 庚申

○ 掌令李度默 獻納柳孟養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請彦衡·養遂·獻遂 竝令王府 設鞫嚴問. 請還寢會遂絶島定配之命 仍令王府 嚴鞫得情. 請還寢李觀源定配之命 更令王府 設鞫得情. 請遲晩後物故罪人啓能 亟施孥籍之典. 請令王府 一依古典 趾賊等凶種之年未滿者 待其稍長 卽施邦刑 俾絶凶逆易種養禍之患. 請物故罪人志恒之支屬應坐者 絶島散配【措語見上】答兩司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1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도묵(李度默) 등의 계

○ 장령 이도묵(李度默),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一日 庚申

○ 掌令李度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請削版罪人有臣·宗甲·義駿竝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1일(경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이도묵(李度默)의 계

○ 장령 이도묵(李度默)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자,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이보행, 제주목,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一日 庚申

○ 獻納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1일(경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二日 辛酉

○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措辭見上】答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2일(신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명덕(沈命德)의 계

○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三日 壬戌

○ 庚子二月十三日午時 上御誠正閣. 晝講入侍時 特進官蔡濟恭 同知事鄭民始 參贊官南柱老 侍讀官李儒慶 檢討官徐有成 假注書趙興鎭 記事官徐龍輔·金載瓚 宗臣安昌君燠 武臣副護軍白東毅 大司憲徐有慶 獻納柳孟養 以次進伏訖. …… 有慶·孟養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有慶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有慶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有慶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有慶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有慶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孟養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孟養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3일(임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2월 13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입시한 자리에 입시한 특진관 채제공(蔡濟恭), 동지사 정민시(鄭民始), 참찬관 남주로(南柱老), 시독관 이유경(李儒慶), 검토관 서유성(徐有成),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재찬(金載瓚), 종신 안창군(安昌君) 이경(李燠), 무신인 부호군 백동의(白東毅), 대사헌 서유경(徐有慶),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서유경·유맹양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

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아뢰기를,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경이 아뢰기를,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맹양이 아뢰기를,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한후락,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四日 癸未[癸亥]

○ 庚子二月十四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李澱 兼刑曹判書具善復 兼禮曹判書洪樂性 右參贊鄭尙淳 戶曹判書金華鎭 行副司直李柱國 訓鍊院都正李敬懋 行副司直李邦一 大司諫金魯淳 掌令李度默 修撰徐有成 左承旨蔡弘履 假注書趙興鎭 事變假注書權坰 記事官徐龍輔·金載瓚 以次進伏訖. …… 魯淳·度默曰 臣等謂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宜矣.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4일(계미[계해])

□ 제주목(濟州牧) 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2월 14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이은(李澱),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부사직 이방대(李邦一), 대사간 김노순(金魯淳), 장령 이도묵(李度默), 수찬 서유성(徐有成), 좌승지 채홍리(蔡弘履),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사변가주서 권경(權坰),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노순·이도묵이 아뢰기를, "신들은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八日 丁卯

○ 司諫李命勳 掌令李度默 持平權以綱·姜彝正 獻納柳孟養 正言柳協基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8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명훈(李命勳) 등의 계

○ 사간 이명훈(李命勳),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권이강(權以綱)·강이정(姜彝正),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八日 丁卯

○ 掌令李度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8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도묵(李度默)의 계

○ 장령 이도묵(李度默)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제주목,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八日 丁卯

○ 獻納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亟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夬正王法. …… 答院曰 不允. 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8일(정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제주목,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十九日 戊辰

○ …… 司諫李命勳 掌令李度默 持平權以綱·姜愎 獻納柳孟養 正言柳協基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請彦衡·養遂·獻遂 併令王府 設鞫嚴問. …… 答兩司曰 不允. 持平姜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島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趙濟泰·李潤成·趙嵎事 亟停勿煩. 正言柳協基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 請鎭海縣定配罪人埏 亟令王府 拿鞫得情 仍施當律 其應坐支屬 不可遠地散配而止 亦竝施絶島散配之典. 請逆賊尙魯 亟施孥戮之典. 答院曰 不允. 埏事 亟停勿煩. 【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19일(무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이명훈(李命勳) 등의 계

○ 〈상략〉 사간 이명훈(李命勳),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권이강(權以綱)·강인(姜愎),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지평 강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

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유협기가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경빈, 한후락, 윤범성, 대정현, 성중, 김수현, 추자도, 조우.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日 己巳

○ 庚子二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次對同爲入侍時 知事蔡濟恭 特進官金履素 參贊官金魯淳 侍讀官金履禧 檢討官沈樂洙 安川君烓 副護軍申大顯 領議政金尙喆 左議政李澱 兼兵曹判書蔡濟恭 兼刑曹判書具善復 兼禮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行副司直李柱國 行都承旨徐有慶 行大司成鄭民始 大司諫金文淳 司諫李命勳 掌令李度默 持平權以綱·姜儐 副校理金履禧 副修撰沈樂洙 宣川府使李文燏 右副承旨金尙集 假注書曺允大 記事官李璉·徐龍輔 以次進伏訖. 文淳·命勳·度默·以綱·儐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度默·以綱·儐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文淳·命勳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亟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0일(기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2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주강 차대(次對)에 함께 입시했을 때에,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김이소(金履素), 참찬관 김노순(金魯淳), 시독관 김이희(金履禧), 검토관 심낙수(沈樂洙), 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 부호군(副護軍) 이계(李烓), 부호군 신대현(申大顯),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이은(李溵), 겸병조판서 채제공,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金華鎭),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도승지(徐有慶), 행대사성 정민시(鄭民始),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명훈(李命勳),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권이강(權以綱)·강인(姜儐), 부교리 김이희(金履禧), 부수찬 심낙수(沈樂洙), 선천부사 이문혁(李文燏), 우부승지 김상집(金

尙集), 가주서 조윤대(曺允大), 기사관 이건(李璉)·서용보(徐龍輔)가 차례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문순·이명훈·이도묵·권이강·강인이 아뢰기를,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도묵·권이강·강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문순·이명훈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一日 庚午

○ 兼刑曹判書具善復疏曰 …… 江華牧場 水草豐足 宜於多放 地又便近 若有緩急 不多日可以絡致 便同外廐 臣謂濟州封進中 許封雌馬 與北市取種馬 限數百匹 牧養字産 則十年之內 必有蕃庶之效.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1일(경오)

□ 제주목장(濟州牧場)의 암말 봉진에 관한 구선복(具善復)의 소

○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이 소(疏)를 올리기를,[46] "〈상략〉 강화목장(江華牧場)은 수초(水草)가 풍족하고 땅도 편리하고 가까우니, 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 날이 걸리지 않아서 몰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는 것 가운데에 암말도 봉진할 수 있게 하여 북시(北市)에서 얻은 종마(種馬)와 함께 1백 필로 수를 한정하여 먹여 길러 새끼를 치면 10년 안으로 반드시 번식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자마, 종마

46) ≪정조실록≫ 정조 4년 2월 21일 기사에, 훈련대장 구선복이 올린 유사한 상소가 들어 있음.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五日 甲戌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持平姜儐 獻納柳孟養 正言尹得孚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5일(갑술)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정창순(鄭昌順)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지평 강인(姜儐),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윤득부(尹得孚)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五日 甲戌

○ 持平姜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 <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5일(갑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僎)의 계

○ 지평 강인(姜僎)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 등의 일을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이보행, 조우, 한후락, 성중,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五日 甲戌

○ 庚子二月二十五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兼兵曹判書蔡濟恭 兼刑曹判書具善復 兼禮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吏曹判書金鍾秀 吏曹參判鄭民始 副校理徐鼎修 正言尹得孚 右副承旨金尙集 假注書趙興鎭 事變假注書權坰 記注官李璉 記事官徐龍輔 以次進伏訖.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5일(갑술)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2월 25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겸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이조참판 정민시(鄭民始), 부교리 서정수(徐鼎修), 정언 윤득부(尹得孚), 우부승지 김상집(金尙集),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사변가주서 권경(權坰), 기주관 이건(李璉),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六日 乙亥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持平姜儐 獻納柳孟養 正言尹得孚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6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지평 강인(姜儐),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윤득부(尹得孚)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六日 乙亥

○ 持平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6일(을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지평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이보행, 성중, 조우,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六日 乙亥

○ 獻納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亟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 ……【措辭見上】答曰 不允. 埏事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6일(을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七日 丙子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金文淳 持平姜儐 獻納柳孟養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7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지평 강인(姜儐),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七日 丙子

○ 持平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7일(병자)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지평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김수현, 성중, 조우,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七日 丙子

○ 獻納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挺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7일(병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국청과 처단을 청하는 유맹양(孟養啓)의 계

○ 헌납 유맹양(孟養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윤범성, 성중,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九日 戊寅

○ 大司諫金文淳 司諫李命勳 掌令李度默 持平權以綱·姜僎 獻納柳孟養 正言柳協基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曰 不允. 再昨已諭 爾等何不念予肝膈之言乎?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9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김문순(金文淳) 등의 계

○ 대사간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명훈(李命勳), 장령 이도묵(李度默), 지평 권이강(權以綱)·강인(姜僎),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재작년에 이미 하유한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심중에서 우러나온 말을 어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九日 戊寅

○ 司諫李命勳 正言柳協基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9일(무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명훈(李命勳) 등의 계

○ 사간 이명훈(李命勳),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윤범성, 성중,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二月 二十九日 戊寅

○ 庚子二月二十九日巳時 上御誠正閣. 晝講詣臺臺臣同爲入侍時 知事蔡濟恭 特進官李鎭衡 參贊官趙尙鎭 侍讀官姜忱 檢討官沈樂洙 假注書趙興鎭 記注官李璉 記事官徐龍輔 宗臣安川君烓 武臣行副護軍柳春馥 大司憲鄭昌順 以次進伏訖. …… 昌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又啓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又啓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2월 29일(무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2월 29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청(臺廳)에 나아간 대신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이진형(李鎭衡), 참찬관 조상진(趙尙鎭), 시독관 강침(姜忱), 검토관 심낙수(沈晳洙), 가주서 조홍진(趙興鎭), 기주관 이건(李璉), 기사관 서용보(徐龍輔), 종신 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 무신 행부호군 유춘빈(柳春馥), 대사헌 정창순(鄭昌順)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창순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제주목,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三日 壬午

○ 庚子三月初三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次對 同爲入侍時 知事蔡濟恭 特進官鄭昌聖 參贊官朴祐源 侍讀官徐鼎修 檢討官徐有成 假注書趙興鎭 記注官權應奎·李璉 安川君烓 武臣行副護軍李潤禧 領議政金尙喆 左議政李澈 兼兵曹判書蔡濟恭 兼禮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吏曹判書金鍾秀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行都承旨徐有慶 大司諫金文淳 司諫李命勳 掌令李度默 持平權以綱·姜㝡 獻納柳孟養 正言柳協基 右承旨蔡弘履 假注書趙興鎭 事變假注書權坰 記注官權應奎·李璉 以次進伏訖. …… 文淳·命勳·度默·以綱·㝡·孟養·協基等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設鞫得情. 上曰 不允. …… 度默·以綱·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又啓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又啓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文淳·命勳·孟養·協基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又啓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3일(임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3월 초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주강에 차대를 하러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정창성(鄭昌聖), 참찬관 박우원(朴祐源), 시독관 서정수(徐鼎修), 검토관 서유성(徐有成),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기주관 권응규(權應奎)·이건(李璉), 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 무신 행부호군 이윤희(李潤禧),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이은(李澈), 겸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겸이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도승지 서유경(徐有慶), 대사헌 김문순(金文淳), 사간 이명훈(李命勳), 장령

이도묵(李度默), 장령 권이강(權以綱)·강인(姜愔), 헌납 유맹양(柳孟養), 정언 유협기(柳協基), 우승지 채홍리(蔡弘履),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사변가주서 권경(權坰), 기주관 권응규(權應奎)·이건(李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문순·이명훈·이도묵·권이강·강인·유맹양·유협기 등이 아뢰기를,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도묵·권이강·강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김문순·이명훈·유맹양·유협기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七日 丙戌

○ 掌令金翊休 正言柳協基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7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김익휴(金翊休) 등의 계

○ 장령 김익휴(金翊休),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경빈(敬彬)은 약연(若淵)·상과(相簡)와 더불어 난만하게 주륙(綢繆)한 실상은 이미 여러 적의 초사 가운데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뢰(抵賴)하며 자복(自服)하지 아니하니 왕법(王法)을 지나치게 너그럽게 한 잘못으로 헤아릴 것입니다.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七日 丙戌

○ 掌令金翊休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7일(병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익휴(金翊休)의 계

○ 장령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고자 하는 덕의에서 나왔을지라도 국법은 지엄한 것이니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대정현, 성중, 조우, 추자도,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七日 丙戌

○ 正言柳協基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7일(병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협기(柳協基)의 계

○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대정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四日 癸巳

○ 濟州防禦使金永綏狀啓 以薦新及進上靑橘 品未豐大 惶恐待罪事. 傳于金魯淳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4일(계사)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에, “천신(薦新)하고 진상하는 청귤(靑橘)의 물품이 아직 넉넉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황공스럽게도 대죄하는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김노순(金魯淳)에게 전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김영수, 천신, 진상, 청귤.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四日 癸巳

○ 濟州防禦使金永綏狀啓 以靑橘改封事 惶恐待罪事. 傳于金魯淳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4일(계사)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에, “청귤(靑橘)을 다시 봉진 하는 일로 황공스럽게 대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노순(金魯淳)에게 전하기를, “대죄(待罪)하지 말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김영수, 청귤.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四日 癸巳

○ 鄭民始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二月令進上 今日來到本院 而臣開櫃看品 則各殿所封物種中靑橘 擧皆腐傷乾枯.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4일(계사)

□ 제주목(濟州牧)에서 2월령으로 올린 청귤(靑橘)의 상태를 아뢰는 정민시(鄭民始)의 계

○ 정민시(鄭民始)가 사옹원 관원과 감선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소봉(所封)한 2월령(二月令) 진상이 오늘 사옹원에 도착해서, 신이 궤짝을 열고 품질을 살펴보니, 각전(各殿)에 소봉(所封)한 물종 가운데 청귤(靑橘) 거개(擧皆)가 썩고 상한데다 말랐습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넌 물종으로 막중한 진상이라서 전례에 따라 봉입(捧入)하였으나 매우 미안한 일에 관계된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히 품지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받아들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민시, 제주목, 이월령, 청귤.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四日 癸巳

○ 徐有防 以奉常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封進今三月令薦新靑橘來到. 臣進詣看品 則靑橘元數二百七十個內 幾皆腐朽色變 僅僅可用 只爲八十四個. 以該牧使狀啓謄本觀之 兩次改封 經月涉海 則略干腐傷 不是異事 而今此糜爛 殆過三分之二. 封進官之不謹致察 誠極未安. 濟州牧使金永綏罷職 所封靑橘 退送 何如? 傳曰 薦獻之物 固所當愼 而有此腐傷 封進官不可無罪. 迎送之弊 亦可軫念爲先從重推考. 合用餘數 如或不足 勿爲退送. 以廚院進上中取用 可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4일(계사)

□ 제주(濟州)에서 3월령(三月令)으로 봉진한 천신(薦新) 청귤(靑橘)의 상태를 알리는 서유방(徐有防)의 계

○ 서유방(徐有防)이 봉상시 관원과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올 3월령(三月令) 천신(薦新) 청귤(靑橘)이 도착해서, 신이 나아가 품질을 살펴보니 청귤의 원수(元數) 270개 안에, 기개(幾皆)가 썩고 색이 변하여서, 겨우 쓸 만한 것은 84개였습니다. 해당 목사 장계의 등본(謄本)을 보니, 두 번에 걸쳐 고쳐 봉진했는데, 달을 넘기면서 바다를 건넜으니 약간 썩고 상한 것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이 부패한 것이 거의 3분의 2를 넘습니다. 봉진관이 조심성있게 살피지 않은 것은 참으로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를 파직하고, 소봉(所封)한 청귤을 물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천헌(薦獻)하는 물품은 참으로 마땅히 삼가야 한 것인데도, 이와 같이 썩고 상한 것이 있으니, 봉진관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송(迎送)하는 폐단 또한 염려해야 할 것이니, 우선 무거움에 따라서 추고하고, 나머지 수에 마땅하게 쓰고, 만일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물려보내지 말라. 사옹원으로서 진상한 것 가운데 취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봉진, 3월령, 천신, 청귤,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四日 癸巳

○ 金魯淳 以禮曹言啓曰 因奉常寺草記 濟州牧使封進三月令宗廟薦新靑橘 腐傷不足之數 以廚院進上中取用事 命下矣. 依傳敎 自奉常寺看品 擇取八十四個進上中擇出僅僅可用者五十六個 合爲一百四十個. 雖未滿常時薦進之數 在前如此之時 不得已或有減數薦進之例 今亦依前例 各室以十個式 今十五日薦進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4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3월령(三月令)의 종묘(宗廟) 천신청귤(薦新靑橘)에 관해 아뢰는 김노순(金魯淳)의 계

○ 김노순(金魯淳)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봉상시 초기(草記)로 인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3월령(三月令)의 종묘(宗廟) 천신청귤(薦新靑橘)이 썩고 상해서 수에 부족한 것은 사옹원에 진상한 가운데 취해서 쓰라고 명하였습니다. 전교에 따라 봉상시에서 간품(看品)하여 선택한 것이 84개입니다. 진상한 것 가운데 택출(擇出)했더니 어렵사리 겨우 쓸만한 것은 56개여서, 합하여 140개가 되었습니다. 비록 보통 때 천진(薦進)하는 수에는 차지 않지만 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부득이 혹 감수(減數)를 천진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례에 따라 각 실(各室)에서 10개씩으로 이번 15일에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3월령, 종묘, 천신청귤.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五日 甲午

○ 以李亨達爲承旨 …… 朴弼瑞爲大靜縣監.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5일(갑오)

□ 박필서(朴弼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형규(李亨達)를 승지로 삼고, 〈중략〉 박필서(朴弼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박필서, 대정현감.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五日 甲午

○ 持平崔守魯 正言沈樂洙·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末端事 胡更靦縷 徒傷予心乎? 且予此敎 非欲故息爾等之言而發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5일(갑오)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최수로(崔守魯) 등의 계

○ 지평 최수로(崔守魯), 정언 심낙수(沈樂洙)·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을 어찌 다시 시끄럽게 하는 말로 나의 속만 태우겠는가? 또 내가 이와 같이 전교하니, 너희들의 말을 고식(故息)하게 하려 내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五日 甲午

○ 持平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5일(갑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최수로(崔守魯)의 계

○ 지평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五日 甲午

○ 正言沈樂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5일(갑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낙수(沈樂洙)의 계

○ 정언 심낙수(沈樂洙)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七日 丙申

○ 又以吏曺言啓曰 新除授大靜縣監朴弼瑞呈狀內 矣身老母 今年七十三歲 法不當冒赴云. 親年七十歲者 勿許三百里外遠邑守令事 載在法典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7일(병신)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필서(朴弼瑞)의 개차(改差)에 대한 이조의 계

○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除授)한 대정현감(大靜縣監) 박필서(朴弼瑞)의 정장(呈狀) 안에, 이몸의 노모(老母)가 올해 73세가 되어 법적으로 마땅히 방자하게 부임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부모의 나이가 70세가 된 사람은 3백 리 밖의 먼 고을 수령을 가지 말게 하는 일은 법전에 실려있으니, 전례에 따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박필서.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七日 丙申

○ 有政. 吏批 判書金鍾秀受由在外 參判兪彦鎬進 參議朴祐源病 右副承旨趙尙鎭進. 啓曰 判書金鍾秀受由在外 參議朴祐源病不來.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啓. 傳曰 仍爲之. 以尹行晉爲掌令 權導爲判尹 朴師訥爲禮曹參議 金夏璉爲典籍 白師憲爲司導主簿 朴敎行爲引儀 李雨培爲司僕主簿 羅潤祿爲大靜縣監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7일(병신)

□ 나윤록(羅潤祿)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겠다는 이비의 계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김종수(金鍾秀)는 휴가를 받아 외방(外方)에 있다. 참판 유언호(兪彦鎬)는 나왔다. 참의 박우원(朴祐源)은 병중이다. 우부승지 조상진(趙尙鎭)은 나왔다. 아뢰기를, "판서 김종수는 휴가를 받아 외방(外方)에 있습니다. 참의 박우원은 병중이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소신(小臣)이 혼자 정사(政事)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윤행진(尹行晉)을 장령으로 삼고, 〈중략〉 나윤록(羅潤祿)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나윤록, 대정현감.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七日 丙申

○ 司僕寺啓目. 因濟州牧使金永綏啓本 本州監牧官金光燦 單望啓下 帖文成送事. 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7일(병신)

□ 감목관(監牧官) 김광혁(金光燦)을 단망(單望)한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의 계목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계본(啓本)에, 본 고을의 감목관(監牧官) 김광혁(金光燦)을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니, 체문(帖文)을 만들어서 보는 일로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감목관, 김광혁, 단망,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十八日 丁酉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埏事亟停勿煩 末端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18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의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말단(末端)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제주목,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二十日 己亥

○ 庚子三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朝講入侍 大臣·備局堂上追後引見入侍時 領事李澈 同知事兪彦鎬 特進官金華鎭·徐有慶 大司憲金夏材 大司諫李在學 參贊官金魯淳 侍讀官姜忱 檢討官李鼎運 假注書李錫夏 記事官李璉·徐龍輔 以次進伏訖. 夏·在學·守魯·濟萬·樂洙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夏材·守魯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措辭竝見上】在學·樂洙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20일(기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3월에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조강에 입시한 대신과 비국 당상이 추후에 인견을 위해 입시한 영사 이은(李溵), 동지사 유언호(兪彦鎬) 특진관 김화진(金華鎭)·서유경(徐有慶),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대사간 이재학(李在學), 참찬관 김재순(金魯淳), 시독관 강침(姜忱), 검토관 이정운(李鼎運), 가주서 이석하(李錫夏), 기사관 이건(李璉)·서용보(徐龍輔)가 차례대로 나와 엎드렸다. 김하재·이재학·최수로·이제만·심낙수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하재·최수로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

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조사(措辭)가 모두 위에 보임】〈중략〉 이재학·심낙수가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경빈, 대정현,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추자도,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二十一日 庚子

○ …… 大司憲李夏材 大司諫李在學 持平崔守魯 正言沈樂洙·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措辭見上】持平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措辭見上】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 <縣> 爲奴罪 <人> 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 埏事 亟停勿煩 處置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21일(경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하재(李夏材) 등의 계

○ 〈상략〉 대사헌 이하재(李夏材), 대사간 이재학(李在學), 지평 최수로(崔守魯), 정언 심낙수(沈樂洙)·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지평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의금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

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처치(處置)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김수현,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二十二日 辛丑

○ 兵批 兼判書蔡濟恭進 參判李萬恢病 參議尹勉升入直進 參知南柱老病 左承旨李亨逵進. 以李福源爲知事 李聖圭爲同知 朴河潤爲忠翊將 金樂豊爲忠壯將 趙鎭祿爲訓鍊主簿 洪受寬爲明月萬戶 同知南海源 僉知金處升·金命赫·金敬身濟州監牧官金光煐 赴戰嶺別將林景擇已上單付 副司直洪秀輔 副司果李晳·李元謙·具縉 護軍鄭存中.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22일(신축)

□ 김광혁(金光煐)을 제주감목관(濟州監牧官)에 제수한다는 병비의 계

○ 병비(兵批)에, "〈상략〉 이복원(李福源)을 지사에 삼고, 〈중략〉 김광혁(金光煐)을 제주감목관(濟州監牧官)으로 삼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감목관, 김광혁.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三月 二十七日 丙午

○ ……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持平崔守魯·李益運 獻納朴在源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曰 不允. 末端事 如是爭執 殆覺支離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3월 27일(병오)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김이희(金履禧) 등의 계

○ 〈상략〉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최수로(崔守魯)·이익운(李益運),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이와 같이 쟁집(爭執)하고 있으니, 지리함만 느끼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一日 己酉

○ 大司諫李在學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獻納朴在源 持平崔守魯·李益運 正言李濟萬啓曰 敬彬之與若淵·相簡 爛熳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末端事須卽停啓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재학(李在學) 등의 계

○ 대사간 이재학(李在學),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헌납 박재원(朴在源), 지평 최수로(崔守魯)·이익운(李益運),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경빈(敬彬)은 약연(若淵)·상간(相簡)과 더불어 난만(爛熳)하게 주륙(綢繆)한 실상으로 이미 적의 초사(招辭) 안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뢰(抵賴)를 불복(不服)하여 아직 마땅에 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법으로 볼 때도 너무나 너그럽게 한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모름지기 즉시 정계(停啓)[47]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47) 정계(停啓): 대간(臺諫)이 한동안 계속하여 오던 논계(論啓)를 그만두는 것.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一日 己酉

○ 持平崔守魯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閔義嫌事 人言之信否 雖未可知 一向相持 出場無期 依啓下諭事 交龜後自當上來 勿爲下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일(기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최수로(崔守魯) 등의 계

○ 지평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일종의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여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곧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만, 국법으로 볼 때는 너무나 너그럽게 한 실수입니다. 국법은 지엄한 것이니 도현(島縣)에서 노비를 삼게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

롭게 하지 말라.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비록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줄곧 서로 버티기만 해서는 출장(出場)할 기약이 없으니, 아뢴 대로 하유할 일이다. 교귀(交龜)[48]한 뒤에 저절로 올라오게 하는 것을 하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김수현,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48) 교귀(交龜):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이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인수 인계하는 일.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一日 己酉

○ 正言李濟萬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일(기유)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성중,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日 庚戌

○ 掌令金翊休 正言柳協基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末端事速卽停【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김익휴(金翊休) 등의 계

○ 장령 김익휴(金翊休),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속히 멈추게 하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日 庚戌

○ 掌令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일(경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익휴(金翊休)의 계

○ 장령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성중, 조우, 한후락, 추자도,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日 庚戌

○ 正言柳協基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일(경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협기(柳協基)의 계

○ 정언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윤범성, 성중,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三日 辛亥

○ 以備忘記 傳于徐有防曰 觀此萊伯狀啓 甚爲精詳 新到之初 銳意奉公可知 殊極嘉乃 嗣後莫或怠忽事回諭 至於濟州子弟之漂泊異洋 得以生還 可謂奇矣 而尙今拘囚 豈無忍歸之情 許多人物之免死 已不勝多幸 若其進貢物種之遺失 何暇論也? 卽令解送本土事 亦爲下諭 其中溘死一名 令本牧恤典題給事 下諭于濟州牧使處.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3일(신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외양(外洋) 표박(漂迫)과 생환(生還)에 관한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로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이번 내백(萊伯: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심히 정밀하고 자상하여, 새로 도임한 시초에 정성을 다해 봉공(奉公)한 것을 알고서 유달리 매우 기뻤다. 이후에는 태홀(怠忽)한 것이 없다고 회유(回諭)하였다. 제주자제(濟州子弟)가 다른 바다에 표박(漂泊)한 것에 이르렀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도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수(拘囚)하고 있으니 어찌 참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허다한 인물이 죽음을 면한 것은 이미 다행스러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 진공(進貢) 물종(物種)을 유실(遺失)했을지라도 어느 겨를에 논한다는 말인가? 즉시 풀어주어 본토로 보낼 일이라고 영한 것도 하유할 일이다. 그 가운데 엄사(溘死)한 사람 1명은 본목(本牧)으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해 줄 일로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하유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자제, 제주목사.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三日 辛亥

○ 以備忘記 又傳于曰 因漂泊人事思之 諸道皆有燒死溳死人等 枚擧登聞 有題給恤典之例 而至於濟州 則以此登聞 絶未見也 豈止轉報道臣而然乎? 此後恤典依他道例擧行 而海外之地 有難等待 該曹覆啓之回下 亦依諸凡民事軍政便宜爲之之例 使之先擧行後狀聞事 定式施行 自戶曹卽爲分付.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3일(신해)

□ 표박인((漂泊人)에 대한 제주(濟州)의 휼전 거행에 관한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로 또 전교하기를, "표박(漂泊) 인사(人事)로 인해서 생각해보면, 여러 도는 다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들어 보고하게 하고,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한 예도 있으니, 제주(濟州)에 이르러서도 이 등문(登聞)으로써 절대로 보지 못하였도다. 어찌 도신(道臣)에게 전보(轉報)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후의 휼전(恤典)은 다른 도의 예에 따라 거행하게 하라. 바다 밖의 땅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니, 해조(該曹)에서 복계(覆啓)하여 회하(回下)하게 하는 것도 여러 범민(凡民)의 일과 군정(軍政)의 편의(便宜)에 따라 하게 한 예가 있다. 그것으로 하여금 먼저 거행하게 한 뒤에 장문(狀聞)하는 일을 정식(定式)을 시행하게 하라. 호조(戶曹)에서 즉시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휼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四日 壬子

○ 大司諫李在學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持平崔守魯·李益運 正言李濟萬·沈樂洙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末端事 胡不遄停乎?【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4일(임자)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재학(李在學) 등의 계

○ 대사간 이재학(李在學),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최수로(崔守魯)·이익운(崔守魯), 정언 이제만(李濟萬)·심낙수(沈樂洙)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어찌 빨리 정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四日 壬子

○ 掌令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4일(임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행진(尹行晉)의 계

○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이보행, 조우, 김수현, 성중.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四日 壬子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末端六件事 近日寂寥之時 有此矯警之說 予用嘉乃依啓【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4일(임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말단(末端)의 6건의 일은 근일 침묵하는 때에 이런 바로잡고 경계하는 말이 있으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윤범성, 성중, 김수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五日 癸丑

○ 大司諫李在學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持平崔守魯·李益運 正言沈樂洙·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末端事速停此啓也【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5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재학(李在學) 등의 계

○ 대사간 이재학(李在學),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최수로(崔守魯)·이익운李益運), 정언 심낙수(沈樂洙)·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속히 이 계사(啓辭)를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五日 癸丑

○ 持平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趙齊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5일(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최수로(崔守魯)의 계

○ 지평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齊泰)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五日 癸丑

○ 司諫金履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李埏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5일(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이희(金履禧)의 계

○ 사간 김이희(金履禧)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八日 丙辰

○ 大司憲李性源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持平崔守魯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兩司曰 不允. 末端事速停此啓也【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8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성원(李性源) 등의 계

○ 대사헌 이성원(李性源),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최수로(崔守魯),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속히 이 계사(啓辭)를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八日 丙辰

○ 持平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配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8일(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최수로(崔守魯)의 계

○ 지평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六日 甲子

○ 大司憲李坤 大司諫李義行 掌令尹行晉 持平崔守魯 獻納趙鎭衡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末端事何不速停此啓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6일(갑자)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갑(李坤) 등의 계

○ 대사헌 이갑(李坤), 대사간 이의행(李義行),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최수로(崔守魯), 헌납 조진형(趙鎭衡)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어찌 속히 이 계사(啓辭)를 중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六日 甲子

○ 掌令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削版罪人有臣·宗甲·義駿竝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6일(갑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행진(尹行晉)의 계

○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六日 甲子

○ 獻納趙鎭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6일(갑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조진형(趙鎭衡)의 계

○ 헌납 조진형(趙鎭衡)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七日 乙丑

○ 大司憲李坤 大司諫李義行 掌令尹行晉 持平崔守魯 獻納趙鎭衡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末端事何不速停此啓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7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갑(李坤) 등의 계

○ 대사헌 이갑(李坤), 대사간 이의행(李義行),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최수로(崔守魯), 헌납 조진형(趙鎭衡)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어찌 속히 이 계사(啓辭)를 중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七日 乙丑

○ 持平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7일(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최수로(崔守魯)의 계

○ 지평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七日 乙丑

○ 獻納趙鎭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7일(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조진형(趙鎭衡)의 계

○ 헌납 조진형(趙鎭衡)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八日 丙寅

○ 大司憲李坤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獻納趙鎭衡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末端事 耳不欲聞 亟停此啓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8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갑(李坤) 등의 계

○ 대사헌 이갑(李坤),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헌납 조진형(趙鎭衡),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듣고 싶지도 않으니 빨리 이 계사(啓事)를 정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八日 丙寅

○ 掌令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削版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8일(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행진(尹行晉)의 계

○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八日 丙寅

○ 獻納趙鎭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8일(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조진형(趙鎭衡)의 계

○ 헌납 조진형(趙鎭衡)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九日 丁卯

○ 濟州牧使狀啓 南北水口新築間城 事涉擅便 惶恐待罪事. 傳于沈豊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9일(정묘)

□ 제주성(濟州城) 남수구와 북수구에 간성(間城)을 세움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남수구와 북수구에 간성(間城)을 새로 세웠는데, 이 일이 제멋대로 하는 데에 관계될까 봐 황공스럽게도 대죄(待罪)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풍지(沈豊之)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남수구, 북수구, 간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九日 丁卯

○ 大司憲李坤 大司諫李義行 司諫金履禧 掌令尹行晉 獻納趙鎭衡 正言李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答兩司曰 不允. 末端事 何不速停此啓也?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9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이경빈(李敬彬)의 국청을 청하는 이갑(李坤) 등의 계

○ 대사헌 이갑(李坤), 대사간 이의행(李義行),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윤행진(尹行晉), 헌납 조진형(趙鎭衡),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어찌 속히 이 계사를 정지하라고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죄인, 경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九日 丁卯

○ 掌令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9일(정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행진(尹行晉)의 계

○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학,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十九日 丁卯

○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19일(정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十日 戊辰

○ 庚子四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右議政李徽之 兼兵曹判書蔡濟恭 兼刑曹判書具善復 兼禮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吏曹判書金鍾秀 知中樞府事鄭好仁 江華留守趙浚 漢城府左尹李柱國 行副司直徐有寧 行副司直鄭一祥 行都承旨鄭民始 行副司直李性源 大司憲李坤 掌令尹行晉 持平李顯模 正言李濟萬 副校理姜彝正 副修撰金宇鎭 右副承旨李度默 假注書宋文述 事變假注書姜彙鉉 記事官李璉·徐龍輔 以次進伏訖. …… 坤·行晉·顯模·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上曰 不允. 正言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0일(무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4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지중추부사 정호인(鄭好仁), 강화유수 조준(趙浚), 한성부좌윤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서유녕(徐有寧), 행부사직 정일상(鄭一祥), 행도승지 정민시(鄭民始), 행부사직 이성원(李性源), 대사헌 이갑(李坤), 장령 윤행진(尹行晉), 지평 이현모(李顯模), 정언 이제만(李濟萬), 부교리 강이정(姜彝正), 부수찬 김우진(金宇鎭), 우부승지 이도묵(李度默), 가주서 송문술(宋文述), 사변가주서 강휘옥(姜彙鉉), 기사관 이건

(李璉)·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갑·윤행진·이현모·이제만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이배죄인 경빈(敬彬)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윤행진·이현모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언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경빈, 대정현,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十一日 己巳

○ 持平李顯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1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현모(李顯模)의 계

○ 지평 이현모(李顯模)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十八日 丙子

○ 庚子四月二十八日 兼春秋張顯慶 司僕寺啓目. 刑曹判書具善復上疏 備陳軍馬孱弱之弊 仍請濟州封進中 許封雌馬 與北市取種馬 限數百匹 牧養於江華收場事 有令本寺 劃一覆奏之命矣. 各牧馬種 近甚駑下 實無以備戰具而壯軍容 將臣所論 誠爲切當. 先以此意 申飭於諸牧場 必以體大步健者上送 俾無如前苟充之弊爲乎旀. 沁都之素稱産良馬者 以其場圍廣闊 水草豊足故也. 數百年之間次第減縮 或歸本府 或歸喬桐 或設鎭堡 或許民耕 卽今所餘 不過數三彈丸之島而一島所容 不過四五十馬群而已. 雖欲如將臣之言 更爲添放 而場地未拓之前姑難輕議. 雌馬之不許越海 法意有在 今若開路封進 則私馬混出 或不無生弊之慮 今姑置之 何如? 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8일(병자)

□ 제주(濟州)의 암말 봉진 정지에 대한 사복시의 계목과 구선복(具善復)의 상소

○ 경자년 4월 28일 겸춘추 장현경이 사복시의 계목(啓目)과 형조판서 구선복의 상소(上疏)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는 것 가운데에서 암말을 봉진하도록 하여 북시(北市)에서 얻은 종마(種馬)와 함께 1백 필에 한하여 강화 목장(江華牧場)에서 기를 것을 청한 일 때문에 사복시를 시켜 획일(劃一)하여 복주(覆奏)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각 목장의 마종(馬種)은 근래에 심히 노둔해서 실로 전구(戰具)로 갖출 수 없으니, 군용(軍容)을 장중하게 하려면 장자 신이 논하는 바로는 진실로 사리에 합당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뜻으로 여러 목장에 신칙(申飭)해서, 반드시 체대(體大)하고 보건(步健)한 것으로 올려 보내게 한 것은 단지 전과 같이 구충(苟充)하는 폐단을 없게 하는 것이오며, 강화부에서 본디 좋은 말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원(場園)이 넓고 수초(水草)가 넉넉하기 때문인데, 수백 년 동안에 차례로 줄여서 혹 본부(本府)에 보내기도 하고 교동(喬桐)에 보내기도 하며, 진보(鎭堡)를 설치하기도 하고 백성의 경작을 허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지금 남은 것은 두세 탄환만 한 작은 섬에 지나지 않고 한 섬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40필이나 50필의 말 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장신(將臣)의 말처럼 다시 더 방목하려 하여도 장지(場地)를 개척하기 전에는 아직 쉽사리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암말을 바다를 건네 보내지 않는다는 법의(法意)가 있는데, 이제 만약 봉진하는 길을 연다면 혹 사마(私馬)가 섞여

나올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것에 전교하기를, "윤허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49]

△ 주제어: 제주, 봉진, 암말.

49) ≪정조실록≫ 권9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8일(丙子)' 조에 관련 내용이 일부 확인됨.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四月 二十八日 丙子

○ 司僕寺啓目. 濟州牧使金永綏狀啓 備論牧馬剩縮之數 山屯驅點之弊 闕馬之徵代 廣場之狹築 馬監之明示勸懲 牧官之減定瓜限 山馬之間年驅點 代徵之限歲增減 例下米之變通充給等事 竝令太僕 稟旨指揮矣. 剩縮事 待馬籍上來 當有別般申飭之道是乎旀. 驅點山馬 實爲一島之巨弊 而石築之不爲往復本寺 擅自動民 揆以事體 萬萬寒心. 濟州牧使金永綏 從重推考 馬監之勸懲 牧官之瓜限事係變更 不可遽議是乎旀. 已成之石築 不可還撤 則驅點之更定間年 代徵之稍變前規 例下米之從便添補等事 不害爲節目間闊狹之政. 竝依此施行事分付 何如? 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4월 28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목마의 폐단 등과 관련된 사복시의 계목

○ 사복시 계목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狀啓)에, ‘목마의 잉축(剩縮) 수(數)와 산둔(山屯)을 구점(驅點)하는 폐단, 궐마(闕馬)를 징대(徵代)하는 것, 광장(廣場)의 협축(狹築)에 대한 것, 마감(馬監)의 권징(勸懲)을 명시(明示)하는 것, 목관(牧官)의 과한(瓜限)을 감정(減定)하는 것, 산장마[山馬]를 간년(間年)으로 구점하는 것, 대징(代徵)을 한세(限歲)로 증감하는 것, 예하미(例下米)[50]를 변통하여 충분하게 주는 것 등의 일을 갖춰 자세히 논해보니, 모두 태복시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지휘하였습니다. 잉축의 일은 마적(馬籍)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서 마땅히 별반(別般)으로 신칙(申飭)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오며, 산마을 구점하는 일은 실로 한 섬의 큰 폐단이 되는 것인데, 돌을 쌓는 것을 사복시에서 보고하고 지시한 것도 없이 마음대로 동원한 것은 사체(事體)로 볼 때 아주 한심한 것입니다. 제주목사 김영수를 중중추고(從重推考) 해야 합니다. 마감의 권징과 목관의 과한은 일의 변경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갑자기 논의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석축(石築)은 되돌려 훼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점하는 것을 간년으로 갱정(更定)하는 것, 대봉(代徵)하는 것에서 전규(前規)를 초변(稍變)하는 것, 예하미를 종편(從便)하여 첨보(添補)하는 것 등의 일은 절목(節目) 간에 활렵(闊狹)하는 정사에서 해롭지 않은 것이므로 모두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

50) 예하미(例下米): 상례로 내려보내는 쌀.

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五月 十一日 己丑

○ 庚子五月十一日卯時 上御誠正閣. 朝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事李徽之 特進官鄭昌聖 同知事徐有寧 大司憲鄭一祥 特進官洪檢 參贊官趙時偉 獻納尹長烈 侍讀官姜忱 檢討官權以綱 假注書金熙采 記事官李璉·金載瓚 領議政金尙喆 兼兵曹判書蔡濟恭 兼刑曹判書具善復 戶曹判書金華鎭 漢城左尹李柱國 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徐有慶 行副司直李性源 右承旨李度默 掌令柳孟養 事變假注書姜彙鉉 以次進伏訖.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嵲 亟寢酌處之命 亟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5월 11일(기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5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사(領事) 이휘지(李徽之), 특진관 정창성(鄭昌聖), 동지사 서유녕(徐有寧),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특진관 홍검(洪檢), 참찬관 조시위(趙時偉), 헌납 윤장렬(尹長烈), 시독관(侍讀官) 강침(姜忱), 검토관(檢讀官) 권이강(權以綱), 가주서 김희채(金熙采), 기사관 이건(李璉)·김재찬(金載瓚),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겸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경(徐有慶), 행부사직 이성원(李性源), 우승지 이도묵(李度默), 장령 유맹양(柳孟養), 사변가주서 강휘옥(姜彙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학, 이보행,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五月 十二日 庚寅

○ 正言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 答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5월 12일(경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五月 二十二日 庚子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 答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5월 22일(경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五月 二十二日 庚子

○ 正言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並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安兼濟等事 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5월 22일(경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五月 二十九日 丁未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定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趙濟泰等事 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5월 29일(정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 등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학,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五月 二十九日 丁未

○ 庚子五月二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次對 同爲入侍時 同知事徐有寧 特進官鄭民始 參贊官李邦榮 侍讀官姜忱 檢討官尹尙東 假注書洪光一 記注官鄭必忠 記事官金載瓚 宗臣安川君烓 武臣宣傳官成玉 以次進伏訖. …… 長烈進伏曰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定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長烈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5월 29일(정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5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주강 차대와 함께 입시했을 때이다. 동지사 서유녕(徐有寧), 특진관 정민시(鄭民始), 참찬관 이방영(李邦榮), 시독관 강침(姜忱), 검토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홍상일(洪光一), 기주관 정필충(鄭必忠), 기사관 김재찬(金載瓚), 종신 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 무신 선전관 성옥(成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장렬(尹長烈)이 나와 엎드리며 말하기를, "〈상략〉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상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一日 戊申

○ 掌令柳孟養 持平沈商賢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答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일(무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 등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 지평 심상현(沈商賢)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일종의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생명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은 지엄한 것이어서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一日 戊申

○ 司諫金履禧 獻納尹長烈 正言徐有鍊·鄭益祚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일(무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이희(金履禧) 등의 계

○ 사간 김이희(金履禧), 헌납 윤장렬(尹長烈), 정언 서유련(徐有鍊)·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幺麼]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日 己酉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南海縣爲奴罪人金重得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趙濟泰等事·趙嵎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일(기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조제태(趙濟泰) 등의 일과 조우(趙嵎)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대정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日 己酉

○ 正言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安兼濟等事·埏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일(기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안겸제(安兼濟)의 일과 이연(李埏)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三日 庚戌

○ 持平沈商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削版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3일(경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상현(沈商賢)의 계

○ 지평 심상현(沈商賢)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 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학,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三日 庚戌

○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會正王法.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十五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3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장렬(尹長烈)의 계

○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15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四日 辛亥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4일(신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 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四日 辛亥

○ 司諫金履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十五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4일(신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이희(金履禧)의 계

○ 사간 김이희(金履禧)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15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五日 壬子

○ 庚子六月初五日卯時 上御誠正閣. 朝講次對 同爲入侍時 領事徐命善 知事蔡濟恭 特進官金鍾秀·兪彦鎬 大司憲鄭一祥 大司諫李養鼎 參贊官李邦榮 侍讀官姜忱 檢討官尹尙東 假注書洪光一 記注官鄭必忠 記事官李璉 右議政李徽之 兼刑曹判書具善復 兵曹判書金華鎭 禮曹判書金熤 左尹李柱國 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徐有寧 戶曹參判鄭民始 行副司直李性源 司諫金履禧 掌令柳孟養 獻納尹長烈 持平沈商賢 正言徐有鍊·鄭益祚 右副承旨沈念祖 事變假注書吳泰賢 以次進伏訖. …… 一祥·孟養·商賢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措辭見上】上曰 不允. 一祥·孟養·商賢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一祥·孟養·商賢曰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上曰 不允. …… 養鼎·履禧·長烈·有鍊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定縣[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5일(임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6월 초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조강 차대에 함께 입시한 영사 서명선(徐命善),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이양정(李養鼎), 참찬관 이방영(李邦榮), 시독관(侍讀官) 강침(姜忱), 검토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홍광일(洪光一), 기주관 정필충(鄭必忠), 기사관 이건(李璉),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병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예조판서 김익(金熤), 좌윤 이주국(李柱國),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녕(徐有寧), 호조참판 정민시(鄭民始) 행 부사직 이성원(李性源),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유맹양(柳孟養), 헌납 윤장열(尹長烈), 지평 심상현(沈商賢), 정언 서유련(徐有鍊)·정익조(鄭益祚), 우부승지 심염조(沈念祖), 사변가주서 오태현(吳泰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일상·유맹양·심상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

(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일상·유맹양·심상현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일상·유맹양·심상현이 아뢰기를, "〈상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또한 물러가 기다리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양정·김이희·윤장렬·서유련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양정·김이희·윤장렬·서유련이 아뢰기를, "〈상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六日 癸丑

○ 庚子六月初六日卯時 上御誠正閣. 晝講 大臣同爲入侍時 同知事金熤 參贊官鄭志儉 特進官李性源 侍讀官李時秀 檢討官權以綱 假注書洪光一 記注官鄭必忠 記事官李璉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持平沈商賢 正言徐有鍊 宗臣安春君㻋 武臣邊慶遇 以次進伏訖. …… 商賢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商賢曰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商賢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上曰 不允. …… 有鍊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 上曰 依啓.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6일(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6월 초6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주강에 대신이 함께 입시했을 때, 동지사 김익(金熤) 참찬관 정지검(鄭志儉), 특진관 이성원(李性源), 시독관 이시수(李時秀), 검토관 권이강(權以綱), 가주서 홍광일(洪光一), 기주관 정필충(鄭必忠), 기사관 이건(李璉),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지평 심상현(沈商賢), 정언 서유련(徐有鍊), 종신 안춘군(安春君) 㻋(㻋), 무신 변경우(邊景遇)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상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상현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

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심상현이 아뢰기를, "〈상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련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상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추자도,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九日 丙辰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9일(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九日 丙辰

○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 十五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9일(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장렬(尹長烈)의 계

○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5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日 丁巳

○ 持平沈商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 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0일(정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상현(沈商賢)의 계

○ 지평 심상현(沈商賢)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의 일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日 丁巳

○ 正言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 十五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0일(정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과 제15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一日 戊午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1일(무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二日 己未

○ 持平沈商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2일(기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상현(沈商賢)의 계

○ 지평 심상현(沈商賢)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三日 庚申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3일(경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三日 庚申

○ 正言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竝見上】……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3일(경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송민재(宋民載)의 계

○ 정언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모두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四日 辛酉

○ 庚子六月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兼戶曹判書蔡濟恭 兵曹判書金華鎭 吏曹判書金鍾秀 禮曹判書金熤 漢城左尹李柱國 行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徐有寧 吏曹參判鄭民始 大司憲鄭一祥 大司諫宋煥喆 司諫沈命德 掌令柳孟養 持平李濟萬·沈商賢 校理姜忱 正言宋民載 修撰權以綱 右副承旨沈念祖 假注書徐美修 事變假注書吳泰賢 記事官李璉·金載瓚 以次進伏訖. …… 一祥·孟養·濟萬·商賢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上曰 不允. 煥喆·命德·民載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4일(신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6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호조판서 채제공(蔡濟恭), 병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예조판서 김익(金熤), 한성좌윤(漢城左尹) 이주국(李柱國), 행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녕(徐有寧), 이조 참판 정민시(鄭民始),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송환철(宋煥喆), 사간 심명덕(沈命德), 장령 유맹양(柳孟養), 지평 이제만(李濟萬)·심상현(沈商賢), 교리 강침(姜忱), 정언 송민재(宋民載), 수찬 권이강(權以綱), 우부승지 심염조(沈念祖), 가주서 서미수(徐美修), 사변가주서 오태현(吳泰賢), 기사관 이건(李璉)·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일상·유맹양·이제만·심상현 등이 아뢰기

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송환철·심명덕·송민재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五日 壬戌

○ 平沈商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5일(임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상현(沈商賢)의 계

○ 지평 심상현(沈商賢)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五日 壬戌

○ 正言徐有鍊啓曰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5일(임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六日 癸亥

○ 府啓. 持平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6일(계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헌부의 계를 지평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六日 癸亥

○ 院啓. 正言宋民載啓曰 正言徐有鍊啓曰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6일(계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송민재(宋民載)의 계

○ 사간원의 계를 정언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九日 丙寅

○ 府啓. 持平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9일(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헌부의 계를 지평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十九日 丙寅

○ 院啓. 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19일(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명덕(沈命德)의 계

○ 사간원의 계를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十日 丁卯

○ 三司合啓. …… 持平沈商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院啓. 正言宋民載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嫮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0일(정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심상현(沈商賢)의 계

○ 삼사(三司)가 합계(合啓)하기를, 〈중략〉 사헌부의 계를 지평 심상현(沈商賢)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사간원의 계를 정언 송민재가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하익룡(河翼龍)·김중득(金重得)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대정현 정배죄

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한후락, 추자도, 이보행, 조우, 하익룡, 김중득,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十三日 庚午

○ 掌令權德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3일(경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권덕훈(權德訓)의 계

○ 장령 권덕훈(權德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十四日 辛未

○ 掌令權德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4일(신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권덕훈(權德訓)의 계

○ 장령 권덕훈(權德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十四日 辛未

○ 庚子六月二十四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開城留守鄭好仁 禮曹判書金煜 漢城左尹李柱國 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徐有寧 吏曹參判鄭民始 大司諫李敬玉 獻納尹長烈 校理姜忱 左承旨李亨逵 假注書趙興鎭 事變假注書沈達漢 兼春秋張顯慶 記事官徐龍輔 以次進伏訖. …… 敬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信[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又啓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4일(신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6월 24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개성 유수(開城留守)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익(金煜),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녕(徐有寧), 이조참판 정민시(鄭民始), 대사간 이경옥(李敬玉), 헌납 윤장렬(尹長烈), 교리 강침(姜忱),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사변가주서 심달한(沈達漢), 겸춘추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경옥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十五日 壬申

○ 掌令權德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5일(임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권덕훈(權德訓)의 계

○ 장령 권덕훈(權德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六月 二十五日 壬申

○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6월 25일(임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장렬(尹長烈)의 계

○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一日 丁丑

○ 持平李夔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일(정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들과 체결(締結)하여 난만하게 화통(和通)하는 실상은 거개(渠旣)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를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은 지엄한 것이니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一日 丁丑

○ 獻納尹長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일(정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장렬(尹長烈)의 계

○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三日 己卯

○ 持平李夔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3일(기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三日 己卯

○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3일(기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장렬(尹長烈)의 계

○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四日 庚辰

○ (正言洪柱翼啓曰)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末過矣.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4일(경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홍주익(洪柱翼)의 계

○ (정언 홍주익(洪柱翼)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마지막의 과오[末過]는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五日 辛巳

○ 庚子七月初五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兼戶曹判書蔡濟恭 知中樞府事洪樂性 刑曹判書金孝大 兵曹判書李衍祥 訓鍊都正李敬懋 吏曹參判鄭民始 持平李夔 校理李敬一 正言洪柱翼 副修撰尹尙東 左承旨李亨逵 記事官金載瓚·金廷龍·徐龍輔 以次進伏訖. …… 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柱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5일(신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7월 초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호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지중추부사 홍낙성(洪樂性), 형조판서 김효대(金孝大),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이조참판 정민시(鄭民始), 지평 이기(李夔), 교리 이경일(李敬一), 정언 홍주익(洪柱翼), 부수찬 윤상동(尹尙東),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기사관 김재찬(金載瓚)·김정룡(金廷龍)·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홍주익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六日 壬午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6일(임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六日 壬午

○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6일(임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장렬(尹長烈)의 계

○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는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十一日 丁亥

○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1일(정해)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상략〉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조우,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十二日 戊子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2일(무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十三日 己丑

○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3일(기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상략〉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十五日 辛卯

○ 持平李夔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5일(신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十六日 壬辰

○ 持平李夔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6일(임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서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十七日 癸巳

○ 持平李夔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17일(계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二十一日 丁酉

○ 朴祐源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別御乘馬二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凶咎馬十匹 駑駘馬十匹 合一百八十匹內二匹船中故失 實納馬一百七十八匹 禾毛色 別單書入 而耽羅馬品 近甚孱劣 此必由於牧養之不得其宜 故縷縷關飭 不啻申嚴矣. 今番貢馬 又復如前 先運如此後運可知 牧使若果惕念 加意抄擇封進 則豈有此弊? 揆以道理 萬萬駭然 濟州牧使金永綏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貢駒罷劣 莫若近年 禁軍馬兵 將至雇騎貰乘而後已 山屯之貢 許令退限 歲捧之品 不拘蹇瘠 朝家之前此曲恕 抑云屢矣. 觀此本寺草記馬品 又復若前云 此亦紀綱所在 藉令飼牧失宜 獨非守臣之罪乎? 罷拿之譴 在所不已 而迎送有弊 姑此寬假 委折爲先查問 罪狀從後稟處.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21일(정유)

□ 제주(濟州) 진상마의 잔열(孱劣)에 관한 박우원(朴祐源)의 계

○ 박우원(朴祐源)이 사복시 관원과 한두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선운(先運)으로 나온 삼명일(三名日) 진상마(進上馬) 60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흉구마(凶咎馬) 10필, 노태마(駑駘馬) 10필 등을 합한 180필 안에, 2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실제 납마(納馬)는 178필인데, 이들의 화모색(禾毛色)은 별단(別單)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탐라(耽羅)의 마품(馬品)이 근래에 매우 잔열(孱劣)합니다. 이러한 것은 필시 목양(牧養)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관칙(關飭)[51]으로 신칙한 것이 엄했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금번 공마(貢馬)도 반복한 것이 전과 같았는데도 선운(先運)이 이와 같았으니, 후운(後運)도 알만 합니다. 목사(牧使)가 과히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 이와 같이 초택(抄擇)하여 봉진하였다면 어찌 이런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도리로 헤아려 볼 때도 살피건대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이후에 경계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공마[貢駒]가 졸렬함에 그쳤으니, 만약 근년에 금군(禁軍)의 마병(馬兵)이 없을 수 있어, 장차 삯을 주고 세를 주고 수레를 빌리는 것을 기약해야 합니다. 삼둔(山屯)의 공마는 기한을 물리도록 영을 내려 세공(歲捧) 물품

51) 관칙(關飭):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공문을 보내는 것.

에 절척(蹇瘠)을 불구하고 조가(朝家)에서 전에도 이와 같은 곡서(曲恕)가 또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복시 초기(草記) 마품을 보건대, 또한 전과 같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기강에 있어서 가령 사목(飼牧)의 실의(失宜)에 있다면 오로지 수신(守臣)의 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파직하고 붙잡아오는 견책[罷拿之譴]을 중지할 수 없으며, 영송(迎送)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진실로 이 관가(寬假)의 위절(委折)을 우선 조사하여 묻게 하고 죄상은 후에 품처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삼명일, 진상마, 별어승마, 차비진상마, 흉구마, 노태마,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二十二日 戊戌

○ …… 掌令權德訓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削版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獻納尹長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姜忱事 院前停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22일(무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권덕훈(權德訓)의 계

○ 〈상략〉 장령 권덕훈(權德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헌납 윤장렬(尹長烈)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

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강침(姜忱)의 일은 사간원에서 전에 아뢴 대로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二十三日 己亥

○ 掌令權德訓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23일(기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권덕훈(權德訓)의 계

○ 장령 권덕훈(權德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二十四日 庚子

○ 正言姜儐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24일(경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二十七日 癸卯

○ 又以司僕寺官員 以一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進上年例馬八匹 歲貢馬二百匹 合二百八匹內 三匹船中故失 實納馬二百五匹 三運兵曹別啓請山屯馬二百匹內 四匹船中故失 一匹到靈光故失 二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一百九十三匹 竝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27일(계묘)

□ 제주(濟州) 후운(後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계

○ 또한 사복시 관원과 일(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후운(後運)으로 나온 진상(進上) 연례마(年例馬) 8필, 세송마(歲貢馬) 200필을 합한 208필 안에, 3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여 실제 납마(納馬)는 205필입니다. 삼운(三運)은 병조(兵曹)에서 특별히 아뢰어 청한 산두마(山屯馬) 200필 안에, 4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1필은 영광(靈光)에 도착하여 고실하고, 2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하여 병으로 남겨두어서 실제 납마(納馬)는 193필입니다. 모든 말의 화모색(禾毛色)은 별단으로 들이는 것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연례마, 세송마, 산두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二十八日 甲辰

○ 鄭志儉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永綏啓本五度 則其中四度 以去年十二月卄日一度以今年三月卄日 故事甚怪訝 招問持者 則以爲發船 實在六月云 六月村進[封進]之啓 或以三月卄日 或以去年卄日者 揆以事體 極涉駭然 該牧金永綏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28일(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계본에 관한 정지검(鄭志儉)의 계

○ 정지검(鄭志儉)이 아뢰기를, "즉시 엎드려서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계본(啓本) 5도(五度)를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4개의 도는 지난 해 12월 20일에, 1개의 도는 올해 3월 20일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매우 괴이합니다. 초문(招問)을 지닌 자가 발선(發船)한 것이 실재로 6월이라고 합니다. 6월에 봉진한 계(啓)가 혹 3월 20일에 이른 것인지, 혹 지난 해 20일에 이른 것인지? 사체(事體)를 살피건대 매우 놀라울 일입니다. 해당 목사 (김영수(金永綏))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계본.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七月 三十日 丙午

○ 庚子七月三十日辰時 上御宣政殿. 晝講·次對 同爲入侍時 特進官黃景源 知事 李性源 參贊官朴祐源 侍讀官李鼎運 檢討官柳孟養 假注書李敬行 記注官張顯慶 記事官文采五 宗臣安春君㮨 武臣白東毅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兼戶曹判書蔡濟恭 禮曹判書徐有慶 刑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李柱國 訓鍊都正李敬懋 左副承旨李致中 事變假注書沈達漢 持平柳協基·林道浩 以次進伏訖. …… 協基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嵲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7월 30일(병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7월 30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상략〉. 주강에 차대(次對)를 위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특진관 황경원(黃景源), 지사 이성원(李性源), 참찬관 박우원(朴祐源), 시독관 이정운(李鼎運), 검토관 유맹양(柳孟養), 가주서 이경행(李敬行), 기주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문채오(文采五), 종신 안춘군(安春君) 이㮨(李㮨) 무신 백동의(白東毅),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호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예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좌부승지 이치중(李致中), 사변가주서 심달한(沈達漢), 지평 유협기(柳協基)·임도호(林道浩)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유협기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여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금번에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四日 庚戌

○ 掌令朴宗彦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4일(경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종언(朴宗彦)의 계

○ 장령 박종언(朴宗彦)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六日 壬子

○ 掌令朴宗彦啓曰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6일(임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종언(朴宗彦)의 계

○ 장령 박종언(朴宗彦)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六日 壬子

○ 庚子八月初六日 兼春秋朴行淳. 司僕寺啓目 因濟州牧使金永綏狀啓 所山馬分排各年事 依所請施行 何如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6일(임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에 관한 사복시의 계목

○ 경자년 8월 초6일에 겸춘추 박행순(朴行淳)이 사복시 계목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로 인해, 산마(山馬)를 각 해에 분배한 일은, 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윤허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장계, 산마.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九日 乙卯

○ 庚子八月初九日辰時 上御宣政殿. 朝講次對 同爲入侍時 領事金尙喆 特進官黃景源·徐有慶 同知事徐浩修 參贊官李亨逵 大司諫沈念祖 侍讀官金翊休 檢討官柳孟養 掌令朴宗彦 假注書徐美修 記事官金廷龍·李集斗 內局都提調鄭弘淳 副提調蔡弘履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兵曹判書李衍祥 禮曹判書徐有慶 刑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李柱國·徐有寧 左副承旨朴祐源 事變假注書沈達漢 以次進伏訖. …… 宗彦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上曰 不允. 念祖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9일(을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8월 초9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조강 차대(次對)에 함께 입시할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특진관 황경원(黃景源)·서유경(徐有慶), 동지사 서호수(徐浩修), 참찬관 이형규(李亨逵), 대사간 심염조(沈念祖), 시독관 김익휴(金翊休), 검토관 유맹양(柳孟養), 장령 박종언(朴宗彦), 가주서 서미수(徐美修), 기사관 김정룡(金廷龍)·이집두(李集斗), 내국 도제조 정홍순(鄭弘淳), 부제조 채홍리(蔡弘履),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 예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서유녕(徐有寧), 좌부승지 박우원(朴祐源), 사변가주서 심달한(沈達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박종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염조가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十日 丙辰

○ 掌令李鼎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末端事 俄已處分矣.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10일(병진)

□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정운(李鼎運)의 계

○ 장령 이정운(李鼎運)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말단(末端)의 일은 조금 전에 이미 처분한 것이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十日 丙辰

○ 正言任希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 請大靜縣定配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快正王法【措辭見上】……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末端事 俄已處分矣.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10일(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임희원(任希遠)의 계

○ 정언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말단의 일은 조금 전에 이미 처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十一日 丁巳

○ 持平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11일(정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임도호(林道浩)의 계

○ 지평 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二十日 丙寅

○ …… 持平徐郁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夬正王法. ……【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20일(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서유수(徐郁修)의 계

○ 〈상략〉 지평 서유수(徐郁修)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二十七日 癸酉

○ 掌令盧瑞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27일(계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

○ 장령 노서국(盧瑞國)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八月 二十七日 癸酉

○ 獻納宋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8월 27일(계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송락(宋樂)의 계

○ 헌납 송락(宋樂)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五日 庚辰

○ 持平李夔啓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5일(경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五日 庚辰

○ 正言姜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5일(경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幺麽]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六日 辛巳

○ 庚子九月初六日 兼春秋張顯慶. 司僕寺啓目 濟州民人姜周煥等上言內 以本島山馬場 永久遵行之意 令司僕寺 行關本州事呼籲矣. 其在綏遠之義 有難以猥濫斥退 依所願施行事 行關分付何如? 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6일(신사)

□ 제주(濟州) 사람 강주환(姜周煥)의 상언(上言)에 관한 장현경(張顯慶)의 계

○ 경자년 9월 초6일에 겸춘추 장현경(張顯慶)이 사복시 계목을 아뢰기를, "제주(濟州) 사람 강주환(姜周煥) 등의 상언(上言) 안에, 이 섬의 산마장(山馬場)은 영구히 준행(遵行)할 뜻은 사복시로 하여금 본 고을에 행관(行關)할 일을 호유(呼籲)하였습니다.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뜻에 있어서 외람되이 척퇴(斥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일로 행관(行關)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강주환, 산마장.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二日 丁亥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2일(정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二日 丁亥

○ 正言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2일(정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三日 戊子

○ 持平呂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3일(무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지평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四日 己丑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4일(기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四日 己丑

○ 正言李義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4일(기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의존(李義存)의 계

○ 정언 이의존(李義存)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五日 庚寅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5일(경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五日 庚寅

○ 正言李義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5일(경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의존(李義存)의 계

○ 정언 이의존(李義存)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六日 辛卯

○ 以濟州牧使金永綬 貢馬不善擇封 惶恐待罪事狀啓 傳于金宇鎭曰 勿待罪事 回諭 令本寺稟處.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6일(신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의 공마(貢馬) 택봉에 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가 공마(貢馬)를 잘 택봉(擇封)하지 못해서 황공스럽게 대죄(待罪)하는 일이라는 장계입니다.”라고 하였다. 김우진(金宇鎭)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고 사복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공마, 택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六日 辛卯

○ 掌令柳雲羽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6일(신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六日 辛卯

○ 正言李義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夬正王法. 請逆賊尙魯 亟施孥戮之典. 請還寢罪人柱翼安置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6일(신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의존(李義存)의 계

○ 정언 이의존(李義存)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죄인 덕수(德秀)를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덕수.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八日 癸巳

○ …… 持平呂萬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正言李義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8일(계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榮)의 계

○ 〈상략〉 지평 여만영(呂萬榮)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이의존(李義存)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九日 甲午

○ …… 持平呂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院啓. 正言李義存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嫩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9일(갑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상략〉 지평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이의존(李義存)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

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十九日 甲午

○ 司僕寺啓目 觀此濟州牧使金永綏狀啓 其所査實 終不別白 馬摠之增減 則歸之於冬日之寒暖 馬品之孱劣 則諉之於駑駘之蕃盛 冬日寒暖 古今無異 則何獨於近年之內 報摠漸縮 馬品之駑駿 種落自別 則豈可以駑駘之故 良産漸少乎 此實由於牧養之政不善檢飭 封進之際 不謹抄擇 又或有換易私馬 許多奸僞之弊 濟州牧使金永綏 爲先推考 更觀明年貢馬 以爲從重嚴處之地何如? 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19일(갑오)

□ 제주마(濟州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목

○ 사복시의 계목(啓目)에, "이번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를 보건대, 그 실상을 조사한 바, 끝내 명백하지 않습니다. 말총의 증감(增減)은 겨울 날씨의 한난(寒暖)에 달려있습니다. 마품(馬品)의 잔렬(孱劣)은 노태마의 번식을 핑계로 하였습니다. 겨울 날씨의 한난은 고금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오로지 근년 안에 보고한 말총만 점축(漸縮)할 수 있겠습니까? 마품의 노준(駑駿)은 종낙(種落)이 절로 다른데 어찌 노태 때문에 좋은 말이 점소(漸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목양하는 정책을 잘 검칙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봉진할 때 삼가 초택(抄擇)하지 않고, 또한 혹 사마(私馬)를 환역(換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위(奸僞)하는 폐단이 허다합니다. 제주목사 김영수를 우선 추고(推考)하고, 다시 내년의 공마를 보아서 종중(從重)하여 엄처(嚴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말총, 계목.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日 乙未

○ 庚子九月二十日辰時 上御宣政殿.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戶曹判書金華鎭 開城留守鄭好仁 禮曹判書徐有慶 刑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李柱國·李敬懋·徐有寧 禮曹參判鄭一祥 戶曹參判鄭民始 大司諫李崇祜 掌令柳雲羽 持平呂萬永 正言李義存 修撰林濟遠 同副承旨金宇鎭 假注書曺喜有 事變假注書崔守忱 記事官徐龍輔·李集斗 以次進伏訖. …… 雲羽·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崇祜·義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0일(을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9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개성유수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이경무(李敬懋)·서유녕(徐有寧), 예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호조참판 정민시(鄭民始), 대사간 이숭호(李崇祜), 장령 유운우(柳雲羽), 지평 여만영(呂萬永), 정언 이의존(李義存), 수찬 임제원(林濟遠), 동부승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조희유(曺喜有), 사변가주서 최수침(崔守忱), 기사관 서용보(徐守輔)·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운우·여만영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

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숭호·이의존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四日 己亥

○ 持平呂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4일(기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지평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五日 庚子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5일(경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五日 庚子

○ 正言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5일(경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52]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52) 승정원일기 탈초본에는 강갑(姜坤)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규장각 원본 확인 결과 '강인(姜儐)'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음.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六日 辛丑

○ 持平呂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6일(신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지평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六日 辛丑

○ 正言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6일(신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강인(姜儐)의 계

○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七日 壬寅

○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正言姜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7일(임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상략〉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강인(姜儁)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

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九月 二十八日 癸卯

○ …… 持平呂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正言姜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9월 28일(계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상략〉 지평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강인(姜儐)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

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七日 壬子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7일(임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七日 壬子

○ 正言李東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7일(임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동직(李東稷)의 계

○ 정언 이동직(李東稷)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八日 癸丑

○ 持平呂萬永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8일(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지평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九日 甲寅

○ 獻納安廷玹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處置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9일(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안정현(安廷玹)의 계

○ 헌납 안정현(安廷玹)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과 처치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十日 乙卯

○ 獻納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10일(을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안정현(安廷玹)의 계

○ 헌납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十二日 丁巳

○ …… 掌令盧瑞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院啓. 正言宋民載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嫩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12일(정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노서국(盧瑞國)의 계

○ 〈상략〉 장령 노서국(盧瑞國)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중략〉【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정언 임석철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

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十三日 戊午

○ 掌令盧瑞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13일(무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노서국(盧瑞國)의 계

○ 장령 노서국(盧瑞國)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十三日 戊午

○ 獻納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13일(무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안정현(安廷玹)의 계

○ 헌납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十八日 癸亥

○ 庚子十月十八日辰時 上御宣政殿. 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諸承旨持公事入侍時 特進官鄭昌聖 同知事徐有寧 參贊官鄭志儉 侍讀官朴天行 檢討官洪文泳 記事官金載瓚 編修官文采五 記事官李集斗 宗臣花陽君樁 武臣宣傳官申應周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兼判尹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兵曹判書李衍祥 行訓鍊都正李柱國 行副司直李敬懋 戶曹參判鄭民始 行大司諫洪檢 行都承旨李坤 左承旨徐有防 右承旨朴祐源 左副承旨李養鼎 右副承旨吳大益 事變假注書任長源 以次進伏訖. …… 檢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出擧條】…… 檢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以上出擧條】…….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18일(계유)

□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10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주강에 입시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기 위해 입시한 승지들을 인견하여 입시한 때, 특진과는 정창성(鄭昌聖), 동지사 서유녕(徐有寧), 참찬관 정지검(鄭志儉), 시독관 박천행(朴天行), 검토관 홍문영(洪文泳), 기사관 김재찬(金載瓚), 편수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이집두(李集斗), 종신 화양군(花陽君) 이각(李榷), 무신 선전관 신응주(申應周),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판윤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행훈련도정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호조참판 정민시(鄭民始), 행대사간 홍검(洪檢), 행도승지 이갑(李坤),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박우원(朴祐源), 좌부승지 이양정(李養鼎), 우부승지 오대익(吳大益), 사변가주서 임장원(任長源)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검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 〈중략〉 홍검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

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중.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十九日 甲子

○ 庚子十月十九日辰時 上御宣政殿. 晝講入侍時 知事黃景源 特進官徐有慶 參贊官李養鼎 侍讀官洪明浩 檢討官李兢淵 假注書曺亨壽 編修官文采五 記事官李集斗 宗臣花陽君榷 武臣副護軍徐有和 大司憲鄭一祥 獻納柳孟養 以次進伏訖. …… 大司憲鄭一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19일(갑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10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전정전에 나아갔다. 주강에 입시한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서유경(徐有慶), 참찬관 이양정(李養鼎), 시독관 홍명호(洪明浩), 검토관 홍긍연(洪兢淵), 가주서 조형수(曺亨壽) 편수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이집두(李集斗), 종신 화양군(花陽君) 이각(李榷), 무신 부호군 서유화(徐有和),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헌납 유맹양(柳孟養)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사헌 정일상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

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二十日 乙丑

○ 正言鄭福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20일(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복환(鄭福煥)의 계

○ 정언 정복환(鄭福煥)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二十一日 丙寅

○ 又以義禁府言啓曰 前獻納趙鎭衡上疏批旨內 錫達配所事 令該府稟處事命下矣. 梁山郡流三千里定配罪人錫達之負犯 何如? 而尙今偃息於陸地 有欠刑政不可仍置 全羅道濟州牧旌義縣 絶島移配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梁山郡執捉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21일(병인)

□ 정석달(鄭錫達)을 정의현(旌義縣)에 이배(移配)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헌납 조진형(趙鎭衡)의 상소 비지(批旨) 안에, 정석달(鄭錫達)의 배소에 관한 일을 해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양산군(梁山郡)에 유(流) 3000리로 정배된 죄인 정석달의 죄가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육지에서 편히 쉬게 한 것은 흠이 있는 형정(刑政)이어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절도(絶島)에 이배(移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죄목에 대해서는 전례대로 의금부의 서리를 보내어 양산군에서 붙잡은 다음 그대로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석달, 양산군, 제주목, 정의현, 배소.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二十二日 丁卯

○ 正言鄭福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22일(정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복환(鄭福煥)의 계

○ 정언 정복환(鄭福煥)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二十三日 戊辰

○ 正言鄭福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23일(무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복환(鄭福煥)의 계

○ 정언 정복환(鄭福煥)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月 二十七日 壬申

○ 掌令高益擎啓白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旌義縣移配罪人錫達 依律處斷.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第六件第七件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0월 27일(임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고익경(高益擎)의 계

○ 장령 고익경(高益擎)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정의현(旌義縣) 이배죄인 정석달(鄭錫達)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추자도, 김수현, 정석달, 성중, 조우, 한후락.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九日 癸未

○ 掌令權坪啓曰 妖宦壽賢之締結 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 <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門[嚴問] 期於得情 快正王府[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第六件 七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9일(계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권평(權坪)의 계

○ 장령 권평(權坪)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十一日 乙酉

○ 持平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11일(을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성태(朴聖泰)의 계

○ 지평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十一日 乙酉

○ 庚子十一月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知事李衍祥 特進官鄭昌聖 參贊官李亨元 侍讀官洪明浩 檢討官李兢淵 假注書宋俊載 記事官金載瓚·李集斗 宗臣雲峯君柮 武臣副護軍徐有和 持平朴聖泰 以次進伏訖. …… 昌聖曰 適因京兆職掌事 敢此仰達矣. 卽因濟州民呈訴 禁府羅將 有查問處決之事 故移文推捉 則該府書吏還送移文 托以逃躲 凡各司堂上之着押文移 幺麼下吏之還送替答 事未前聞 大關後弊 故當該書吏 欲爲推治 送言禁府 則都事挺身自當 終不起送 揆以事體 極涉駭然 不可無責 當該都事 拿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11일(을유)

□ 제주(濟州) 사람의 정소(呈訴)에 관한 의금부의 초기

○ 경자년 11월 11일 진시에 성정각에 나아갔다. 주강에 대청에 나아와서 대신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지사(知事) 이연상(李衍祥), 특진관 정창성(鄭昌聖), 참찬관 이형원(李亨元), 시독관 홍명호(洪明浩), 검토관(檢討官) 이긍연(李兢淵), 가주서 송준재(宋俊載),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집두(李集斗), 종신 운봉군(雲峯君) 이심(李柮), 무신 부호군 서유화(徐有和), 지평 박성태(朴聖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창성이 아뢰기를, "마침 경조(京兆) 직장(職掌)의 직임으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제주(濟州) 사람의 정소(呈訴)로 인하여 의금부의 나장(羅將)이 사문(査問)하고 처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문(移文)하여 체포하게 하고, 곧 의금부 서리가 이문을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망하거나 고발당한 것을 핑계하여 무릇 각사의 당상(堂上)이 이문에 착압(着押)하였습니다. 하찮은 하리(下吏)가 대신 대답하여 돌려보냈는데, 이런 일은 전에 듣지 못했던 것으로, 뒷날의 폐단과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당 서리가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고자 의금부(禁府) 말을 전하려 하니, 도사(都事)가 스스로 담당하고 있어도 끝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의 체모로 볼 때너무나 놀랍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마땅히 해당 도사를 나처(拿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 하리, 정소.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十二日 丙戌

○ …… 持平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院啓. 正言宋民載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嫌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12일(병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성태(朴聖泰)의 계

○ 〈상략〉 지평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여만영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

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十七日 辛卯

○ 庚子十一月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兼禮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兵曹判書李衍祥 刑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李柱國·李敬懋·徐有寧 吏曹參判鄭民始 司直金夏材 大司諫李敬養 獻納柳孟養 持平朴聖泰 正言呂萬永·李夔 校理朴天行 副修撰金履禧 左承旨李亨逵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任長源 記事官金載瓚·李集斗以次進伏訖. …… 持平朴聖泰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旌義縣移配罪人錫達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夬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大司諫李敬養 獻納柳孟養 正言李夔·呂萬永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17일(신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11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이경무(李敬懋)·서유녕(李柱寧), 이조참판 정민시(鄭民始), 사직 김하재(金夏材),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헌납 유맹양(柳孟養), 지평 박성태(朴聖泰), 정언 여만영(呂萬永)·이기(李夔), 교리 박천행(朴天行), 부수찬 김이희(金履禧),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임장원(任長源)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지평 박성태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의현 이배죄인 정석달(鄭錫達)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대사간 이경양, 헌납 유맹양, 정언 이기·여만영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정의현, 정석달,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十八日 壬辰

○ 庚子十一月十八日巳時 上御誠正閣. 禮房承旨入侍時 左承旨徐有防 假注書趙興鎭 記事官金載瓚·李集斗 以次進伏訖. …… 上曰 耽羅貢果 似當從近入來矣. 有防曰 初運當於非久上來矣.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18일(임진)

□ 탐라(耽羅)의 공과(貢果)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11월 18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예방승지가 입시한 때에,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耽羅)의 공과(貢果)는 마땅히 가까운 시일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유방이 아뢰기를, "초운(初運)은 마땅히 오래 걸리지 않고 올라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탐라, 공과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十九日 癸巳

○ 又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金永綏 以其身病連呈辭狀矣. 赴任已至三載 實恙若是難强 海島重任 不可一向相持許遞 其代申飭該曹 各別擇送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19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신병(身病)에 따른 교체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는 그의 신병(身病)으로 잇따라 사장(辭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이미 3년에 이르렀으니, 실제로 병이 이와 같이 난강(難强)하다면 해도(海島)의 중임(重任)을 한결같이 상지(相持)할 수 없으니, 그 후임을 체차하는 것을 신칙하여 각별하게 가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日 甲午

○ 有政. 吏批 判書未差 參判鄭民始進 參議朴祐源進 行都承旨蔡弘履進. 吏批啓曰 濟州牧使 今當差出 而本州以海島劇邑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他道守令竝擬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0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차출(差出)에 관한 정사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는 아직 차정하지 못했다. 참판 정민시(鄭民始)가 나아왔다. 참의 박우원(祐源進)이 나아왔다. 행도승지 채홍리(蔡弘履)가 나아왔다.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지금 마땅히 차출(差出)해야 하나, 이 고을이 해도(海島)의 극읍(劇邑)이라서 본디 다스리기 어렵다고 불리는 곳이어서 가려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도의 수령을 함께 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차출.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日 甲午

○ 以李衍祥爲吏曹判書. …… 南鶴聞爲濟州牧使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0일(갑오)

□ 남학문(南鶴聞)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상략〉. 이연상(李衍祥)을 호조판서로 삼고, 〈중략〉 남학문(南鶴聞)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남학문, 제주목사.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日 甲午

○ 庚子十一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領府事鄭弘淳 右議政李徽之 兼禮曹判書洪樂性 兵曹判書李衍祥 戶曹判書金華鎭 刑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李敬懋·李柱國·徐有寧 吏曹參判鄭民始 行都承旨蔡弘履 戶曹參判鄭元始 副校理趙鼎鎭 同副承旨金宇鎭 假注書趙行德 事變假注書任長源 記事官金載瓚·李集斗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牧使 今當差出 吏參 何以定望乎? 民始曰 若以武臣 則兵使中洪和輔·李鼎炳可合 而文臣則南鶴聞·金著耉 似宜矣. 上曰 以文臣差出 可也. …… 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期於得情.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0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차출과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의논함

○ 경자년 11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영부사 정홍순(鄭弘淳),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이주국(李柱國)·서유녕(徐有寧), 이조참판 정민시(鄭民始), 행도승지 채홍리(蔡弘履), 호조참판 정원시(鄭元始), 부교리 조정진(趙鼎鎭), 동부승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조행덕(趙行德), 사변가주서 임장원(任長源),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지금 마땅히 차출(差出)해야 하는데, 이참(吏參)은 어떻게 정망(定望)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무신(武臣)으로는 병사(兵使) 가운데 홍화보(洪和輔)·이정병(李鼎炳)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문신(文臣)으로 하면 남학문(南鶴聞)·김시구(金著耉)가 마땅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신으로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라

고 하였다. 〈중략〉 유운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一日 乙未

○ 持平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1일(을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긍연(李兢淵)의 계

○ 지평 이긍연(李兢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중략〉【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한 일은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二日 丙申

○ 掌令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竝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洪柱翼事 停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2일(병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유운우(柳雲羽)의 계

○ 장령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는 모두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홍주익(洪柱翼)의 일은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三日 丁酉

○ 金宇鎭 以義禁府言啓曰 洪柱翼事 旣已停啓 依初下敎 今日內發配後草記事 命下矣. 罪人柱翼 全羅道濟州牧旌義縣 減死絶島圍籬安置 而以當初承傳內辭意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 眼同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3일(정유)

□ 홍주익(洪柱翼)을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하기를 청하는 김우진(金宇鎭)의 계

○ 김우진(金宇鎭)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홍주익(洪柱翼)의 일을 이미 정계(停啓)하게 하였으니, 처음 하교(下敎)에 따라, 오늘 안으로 발배(發配)하게 한 뒤에 초기(草記)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죄인 홍주익(洪柱翼)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감사(減死)하여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게 하였으나, 당초 승전(承傳) 안의 사의(辭意)로써 죄목(罪目)을 갖추고 전례에 따라 의금부의 도사를 발견(發遣)하여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지방관과 더불어 안동(眼同)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홍주익.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四日 戊戌

○ 正言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處置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4일(무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익조(鄭益祚)의 계

○ 정언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과 처치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七日 辛丑

○ …… 掌令金光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趙濟泰物故停啓.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7일(신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광악(金光岳)의 계

○ 〈상략〉 장령 김광악(金光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임금이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여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조제태(趙濟泰)의 물고(物故)는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

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八日 壬寅

○ …… 掌令金光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正言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8일(임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광악(金光岳)의 계

○ 〈상략〉 장령 김광악(金光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

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二十九日 癸卯

○ …… 掌令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 答曰 不允. 第六件·七件事 亟停勿煩 正言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29일(계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상략〉. 장령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이긍연(李兢淵)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

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一月 三十日 甲辰

○ 庚子十一月三十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兼禮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金華鎭 吏曹判書李衍祥 兵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李柱國·李敬懋 吏曹參判鄭民始 行副司直金夏材·蔡弘履 大司諫宋鎤 司諫沈命德 副校理趙鼎鎭 副修撰金履禧 掌令朴聖泰·金光岳 持平鄭益祚 獻納安廷玹 正言洪文泳·李兢淵 左承旨李亨逵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任長源 編修官文采五 記事官李集斗 以次進伏訖. …… 掌令金光岳·朴聖泰 持平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上曰 不允. 大司諫宋鎤 司諫沈命德 獻納安廷玹 正言洪文泳·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1월 30일(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11월 30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겸예조 판서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이경무(李敬懋), 이조참판 정민시(鄭民始), 행부사직 김하재(金夏材)·채홍리(蔡弘履), 대사간 송영(宋鎤), 사간 심명덕(沈命德), 부교리 조정진(趙鼎鎭), 부수찬 김이희(金履禧), 장령 박성태(朴聖泰)·김광악(金光岳), 지평 정익조(鄭益祚), 헌납 안정현(安廷玹), 정언 홍문영(洪文泳)·이긍연(李兢淵),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임장원(任長源), 편수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장령 김광악·박

성태, 지평 정익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대사간 송영, 사간 심명덕, 헌납 안정현, 정언 홍문영·이긍연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一日 乙巳

○ …… 持平鄭益祚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正言洪文泳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逆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일(을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익조(鄭益祚)와 홍문영(洪文泳)의 계

○ 〈상략〉 지평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

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정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日 丙午

○ …… 掌令金光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일(병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광악(金光岳)와 홍문영(洪文泳)의 계

○ 〈상략〉 장령 김광악(金光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

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三日 丁未

○ …… 掌令朴聖泰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夬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獻納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3일(정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성태(朴聖泰)와 안정현(安廷玹)의 계

○ 〈상략〉 장령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헌납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

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日 甲寅

○ 持平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0일(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익조(鄭益祚)의 계

○ 지평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一日 乙卯

○ 掌令金光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1일(을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광악(金光岳)의 계

○ 장령 김광악(金光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一日 乙卯

○ 正言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1일(을묘)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긍연(李克淵)의 계

○ 정언 이긍연(李兢淵)이[53]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53) 승정원일기 탈초본에는 이극연(李克淵)으로 되어 있으나, 규장각 원문 대조 결과 "이긍연(李兢淵)"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음.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二日 丙辰

○ 掌令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2일(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성태(朴聖泰)의 계

○ 장령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二日 丙辰

○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事 亟停勿煩. 末端事 目下急務 正在舊染汚俗 咸與維新 何必抉摘?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2일(병진)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홍문영(洪文泳)의 계

○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말단(末端)의 일에서 지금의 급선무는 바로 옛날 오염된 풍속을 모두 새롭게 개혁하는 데에 있다. 그 일을 끄집어낼 필요가 뭐 있겠는가? 조속히 정계(停啓)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四日 戊午

○ …… 持平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嫋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第九件·第十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4일(무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익조(鄭益祚)의 계

○ 〈상략〉 지평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

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五日 己未

○ 掌令金光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5일(기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광악(金光岳)의 계

○ 장령 김광악(金光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五日 己未

○ 獻納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第九件·十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5일(기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안정현(安廷玹)의 계

○ 헌납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五日 己未

○ 庚子十二月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吏·兵房承旨持殿最 諸承旨同爲入侍時 都承旨徐浩修 左承旨李亨逵 右承旨徐有防 左副承旨李亨元 右副承旨金宇鎭 同副承旨鄭志儉 注書金載瓚 假注書姜彙鈺 記事官金廷龍·李集斗 以次進伏訖. …… 浩修啓曰 …… 又啓曰 卽伏見全羅監司徐有隣濟州三邑守令今秋冬等褒貶啓本 則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該州牧使金永緩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5일(기미)

□ 제주(濟州) 3읍의 포폄계본(褒貶啓本)과 김영수(金永緩)을 추고(推考)을 청하는 서호수의 계

○ 경자년 12월 15일 진시에 임금에 성정각에 나아갔다. 이·병방승지가 전최(殿最)를 하기 위해, 모든 승지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좌부승지 이형원(李亨元), 우부승지 김우진(金宇鎭), 동부승지 정지검(鄭志儉), 주서 김재찬(金載瓚), 가주서 강휘옥(姜彙鈺), 기사관 김정룡(金廷龍)·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호수가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방금 엎드려서 전라감사 서유린이 제주(濟州) 세 고을의 수령에 관한 이번 추동(秋冬) 등의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본즉, 한 사람도 하고(下考)[54]에 있는 이가 없어서 특별히 전최(殿最)를 엄명(嚴明)하게 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고을 목사 김영수(金永緩)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 포폄계본, 김영수, 추고.

54) 하고(下考): 고과(考課)에서의 성적이 하등인 것.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六日 庚申

○ …… 掌令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正言李兢淵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嫌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第九件·第十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6일(경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박성태(朴聖泰)와 이긍연(李兢淵)의 계

○ 〈상략〉 장령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이긍연(李兢淵)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

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七日 辛酉

○ …… 持平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嫩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第九件·十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7일(신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정익조(鄭益祚)와 홍문영(洪文泳)의 계

○ 〈상략〉 지평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八日 壬戌

○ 以濟州牧使狀啓 莫重節果進上 如是代封 而至於小橘 未免闕封 惶恐待罪事 傳于徐有防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8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절과(節果) 진상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 장계에, 막중한 절과(節果) 진상(進上)을 이와 같이 대봉(代封)하였는데, 소귤(小橘)이 궐봉(闕封)을 면할 수가 없어서 황공스럽게도 대죄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서유방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하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절과, 진상.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十九日 癸亥

○ 徐有防 以奉常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封進十一月令宗廟·景慕宮薦新乳柑·洞庭橘來到 臣進詣看品 則乳柑元數三百六箇內 五十七個腐傷靡爛 可合薦進者 只是二百四十九箇 全數退送 則越海往返之際 必不免闕封. 故宗廟二百三十四箇 景慕宮十五箇 不得已依例推移薦進 而封進官之不謹致察 莫重薦新物種有此腐傷 以致減數薦新之境者 事體所在 誠極駭然. 封進官濟州前牧使金永綬罷職 何如? 傳曰 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19일(계해)

□ 제주(濟州)에서 봉진한 11월령 천신의 궐봉(闕封)에 관한 봉상시 관원과 제조의 계

○ 서유방이 봉상시 관원과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11월령(十一月令)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 천신(薦新)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이 내도(來到)하여, 신이 진예(進詣)하여 간품(看品)한 즉, 유감(乳柑)의 원수(元數) 306개 안에, 57개는 썩고 상하여 문드러져서 마땅히 천진(薦進)할 만한 것은 단지 249개입니다. 전수(全數)를 물려 보내면, 바다를 건너고 가서 돌아올 때 반드시 궐봉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묘(宗廟) 234개, 경모궁(景慕宮) 15개로, 전례에 따라 추이(推移)하여 천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진관(封進官)이 조심성있게 살피지 않아서 막중한 천신 물종(薦新物種)이 이와 같이 썩고 상하여 천신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이르렀으니 일의 대체에 있어 참으로 매우 해괴합니다. 봉진관인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를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천신, 궐봉, 김영수, 제주목사.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一日 乙丑

○ 濟州防禦使狀啓 封進各樣橘果運次 似未免失序 惶恐待罪事. 傳于鄭志儉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1일(을축)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귤과(橘果) 봉진에 관한 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봉진(封進)한 각양 귤과(橘果)를 운반하는 것에서 차례를 잃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 황공스럽게도 대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정지검(鄭志儉)에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귤과, 봉진.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一日 乙丑

○ 持平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1일(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긍연(李兢淵)의 계

○ 지평 이긍연(李兢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一日 乙丑

○ 司諫李東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第十六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1일(을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

○ 사간 이동욱(李東郁)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二日 丙寅

○ 以濟州防禦使金永綏狀啓 橘果薦新進上過限 惶恐待罪事 傳于徐有防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2일(병인)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귤과(橘果) 천신(薦新) 진상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에, 귤과(橘果) 천신(薦新)에 대한 진상 기한이 지나서 황공하게도 대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김영수, 귤과, 천신.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二日 丙寅

○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正言趙城鎭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嫌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第十六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2일(병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우진(李羽晉)과 조성진(趙城鎭)의 계

○ 〈상략〉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정언 조성진(趙城鎭)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

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五日 己巳

○ 庚子十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宣政殿. 常參次對 各司久任郎廳 同爲入侍時 行都承旨嚴璹 行左承旨洪檢 行右承旨李亨逵 左副承旨徐有防 右副承旨金宇鎭 同副承旨鄭志儉 記事官金載瓚 假注書李集斗 編修官文采五 記事官徐龍輔 先行四拜禮 以次進伏. …… 大司憲李坤 掌令尹行晉 持平李兢淵·李羽晉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坤等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上曰 不允. …… 坤等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坤等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坤等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措辭竝見上】…… 獻納安廷玹 正言趙城鎭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廷玹等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廷玹等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5일(기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대신들과 논의함

○ 경자년 1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상참 때의 차대(次對)에 각 사(司)의 구임 낭청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행도승지 엄숙(嚴璹), 행좌승지 홍검(洪檢), 행우승지 이형규(李亨逵),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 우부승지 김우진(金宇鎭), 동부승지 정지검(鄭志儉), 기사관 김재찬(金載瓚), 가주서 이집두(李集斗), 편수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가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사헌 이갑, 장령 윤행진, 지평 이긍연·이우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정

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조사(措辭)가 모두 위에 보임】 〈중략〉 헌납 안정현, 정언 조성진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정현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정현 등이 아뢰기를,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六日 庚午

○ 司僕寺啓目. 因濟州牧使金永綏啓本 監牧官帖文成送之意 分付該曹 何如? 啓. 傳曰 依允.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6일(경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계본과 감목관(監牧官) 체문(帖文)에 관한 사복시의 계목

○ 사복시 계목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계본으로 인해서 감목관(監牧官) 체문(帖文)을 만들어 보내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감목관, 체문.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七日 辛未

○ 掌令尹行晉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7일(신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행진(尹行晉)의 계

○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八日 壬申

○ 持平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8일(임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긍연(李兢淵)의 계

○ 지평 이긍연(李兢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五年 庚子 十二月 二十九日 癸酉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4년(1780) 경자년 12월 29일(계유)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우진(李羽晉)의 계

○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1781年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五日 戊寅

○ 洪檢, 以義禁府言啓曰, 再明日擧動時, 各差備都事, 當爲備員, 全羅道濟州牧旌義縣罪人柱翼押去都事李鎭斗, 慶尙前右兵使洪和輔拿來都事閔修益. 竝令該曹, 口傳相換, 以爲分排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5일(무인)

□ 정의현(旌義縣) 죄인 홍주익(洪柱翼)의 압거(押去)에 관한 홍검(洪檢)의 계

○ 홍검(洪檢)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모레 거둥[擧動]할 때에, 각 차비도사(差備都事)는 마땅히 관원의 숫자를 채워야 하니,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죄인 홍주익(洪柱翼)을 압거(押去)할 도사로 이진두(李鎭斗), 경상전 우병사 홍화보(洪和輔)를, 나래(拿來)할 도사 민수익(閔修益) 등을 모두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상환하게 하고 써 분배할 뜻을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홍주익, 입거.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六日 己卯

○ 有政. 吏批, 判書李衍祥進, 參判未差, 參議李敬養進, 同副承旨鄭志儉進. 吏批啓曰, 濟州牧使今當差出, 而本州以海島劇邑,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他道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 以金魯鎭爲吏曹參判, …… 金著耉爲濟州牧使,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6일(기묘)

□ 김시구(金著耉)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제수하겠다는 이비의 계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연상(李衍祥)이 나아왔는데, 참판을 차정하지 않았다. 참의 이경양(李敬養)이 나아왔다. 동부승지 정지검(鄭志儉)이 나아왔다. 이비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지금 마땅히 차출해야 하나, 이 고을은 바다섬의 극히 먼 고을이어서 본래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택차(擇差)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의 수령은 모두 의망(擬望)[55]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김노진(金魯鎭)을 이조참판으로 참고, 〈중략〉 김시구(金著耉)를 제주목사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시구, 제주목사

55) 의망(擬望):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八日 辛巳

○ …… 持平李東稷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獻納尹在醇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幺麽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第十六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8일(신사)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이동직(李東稷)과 윤재순(尹在醇)의 계

○ 〈상략〉 지평 이동직(李東稷)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妖宦] 김수현(金壽賢)은 사리(私利)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와 체결(締結)하고 난만하게 화통(和通)한 실상은 거개가 명백하게 납초(納招)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국법이 지엄하여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

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헌납 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 환관)로서, 사대부와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끝내는 흉악한 도적[凶賊]의 근저(根抵)가 되고, 더구나 그는 몹시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나라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節]을 아직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여론은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윤범성.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九日 壬午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9일(임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九日 壬午

○ 獻納尹在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第九件第十二件事, 亟停勿煩.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9일(임오)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윤재순(尹在醇)의 계

○ 헌납 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9건과 제12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十四日 丁亥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14일(정해)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十五日 戊子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15일(무자)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十六日 己丑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府曰, 不允. 第五件六件事, 亟停勿煩.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16일(기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嵎)를 작처(酌處)한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게 하고, 그대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국청을 열고 엄하게 묻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수현, 성중, 대정현, 추자도, 조우,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一月 十六日 己丑

○ 司諫金和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第九件第十六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 정조 5년(1781) 신축년 1월 16일(기축)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죄인의 처단과 국청을 청하는 김화중(金和中)의 계

○ 사간 김화중(金和中)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대정현 정배죄인 성중(聖中)과 방축죄인 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제주목 감사정배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5건과 제6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성중, 윤범성.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日 癸丑

○ 辛丑二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朝講, 次對同爲入侍時, 領事李徽之, 特進官金熤, 知事徐浩修·洪檢, 參贊官金宇鎭, 掌令兪岳柱, 侍讀官柳孟養, 檢討官趙鼎鎭, 假注書趙興鎭, 記事官金載瓚·李集斗, 領議政徐命善, 開城留守鄭好仁, 禮曹判書金熤, 刑曹判書徐浩修, 行副司直徐有寧, 戶曹參判鄭民始, 行副司直蔡弘履, 同副承旨鄭志儉, 事變假注書沈達漢, 以次進伏訖. …… 命善曰, 此濟州牧使金永綏狀啓也, 以爲, 舊還停退, 新還準捧, 寺奴婢貢米, 每口各減一斗, 男丁大同米, 每口各減一升, 軍兵操鍊, 姑爲停退, 逃老病廢之類, 隨闕塡充, 待明春從附近哨司鍊等事, 所當稟旨, 恭俟指揮, 而候風往來, 動費屢朔, 故依近例先爲擧行爲辭矣. 此是守臣先擧行後啓聞者, 竝依此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命善曰, 濟州牧使金耆耇, 聞自驪州任所, 直還鄕舍, 姑無辭朝之意云, 其在事體, 誠極未安, 海外交符, 一時爲急, 各別催促下送,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上曰, 濟州牧使金耆耇, 催促辭朝.【出榻敎】…….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0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환곡에 관한 장계와 제주목사 김시구(金耆耇)의 사조(辭朝)에 관한 서명선(徐命善)의 계

○ 신축년 2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조강에 차대(次對)를 위해 함께 입시할 때, 영사 이휘지(李徽之), 특진관 김익(金熤), 지사 서호수(徐浩修)·홍검(洪檢), 참찬관 김우진(金宇鎭), 장령 유악주(兪岳柱), 시독관 유맹양(柳孟養), 검토관 조정진(趙鼎鎭),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집두(李集斗),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개성유수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金熤), 형조판서 서호수(徐浩修), 행부사직 서유녕(徐有寧), 호조참판 정민시(鄭民始), 행부사직 채홍리(蔡弘履), 동부승지 정지검(鄭志儉), 사변가주서 심달한(沈達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입니다. 구환(舊還)은 정퇴(停退)하고 신환(新還)은 준봉(準捧)하게 한 것으로, 시노비(寺奴婢)의 공미(貢米)는 매 구(口)에 1말을 줄여주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매 구에 1말을 줄여주고, 군병(軍兵)의 조련(操鍊)은 잠시 정퇴하고, 도망하고 늙고 병이 들고 피폐

한 부류는 궐한 것에 따라 곯아 모자라거나 빈 곳을 채워 메우고,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부근 초련(哨鍊)과 사련(司鍊)[56] 등의 일에 따라 당연히 품지하기를 공손히 지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풍(候風)하여 왕래(往來)하는 데에 여러 달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예에 따라 먼저 거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신(守臣)이 먼저 거행한 뒤에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으로 모두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서명선이 이뢰기를, "제주목사 김시구(金蓍考)가 여주(驪州) 임소에서 듣고서, 바로 향사(鄕舍)로 돌아와서 잠시 사조(辭朝)[57]하는 뜻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사체(事體)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미안한 일입니다. 바다 밖의 교부(交符)[58]는 한시라도 급한 것이니 각별하게 재촉하여 하송(下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 김시구는 사조할 것을 재촉하라."라고 하였다. 【탑교(榻敎)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구환, 신환, 사조, 김시구.

56) 초련(哨鍊): 초(哨)의 조련, 사련(司鍊)은 사(司)의 조련을 뜻함. 초는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하나로, 약 백 명으로 한 초를 이루었음. 사는 조선시대의 군대 편제의 하나로, 5초로 한 사를 이루었음. 나아가 5사로 한 부(部)를 이루었음.

57) 사조(辭朝): 외직으로 부임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하직하던 일.

58) 교부(交符): 지방 관원의 사무를 인수하고 인계하던 일.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三日 丙辰

○ 又以刑曹言啓曰, …… 罪人李命銓, 全羅道靈岩郡楸子島, 因本役爲奴, …… 傳曰, 知道, 首奴及庫子配亦收贖.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3일(병진)

□ 죄인 이명전(李命銓)을 추자도에서 노(奴)로 삼겠다는 형조의 계

○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죄인 이명전(李命銓)은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서 본역(本役)대로 노예로 삼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명전, 추자도.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九日 壬戌

○ 傳于徐有防曰, 濟州牧使留待.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9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을 머물러 대령하라는 전교

○ 임금이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머물러 대령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九日 壬戌

○ 傳于徐有防曰, 濟州牧使入侍.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9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입시하라는 전교

○ 임금이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입시(入侍)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입시.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九日 壬戌

○ 備忘記, 濟州牧使金著耉下直, 長弓一張·長箭一部·片箭一部·筒兒一箇, 賜給.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9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가 하직한다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가 하직(下直)하자, 장궁(長弓) 1장,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주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시구, 하직.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九日 壬戌

○ 徐有防啓曰, 濟州牧使金耆耉下直肅拜單子, 纔已捧入, 而辭朝命下之後, 過時遲滯, 今始入來, 事體未安,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9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耆耉)의 하직숙배(下直肅拜) 단자(單子)에 관한 서유방(徐有防)의 계

○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耆耉)의 하직숙배(下直肅拜) 단자(單子)가 겨우 이제 봉입(捧入)해서, 사조(辭朝)를 명하(命下)한 뒤에 시일을 넘겨 지체되었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들어왔습니다. 사체(事體)가 미안하여 추고하고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시구, 하직숙배, 단자.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十九日 壬戌

○ 辛丑二月十九日未時, 上御誠正閣. 濟州牧使入侍時, 濟州牧使金蓍耉, 右副承旨金宇鎭, 假注書趙衍德, 記事官徐龍輔·李集斗, 以次進伏訖. 上曰, 職姓名? 對曰, 濟州牧使金蓍耉矣. 上曰, 曾經幾邑乎? 蓍耉曰, 爲四邑矣. 上曰, 濟州, 本以海島劇邑, 素多弊瘼, 且王化未及之地. 爾其必盡撫摩之策, 以爲蘇殘之道, 可也. 蓍耉曰, 臣本無才能, 且乏政譽, 安知無孤負聖敎也? 惟當殫竭奉公矣. 命讀宣諭訖, 命退, 諸臣以次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19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蓍耉)의 입시에 관한 건

○ 신축년 2월 19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입시했을 때, 제주목사 김시구(金蓍耉), 우부승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직함과 성명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제주목사 김시구(金蓍耉)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증경(曾經)은 몇 개 고을에서 했는가?"라고 하였다. 김시구가 아뢰기를, "네 개 고을에서 했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본래 바다 섬으로 매우 먼 고을이어서 본래부터 폐막(弊瘼)이 많은데다가, 또한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땅이다. 너는 그곳에서 반드시 진무(撫摩)하는 책략을 다하여, 소잔(蘇殘)하는 도리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시구가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재능이 없는 데다가, 정예(政譽)가 부족합니다. 어찌 성상의 교화를 저버릴 수 없음을 알겠습니까? 오직 마땅히 봉공(奉公)을 모두 소진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선유(宣諭)하기를 마치자,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시구, 입시.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二十五日 戊辰

○ 徐有防, 以奉常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封進來三月令宗廟薦新靑橘來到, 臣進詣看品, 則元數二百七十箇內, 一百九十箇則擧皆腐傷色變, 而僅僅可用者, 只是八十箇. 今若全數退送, 則越海往來之際, 必不免闕封, 不得已以八十箇薦進, 而莫重薦獻物種, 不謹擇封, 有此腐傷, 以致減數薦進, 已萬萬驚駭, 而昨年三月令, 申飭之後, 少不知戢, 復踵前弊, 尤爲無嚴. 當該封進官前濟州牧使金永綬, 令該府拿問嚴處, 何如? 傳曰, 允. 封進官, 推考, 可也.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25일(무진)

□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3월령과 추고(推考)를 청하는 서유방(徐有防)의 계

○ 서유방이 봉상시 관원과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해 온 3월령(三月令) 종묘(宗廟) 천신(薦新) 청귤(靑橘)이 도착해서, 신이 진예(進詣)하여 간품(看品) 해보니, 원수 270개 안에서, 190개는 거개가 썩고 상하고 색이 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근근이 쓸 만한 것은 80개입니다. 지금 만약 전수(全數)를 퇴송(退送)하면, 바다를 건너고 가고 오게 되면 반드시 궐봉(不免)을 면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 80개를 천진(薦進)하고, 막중한 천헌물종(薦獻物種)을 조심하여 택봉(擇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썩고 상한 것이 있어서 천진(薦進)의 수를 줄게 한 것은 이미 만만으로 놀랄 만한 것입니다. 작년 3월령(三月令)을 신칙(申飭)한 이후에 조금도 삼가지 않고 다시 전처럼 법을 어기는 폐단이 있었으니, 더욱 무엄(無嚴)합니다. 마땅히 해당 봉진관(封進官)인, 전 제주목사 김영수(金永綬)를 사헌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진위를 묻게 하고 엄하게 처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봉진관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봉진, 3월령,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二月 二十五日 戊辰

○ 李坤, 以司饔院官員, 以監饌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二月令進上, 今日來到本院, 而開櫝看品, 則各殿所封物種中, 靑橘擧皆糜爛色變.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勿爲捧入.

❖ 정조 5년(1781) 신축년 2월 25일(무진)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2월령(二月令) 진상(進上)에 관한 이갑(李坤)의 계

○ 이갑(李坤)이 사옹원 관원과 감찬제조(監饌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2월령(二月令) 진상(進上)이 오늘 사옹원에 도착하여, 궤(櫝)를 열고서 간품(看品) 해보니, 각 전(各殿)에 봉진한 물종(物種) 가운데, 청귤(靑橘)은 거개가 문드려지고 색이 변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바다를 건너온 물종이라고 하더라도 막중한 진상을 관례에 따라 받들어 들이기에 매우 미안한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품지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봉진, 2월령, 진상.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三月 二十七日 庚子

○ 趙時偉,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金永綏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厩立養之意, 敢啓. 答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3월 27일(경자)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상래에 관한 조시위(趙時偉)의 계

○ 조시위(趙時偉)가 사복시 일이(一二)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말의 나이와 색깔은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내구(內厩)에서 입양(立養)할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三月 二十八日 辛丑

○ 辛丑三月二十八日, 兼春秋洪光一. 司僕寺啓目, 因濟州前牧使金永綏狀啓, 山馬監牧官新舊交替時, 馬匹欠縮, 前前監牧官金光燧, 今無可論是白遣, 前監牧官金光煐段, 亦旣遞職, 令本州嚴棍懲礪, 未傳掌馬, 逐匹代徵, 何如? 傳曰, 依回啓施行爲良如敎.

❖ 정조 5년(1781) 신축년 3월 28일(신축)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의 마필 흠축(欠縮)에 관한 홍광일(洪光一)의 계

○ 신축년 3월 28일에 겸춘추 홍광일(洪光一)이 아뢰기를, "사복시의 계목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장계에,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이 신구(新舊)로 교체할 때, 마필(馬匹)이 흠축(欠縮)하여, 전전 감목관(監牧官) 김광수(金光燧)는 지금 논할 수가 없사옵고, 전 감목관 김광혁(金光煐)은 또한 체직(遞職)하였으니, 이 고을로 하여금 엄히 곤장을 쳐서 징계 면려하고 전수하지 않은 말은 필수에 따라 대신 징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회계(回啓)에 따라 시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59]

△ 주제어: 김광수, 김광혁, 산마감목관, 김영수, 제주목사.

59)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1781) 신축년 3월 28일 기사에서 확인됨.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三月 二十八日 辛丑

○ 辛丑三月二十八日酉時, 上御誠正閣. 同副承旨入侍時, 同副承旨趙鼎鎭, 假注書趙興鎭, 記事官徐龍輔·鄭東浚,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敎曰, 該寺回啓, 雖以依回啓施行判下, 而近來牧守, 多不任職, 率多僨誤, 該牧使則觀於前後狀聞, 可知其勤幹, 又於臨歸之時, 有此修擧之事, 其在激勸之道, 不必膠守常例, 濟州前牧使金永綏, 兒馬一匹賜給. …….

❖ 정조 5년(1781) 신축년 3월 28일(신축)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를 서용하라는 전교

○ 신축년 3월 28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할 때에, 동부승지 조정진(趙鼎鎭), 가주서 조흥진(趙興鎭),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한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며 말하기를 "해당 시(寺)의 회계는 회계대로 시행하도록 판하(判下) 하였는데, 근래 목사(牧使)들이 대부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목사는 전후 장계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또 돌아갈 때를 맞이해서도 이렇게 (장계를) 수거(修擧)하는 일이 있었으니, 격려하여 권면하는 방도에 있어서 융통성 없이 상례(常例)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전 제주목사 김영수(金永綏)를 서용하고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라고 하였다.[60]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서용.

60)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1781) 신축년 3월 28일 기사에서 확인됨.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四月 六日 己酉

○ 又以刑曹言啓曰, 罪人安道煥, 全羅道靈岩郡楸子島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允. 依俄者筵敎, 新監司處, 自卿曹別關, 無得受由. 如是下敎之後, 若與筵敎有異, 地方官論罪事, 一體分付.

❖ 정조 5년(1781) 신축년 4월 6일(기유)

□ 죄인 안도환(安道煥)을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계

○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안도환(安道煥)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를 배소(配所)로 정하여 즉시 압송하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안도환, 추자도.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五月 三十日 壬寅

○ 辛丑五月三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兼吏曹判書洪樂性, 戶曹判書鄭尙淳, 兵曹判書李衍祥, 行副司直金煜, 刑曹判書李性源, 判尹金魯鎭, 禮曹判書鄭民始, 御營大將李昌運, 禁衛大將李敬懋, 行副司直蔡弘履, 行大司諫任希曾 ,持平李羽晉, 正言宋銓, 校理徐有成, 行左承旨李亨逵, 假注書趙衍德, 記事官金載瓚·李集斗以次進伏訖. …… 命善曰, 異國船漂到濟州事狀, 事當回咨, 而曾於甲戌年, 初無回咨之事, 依前置之, 載來小錢, 送于戶曹, 何如? 上曰, 從便爲之, 可也. …….

❖ 정조 5년(1781) 신축년 5월 30일(임인)

□ 이국선(異國船) 표도(漂到)에 관한 서명선(徐命善)의 계

○ 신축년 5월 3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기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겸이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행부사직 김익(金熤),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판윤 김노진(金魯鎭), 예조판서 정민시(鄭民始), 어영대장 이창운(李昌運), 금위대장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채홍리(蔡弘履), 행대사간 임희증(任希曾), 지평 이우진(李羽晉), 정언 송전(宋銓), 교리 서유성(徐有成), 행좌승지 이형규(李亨逵),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김재찬(金載瓚)·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국선(異國船)이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일의 실상에 대해서는 마땅히 회자(回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갑술년(甲戌年) 처음에 회자한 일이 없어서 전례에 따라 처치하였습니다. 재래(載來)한 소전(小錢)은 호조에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국선, 표도, 제주.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五日 丙戌

○ 傳于徐有防曰, 觀此濟州牧使狀聞, 罪人大燮, 假稱行商, 遍行島中, 締結商賈, 蹤跡閃倏云, 噫, 此天地不改, 則一部明義之書, 賴亦不泯, 而以大燮之至凶極惡, 戴頭假息, 已是失刑之大者, 今反跳踉至此, 蓋大燮之家住接者, 相範及興文·龍輝也. 伊時雖因誅死之甚多, 渠獲至今漏網, 而今日域中, 若有一分不絶之大義, 豈有是哉? 且聞種種闕點, 出入無常云爾, 則亦將嘯聚越海而莫之禁乎? 大燮從當下敎, 爲先今牧使具格牢囚, 以待處分, 該縣監事, 無異故失, 安置罪人之任其行止, 古所未聞之事, 此等罪犯, 豈可罷黜而止也? 亦令該府刻期拿來, 嚴囚東間後草記.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5일(병술)

□ 죄인 홍대섭(洪大燮)이 제주(濟州)에서의 죄범(罪犯)에 대해 초기(草記)하라는 전교

○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이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문(狀聞)을 살펴보건대, 죄인 홍대섭(洪大燮)이 행상(行商)한다고 가칭(假稱)하고는 두루 섬 안을 돌아다니면서 상고(商賈)들과 서로 사귀며 종적이 괴이하다고 한다. 아! 이 천지(天地)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1부(部)의 『명의록(明義錄)』도 또한 이를 힘입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지없이 흉악한 홍대섭이 목숨을 보전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만해도 이미 큰 실형(失刑)인 것인데, 이제 도리어 날뛰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개 홍대섭의 집에 주접(住接)했던 자들은 홍상범(洪相範)과 백흥양(白興陽)·박찬문(朴贊文)·김용택(金龍澤)·유봉휘(柳鳳輝)였는데, 그때는 주사(誅死)가 매우 많았었던 탓으로 그가 지금까지 법망에서 빠질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나라 안에 조금이나마 끊어지지 않은 대의(大義)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듣건대, 종종 점호(點號)에 빠지는가 하면 출입이 무상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또한 장차 그가 무리를 모아서 바다를 건너와도 금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홍대섭에 대해서는 이 뒤에 마땅히 하교가 있을 것이지만, 우선 목사로 하여금 격식을 갖추어 철저히 가두어 놓고서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해당 현감의 일은 고실과 다름이 없다. 안치(安置)한 죄인을 멋대로 돌아다니게 하였으니, 예전에도 이런 일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런 등등의 죄범(罪犯)에 대해 어떻게 파출(罷黜)만 하고 그만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해부(該府)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잡아다가 엄중히 동쪽

옥[東間]에 가두게 한 뒤에 초기(草記)하라."라고 하였다.[61]

△ 주제어: 홍대섭, 제주목사, 초기, 명의록.

61)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5일조 기사에서 확인됨.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五日 丙戌

○ 傳于徐有防曰, 旌義縣監, 卽令該曹口傳差出, 而毋論文武, 以剛明人各別擇擬, 當日辭朝.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5일(병술)

□ 정의현감(旌義縣監)을 구전(口傳)으로 차출하라는 전교

○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은 즉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차출(差出)하게 하는데, 문무(文武)를 논하지 말고, 강명(剛明)한 사람을 각별하게 택의(擇擬)하여, 당일에 사조(辭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五日 丙戌

○ 吏曹口傳政事, 旌義縣監任玉·姜聖鳳·卜台衡.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5일(병술)

□ 이조에서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천거함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를 하여,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임옥(任玉)과 강성봉(姜聖鳳), 복태형(卜台衡)를 천거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임옥, 강성봉, 복태형.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五日 丙戌

○ 辛丑六月十五日初更, 上御涵仁亭. 坐直承旨入侍時, 左副承旨徐有防,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文采五, 以次進伏訖. 上曰, 濟州狀啓, 承旨見之乎? 有防曰, 臣見狀辭, 不勝驚駭矣, 近來隄防不嚴, 以大燮之極逆, 假息島中, 已是失刑之大者, 今玆恣意行商, 有若平人, 非但有關後弊, 實有嘯聚跳踉之慮, 卽降處分, 宜矣. 上曰, 旌義縣監, 勿拘常格, 必以剛明人有履歷者, 卽以口傳差出事, 分付. …….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5일(병술)

□ 홍대섭(洪大燮)에 관한 제주목(濟州牧)의 장계와 정의현감(旌義縣監) 차출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6월 16일 초경(初更)에 임금이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갔다. 좌직 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문채오 (文采五) 등이 차례로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장계를 승지는 보았는가?"라고 하였다. 서유방이 아뢰기를, "신이 장계 내용을 보건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제방(隄防)이 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홍대섭(洪大燮)의 극역(極逆)은 섬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이미 형벌을 아주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멋대로 행상(行商)을 하게 한 것은 마치 죄없는 자처럼 처리한 것이니, 뒷날의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불어 모아서[嘯聚] 날뛰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즉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은 일상의 규식에 구애하지 말고 반드시 강명(剛明)한 사람으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즉시 구전(口傳)으로 차출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장계, 홍대섭, 정의현감.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吏曹口傳政事, 旌義縣監任玉望, 勿施.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임옥(任玉)의 천망에 관한 건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를 하여, 정의현감(旌義縣監) 임옥(任玉)의 천망을 시행하지 말라고 했다.

△ 주제어: 정의현감, 임옥, 천망.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吏曹口傳政事, 以李羽晉爲旌義縣監.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이우익(李羽晉)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를 하여, 이우익(李羽晉)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이우익, 정의현감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吏批, 判書洪樂性牌不進, 參判金夏材進, 參議趙時偉牌不進, 同副承旨金尙集進, 以李養鼎爲濟州牧使, 李亮載爲大靜縣監, 柳鎭淑爲濟州判官.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대정현감(大靜縣監), 제주판관(濟州判官) 임명에 관한 이비의 계

○ 이비(吏批)가 있었다. 판서 홍낙성(洪樂性) 나아갔다. 참판 김하재(金夏材)가 나아갔다. 참의 조시위(趙時偉)는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다. 동부승지 김상집(金尙集)은 나아갔다. 이양정(李養鼎)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이양재(李亮載)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고, 유진숙(柳鎭淑)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 주제어: 이양정, 제주목사, 이양재, 대정현감, 유진숙, 제주판관.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李敬養,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金永綏, 依下敎嚴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의 엄수(嚴囚)하겠다는 이경양(李敬養))의 계

○ 이경양(李敬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綏)를 하교에 따라 엄수(嚴囚)할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金文淳, 以義禁府言啓曰, 旌義縣監宋重鉉, 令該府, 刻期拿來, 嚴囚東間後, 草記事, 命下矣. 宋重鉉時在任所云, 卽爲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을 잡아 오겠다는 김문순(金文淳)의 계

○ 김문순(金文淳)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정의현감 송중현(宋重鉉)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잡아다가 동쪽 옥[東間]에 엄중히 가두게 한 뒤에 초기(草記)하게 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송중현은 지금 임소에 있다고 하니, 즉시 의금부의 나장을 발견보내어 교대한 뒤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송중현.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辛丑六月十六日辰時, 上御涵仁亭.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徐有防, 假注書趙興鎭, 編修官張顯慶, 記事官文采五, 以次進伏. 上曰, 旌義縣監望筒入來乎? 有防曰, 姑未入來矣. 上曰, 吏判事, 誠極怪訝, 夜下飭敎, 何等丁寧, 而乃以任玉擬入, 其可成說乎? 有防曰, 臣於昨夜, 見其擬望, 亦爲訝惑矣. 上命顯慶曰, 旌義縣監望, 如不各別擇擬, 則當以吏曹郎差送, 以此分付. 顯慶, 承命出回入. 上命顯慶曰, 汝往實錄廳, 今日仕進堂郎, 摘奸以來, 未印出者, 爲幾板, 及今日所印出爲幾板, 亦爲知來, 畢役後, 儀軌持來, 可也. 顯慶, 承命出. …….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정의현감(旌義縣監)의 망통(望筒)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6월 16일 진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조흥진),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문채오(文采五)가 차례로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망통(望筒)[62]이 들어왔는가?"라고 하였다. 서유방이 아뢰기를,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판(吏判)의 일은 참으로 매우 놀랍다. 밤에 내린 칙교(飭敎)가 얼마나 간절하였던가? 이에 임옥(任玉)을 의망(擬望)하여 들였으니, 그것이 말이나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서유방이 말하기를, "신은 지난 밤에 그 의망을 보고, 또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장현경에게 명하기를, "정의현감의 망(望)을 각별하게 가려 의망하지 않은 것이라면, 마땅히 이조 낭청을 차출하여 보내게 하도록 분부하라." 라고 하였다. 장현경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망통.

62) 망통(望筒): 후보자의 성명을 적어 넣은 통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六日 丁亥

○ 辛丑六月十六日酉時, 上御涵仁亭. 坐直承旨入侍時, 行右承旨李敬養, 同副承旨金尙集,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文采五, 以次進伏訖. 上曰, 藥防提調入侍. 賤臣承命出, 與鄭民始, 偕入進伏. 命尙集, 讀奏全羅監司狀啓. 上曰, 近來隄防, 雖曰不嚴, 寧有如許道理乎? 極用駭痛矣. 民始曰, 永綏之縱其永命, 交通逆妻, 論其負犯, 實難容貸, 且不能檢飭凶孽, 以致大燮之恣意行商, 此等牧守, 若不嚴懲, 有關後弊, 亟令該府, 拿問勘律, 宜矣. 命書傳敎曰, 觀此完伯狀啓, 事屬祕密, 雖不詳敎, 其中一件事, 不可不嚴覈得情, 干犯情節之至爲叵測, 渠以牧使, 旣管一島, 而行此胸臆, 如是現發之後, 尋常勘繩, 來頭之弊, 豈可勝言? 狀啓中, 此段要語謄下, 前牧使金永綏, 卽爲拿來嚴囚, 發問目嚴問取服, 捧草供以聞. …… 命書傳敎曰, 以今道伯狀啓觀之, 島中罪人事, 極屬驚駭, 而昨日牧使狀啓, 三罪人事, 不但全沒事實, 他罪人許多凶悖之事, 亦不登聞, 營校探察島中之際, 牧使, 豈有不知之理? 然則牧使之狀啓, 必出於要掩後時之罪, 妄生先發之計者也. 可罪不可賞, 賞典傳敎交周, 大體不職之責, 實所難免, 濟州牧使金蓍龜, 爲先拿問處之, 近來耽羅三邑守令之不擇, 莫有甚焉, 大靜縣監羅潤祿, 濟州判官黃鱗采, 竝遞付京職, 牧使有闕之代, 勿拘資格, 各別擇擬, 兩守令, 亦令拔例擇擬. …… 上曰, 當留城門, 爾等卽爲出去, 濟州牧使, 卽速拿來. 濟逵等, 承命而退. 上曰, 旌義縣監入侍. 賤臣承命出, 與李羽晉, 偕入進伏. 上曰, 本島自是重地, 惕念善爲也. 命羽晉先退. 命書榻敎曰, 新除授濟州牧使, 旌義縣監, 給馬發送. 上曰, 宣傳官一人召入. 賤臣承命出, 與李東晟, 偕入進伏. 上曰, 爾其往留城門, 拿來宣傳官都事, 卽爲出送, 待新除授濟州牧使旌義縣監出去, 仍閉以來. 東晟, 持標信退出. …… 上曰, 旣有飭敎, 則政望固當擇擬, 而以資淺年滿人擬入, 若不拔例註擬, 則當以銓官, 特除濟州牧使, 惕念擧行事, 分付銓官之侍下與否, 知來. 賊臣承命出, …….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6일(정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와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임명

○ 신축년 6월 16일 유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제방(隄防)이 비록 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을 수 있는가? 매우 해통(駭痛)한 일이로다."라고 하였다. 민시(民始)가 아뢰기를,

“김영수(金永綬)가 그 영명(永命)을 좇아서, 역의 아내[逆妻]와 교통(交通)하였으니,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실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리고 흉얼(凶孼)을 잘 검칙하지 못하여 홍대섭(洪大燮)이 멋대로 행상(行商)을 하게 하였으니, 이런 등등의 목사와 수령들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 폐단에 관계가 됩니다. 속히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율(律)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여 말하기를, “이 전라 감사의 장계를 살펴보건대, 일이 비밀스러운 데 속한 것이라서 비록 상세히 하교할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은 엄중히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다. 간사한 죄를 범한 정절(情節)이 그지없이 망측하다. 그가 목사로서 이미 한 도(島)를 관할하고 있으면서 이런 흉악한 마음을 부렸으니, 이렇게 현발(現發)된 뒤에 예사롭게 감단하여 다스린다면, 앞으로 닥칠 폐단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장계의 내용 가운데 이 단락의 중요한 말은 등서(謄書)하여 내리고, 전 목사 김영수는 즉시 잡아다가 엄중히 가두고 문목(問目)을 내어 엄중히 심문해서 자복을 받은 다음, 공초(供招)를 받아 아뢰라.”라고 하였다. 〈중략〉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여 말하기를, “도백(道伯)의 장계에 의거하여 살펴보건대, 도중(島中)에 있는 죄인들의 일이 매우 놀라운 데 속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제 목사의 장계에서는 세 사람의 죄인에 대한 사실을 모두 빠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인의 허다한 흉패스런 죄에 대해서도 또한 등문(登聞)하지 않았다. 영교(營校)가 섬 안을 탐문하면서 살피는 즈음 목사가 어찌 그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목사의 장계는 반드시 때에 뒤진 죄를 덮기 위해서 망령되이 먼저 고발할 계교를 품은 데서 나온 것일 것이니, 죄를 줄지언정 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상을 준다면 전교를 지워버려야 하니, 대체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蓍耉)를 우선 잡아다 처리하라. 근래 탐라(耽羅) 세 고을의 수령들을 잘 가리지 않는 것이 그지없이 극심하다. 대정현감(大靜縣監) 나윤록(羅潤祿), 제주판관 황인채(黃鱗采)는 모두 체직하여 경직(京職)에 붙이고, 목사의 대임(代任)은 자격(資格)에 구애받지 말고 각별히 가려서 의망(擬望)하라. 그리고 두 곳의 수령도 발탁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가려서 의망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성문(城門)에 머물면서, 너희들이 즉시 나가서 제주목사를 속히 잡아오라.”라고 하였다. 제목(濟達) 등이 왕명을 받들고서 물러났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현감은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왕명을 받들고 나가서, 더불어 이우진과 함께 들어와서 나아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섬은 본래부터 중요한 땅이니,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우진(羽晉)에게 명하여 먼저 나가게 했다. 탑교(榻敎)에 명하여 쓰게 하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 정의현감에게 말을 줘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전관 1인을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이동성(李東晟)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와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는 성문에 가서 머무르다가, 나래(拿來) 선전관(宣傳官) 도사(都事)를 즉시 내보내게 하라.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 정의현감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문을 닫고 오라.”라고 하였다. 동성(東晟)은 표신(標信)을 가지고 물어났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칙교(飭敎)가 있었다면 정망(政望)은 진실로 마땅히 택의(擇擬)하게 하는데, 자천(資淺)하면서 연만(年滿)한 사람을 의입(擬入)하게 하라. 만약 전에 없는 특별한 예로서 주의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전관(銓官)으로 하게 하라. 특별히 제수된 제주목사는 척념(惕念)하여 거행할 일을 전관에 분부하여 여부(與否)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정의현감, 김영수, 탐라, 대정현감, 제주판관,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七日 戊子

○ 吏曹口傳政事, 以李亨默爲濟州判官.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7일(무자)

□ 이형묵(李亨默),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를 하여, 이형묵(李亨默)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 주제어: 이형묵, 제주판관.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七日 戊子

○ 金尙集, 以左右捕盜廳言啓曰, 依下敎, 罪人李寬寶, 卽爲發捕矣, 所稱李寬寶, 本名光復, 寬寶則渠之別名, 而時在濟州地云. 故渠之同生兄李必復及同商人李萬樞等, 捉來取招, 草供捧入, 而李光復, 方在濟州牧云, 發捕一節, 何以爲之? 敢啓. …….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7일(무자)

□ 제주목(濟州牧)에 있는 죄인 이관보(李寬寶)의 발포(發捕)에 관한 김상집의 계

○ 김상집(金尙集)이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下敎)에 따라, 죄인 이관보(李寬寶)를 즉시 발포(發捕)하였습니다. 이른바 이관보라는 자는 본명(本名)이 광복(光復)입니다. 관보(寬寶)는 그의 별명(別名)인데, 현재 제주목(濟州牧)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의 친형인 이필복(李必復)과, 동상인(同商人) 이만추(李萬樞) 등을 붙잡아와서 취조하고 공초(草供)를 받들어 들였습니다. 이광복은 바야흐로 제주목에 있다고 하니, 한 절기에 발포(發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히 계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관보, 이광복, 발포.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七日 戊子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金薯耉, 爲先拿問處之事, 傳旨啓下矣. 金薯耉,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 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7일(무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薯耉)를 나문(拿問)하고자 잡아오겠다고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薯耉)를 우선 나문(拿問)하여 처치할 일로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김시구는 당시 임소에 있다고 하니, 전례에 따라 부의 서리를 발견(發遣)하여 교대하게 한 뒤에 잡아오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시구, 나문.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七日 戊子

○ 辛丑六月十七日酉時, 上御涵仁亭.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文采五, 以次進伏訖. 上曰, 濟州判官入侍. 賤臣承命出, 與李亨默偕入進伏. 上曰, 爾有履歷乎? 亨默曰, 曾經府使·營將矣. 上曰, 島中便是異域, 爾其着意善爲也. 命退. 上曰, 捕廳草供, 催促持來. 賤臣承命出, 持入. 命在學讀奏訖. 上曰, 供辭中所謂尹哥, 乙亥年, 本無出配濟州之事, 詳考徒流案, 更爲盤問, 而明値陳賀, 以再明詳覈以聞事, 分付. 賤臣承命出傳. …….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7일(무자)

□ 제주판관(濟州判官)이 입시(入侍)하여 임금을 알현함

○ 신축년 6월 17일 유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에, 우부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편수관(張顯慶), 기사관 문채오(文采五)가 차례로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가서, 이형묵(李亨默)과 더불어 함께 들어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이력(履歷)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형묵이 아뢰기를, "일찍이 부사(府使)·영장(營將)을 지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안은 문득 이역(異域)이어서, 너는 그것에 착의(着意)하여 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물러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청(捕廳)의 초공(草供)을 최촉(催促)하여 가져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가서, 가지고 들어오라."라고 하였다. 이재학에게 상주문을 읽으라고 명하고 끝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供辭) 가운데 윤가(尹哥)라고 했는데, 을해년(乙亥年)에는 본래 제주(濟州)에 출배(出配)한 일이 없는데, 도류안(徒流案)을 상고(詳考)해서, 다시 반문해보니, 내일 진하(陳賀)와 겹쳤으니, 모레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가서 전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이형묵.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九日 庚寅

○ 李在學啓曰, 濟州試才御史朴天衡, 明日下直云, 弘文提學李命植, 待開門牌招, 以爲試題書入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9일(경인)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박천형(朴天衡)의 하직함

○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박천형(朴天衡)은 내일 하직한다고 하니, 홍문제학(弘文提學) 이명식(李命植)은 내일 문이 열리자마자 패초(牌招)하여 시제(試題)를 글로 써서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박천형, 하직, 이명식.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九日 庚寅

○ 李敬養, 以備邊司言啓曰, 濟州巡撫試才按查御史齎去節目, 參考已行前例, 磨鍊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9일(경인)

□ 제주순무시재안사어사(濟州巡撫試才按查御史)의 재거절목(齎去節目)을 글로 써서 들이게 하는 것을 청하는 이경양(李敬養)의 계

○ 이경양(李敬養)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순무시재안사어사(濟州巡撫試才按查御史)의 재거절목(齎去節目)은 이미 행한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고 글로 써서 들이게 하는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시재안사어사, 재거절목.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九日 庚寅

○ 又以兵曹言啓曰, 濟州巡撫御史, 試才規矩單子, 依前例書入, 而事目則規矩落點啓下後, 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9일(경인)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의 시재규구단자(試才規矩單子)에 관한 병조의 계

○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의 시재규구단자(試才規矩單子)는 전례에 따라 글로 써서 들였습니다. 사목(事目)은 규구(規矩)에 따라 낙점(落點)하여 계하(啓下)한 뒤에 마련하여 들이게 하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시재규구단자.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十九日 庚寅

○ 李在學, 以兵曹言啓曰, 濟州巡撫御史, 齎去試才事目, 參考前例, 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19일(경인)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재거시재사목(齎去試才事目)에 관한 이재학의 계

○ 이재학(李在學)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재거시재사목(齎去試才事目)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고 들이게 하는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재거시재사목.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一日 壬辰

○ 趙時偉, 以左邊捕盜廳言啓曰, 本廳從事官柳鎭茂, 濟州御史朴天衡, 以軍官啓請矣. 本廳自是劇務衙門, 從事之任, 不可一日暫曠, 改差,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1일(임진)

□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을 군관(軍官)으로 계청하는 조시위(趙時偉)의 계

○ 조시위(趙時偉)가 좌변포도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 종사관 유진무(柳鎭茂)가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을 군관(軍官)으로 계청하였습니다. 본청은 본래 극무(劇務)를 담당하는 아문(衙門)으로, 종사관의 직임은 하루 잠시라고 비울 수 없어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군관.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一日 壬辰

○ 正言金寅燮疏曰, …… 且以目下濟州事言之, 罪人大燮, 以逆範之族屬爲輝文之接主, 行兇情節, 爛漫謀議, 則其貸一律, 大是失刑, 而今又出沒海島, 糾結商賈, 潛懷禍亂之圖, 顯有嘯聚之形, 則其爲駭憤, 容有其極? 日昨臺臣之疏陳, 筵啓相繼仰請者, 正是不易之論也. 金永綬之身爲牧伯, 眼蔑國法, 賊豎之恣意猖獗而不少禁戢, 逆婢之視爲至親而容易顧護者, 究厥心腸, 極爲兇慘, 揆以王法, 不可以尋常拿問而止. 臣謂亦允臺請, 罪人永綬, 設鞫嚴問得情, 斷不可已也. 省疏具悉. 已諭於三司之批矣.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1일(임진)

□ 제주(濟州) 죄인 홍대섭(洪大燮)의 일에 관한 김인섭(金寅燮)의 소(疏)

○ 정언 김인섭(金寅燮)이 소(疏)로 아뢰기를, "〈상략〉 또한 지금 제주(濟州)의 일을 말하자면, 죄인 홍대섭(洪大燮)은 역적 홍상범(洪相範)의 족속으로, 유봉휘(柳鳳輝)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흉악한 짓을 한 정절(情節)을 난만(爛漫)하게 모의했으니, 사형을 용서한 것은 대단히 크게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바다 섬에 출몰하여, 상인들과 결탁해 몰래 화란(禍亂)을 일으킬 생각을 품고 무리를 불러 모은 모습이 현저했으니, 그 놀랍고 분개스런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어제 대신(臺臣)의 소진(疏陳)이 있어, 연계(筵啓)를 서로 이어서 앙청(仰請)한 것은 바로 원칙적인 의견입니다. 김영수(金永綬)의 몸은 목백(牧伯)이 되어서도 나라의 법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역적이 마음대로 창궐(猖獗)하고 조금도 금집(禁戢)하지 못했습니다. 역비(逆婢)를 지친(至親)으로 보고서 쉽게 돌보아 준 것은 그 마음 속을 헤아려 보면, 매우 흉악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왕법(王法)으로 보아 심상하게 나문(拿問)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신은 또한 대간의 계청을 윤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인 김영수는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미 삼사(三司)에 하유하여 비답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홍대섭, 김영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六日 丁酉

○ 諭濟州三邑綸音, 傳于徐有防曰, 咨, 爾耽羅一島, 處于海外千里, 包貢橘柚, 有似乎夏后之楊州, 歲獻騂騮, 有似乎漢家之大宛. 玄牡而備犧牲, 榧實而供籩豆, 亦粤蠙珠·毛革·竹木·芝箭之屬, 可以資器用而需刀圭者, 指不勝摟. 厥民聚石爲垣, 編茅爲屋, 俗痴儉有禮讓, 少疾病多壽考, 抑海島之一都會也. 第其壤地嶢瘠, 惟麰麥豆粟生之, 經紀契活, 寄于木道, 吁, 亦危乎崎哉. 肆朝家特垂軫念, 視同內服, 凡所以尉撫之憫恤之者, 靡不用極, 而猗歟, 我先大王, 考圖按貢, 發政施仁, 告饑饉則船粟而往哺之, 獻方物則糇糧而資送之, 搜才詢瘼則輒遣衣繡之臣, 輕徭審刑則每飭佩符之官, 環一島幾萬生靈, 涵囿於柔遠之化者, 五十年所矣. 逮寡人御極以來, 迄無一惠一恩之覃及爾等, 田無荒歲, 縱荷天心之眷顧, 舟有漂流, 多愧海波之不揚, 又是逖矣滄溟, 隔截九重, 有疾苦而控訴無處, 抱才略而薦拔罔階, 予甚憐之. 噫, 貢獻之許多物種, 弊端必滋, 而孰肯爲爾等導達? 州縣之幾處衙門, 差役必繁, 而孰肯爲爾等蠲除? 生才實均於今古, 降衷無間於島陸, 圭竇之間, 豈無如高維·高兆基之俊彦, 而孰肯賓貢? 編戶之中, 豈無如金秤·鄭烈婦之孝節, 而孰肯褒揚? 元牧·山牧之蕃孳, 而能無害馬害民之政, 鮑人·船人之寧謐, 能無失業失所之嘆歟? 訟獄則剖決稱平, 而果無抱冤之類, 吏胥則誅求痛斷, 而果無被困之患歟? 似此民隱, 宛在目中, 每一南顧, 玉食靡甘. 噫, 無遠無邇, 皆予赤子, 今予爲爾等父母, 而未能盡父母之責, 中宵興惟, 寧不自恧? 玆命選部, 擇文武有資歷者, 易三邑四長吏, 俾新字牧之政, 又命前弘文館應敎朴天衡爲御史, 往布予心腹, 仍令設科試取, 此正有願必遂, 有才必用之會也. 咨爾大小軍民, 靜聽予申懇之喩, 克體予採訪之意, 無隱于予. 噫, 向來引鰒之特命減數, 雖不過九牛之毛, 或有一分半分之效, 而至於六苦役之革罷輪回, 各山場之創始橫築, 驅點軍之永除前規, 牛馬監之新定勸賞, 亦有比前斟酌之益否? 自餘係關于民瘼邑弊者, 事無巨細, 咸須奔訴于御史, 予其待登聞, 爲爾等裁處.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6일(정유)

□ 제주(濟州) 삼읍(三邑) 윤음(綸音)

○ 제주 세 고을에 윤음(綸音)을 유시하였다. 임금이 서유방에게 전교하기를, "아! 탐라(耽羅) 한 섬은 천리 바다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귤유(橘柚)를 공물(貢物)

로 바치는 것은 하(夏)나라 때의 양주(楊州)와 같고 해마다 화류(驊柚)를 바치는 것은 한(漢)나라 때 대완(大宛)에서와 같아서, 현모(玄牡)를 바쳐 희생(犧牲)에 대비하고 비실(篚實)로써 변두(邊豆)에 공봉(供奉)하였으며, 또한 빈주(蠙珠)·모혁(毛革)·죽목(竹木)·지전(芝箭) 등의 것으로 기용(器用)의 자료와 도규(刀圭)의 수요에 공급되는 것도 이루 헤일 수 없이 많다. 그곳의 백성들은 돌을 모아서 담장을 쌓고 띠풀을 엮어 집을 만들며,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양(禮讓)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질병(疾病)이 적어 수고(壽考)하는 이가 많으니, 또한 해도(海島) 가운데 하나의 도회(都會)이다. 그곳은 토지(土地)가 척박하여 모맥(麰麥)과 두속(豆粟) 만이 생산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 뱃길에 기탁하고 있으니, 아! 또한 위태롭고도 험난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특별히 진념(軫念)하여 내지(內地)의 백성들과 똑같이 사랑하였고, 무릇 위무(慰撫)하고 민휼(憫恤)하는 방도에 있어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 우리 선 대왕(先大王)께서는 지도(地圖)를 조사하고 공물(貢物)을 살펴 인정(仁政)을 시행하였으므로 흉년이 들면 배로 곡식을 운송해 먹여 주었고, 방물(方物)을 바치러 오면 식량을 주어서 보내었으며, 인재를 찾고 폐막(弊瘼)을 묻기 위해서는 번번이 암행 어사를 파견하였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형벌을 살피기 위해서는 매양 부임되어 가는 관원을 신칙하는 등 온 섬의 수많은 생령(生靈)들이 먼 곳 사람을 회유하는 정화(政化)에 흠씬 젖어온 지가 50년이 되었다. 과인(寡人)이 등극한 이래로 지금껏 한 가지 은혜도 그대들에게 크게 베푼 것이 없는 가운데, 전지(田地)에 흉년이 든 적이 없어 비록 천심(天心)이 돌보아 주는 혜택을 받았지만, 선박은 표류된 것이 있어 해파(海波)가 고르지 못한 것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 멀리 푸른 바다 가운데 있어 구중 궁궐과는 현격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공소(控訴)할 곳이 없고, 훌륭한 재략(才略)을 지니고 있어도 천발(薦拔)될 계제(階梯)가 없으므로, 내가 매우 안스럽게 여기고 있다. 아! 공물로 바치는 허다한 물종(物種)으로 인한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인데, 누가 그대들을 위하여 그런 사실을 알리려 하겠으며, 주현(州縣)의 여러 아문(衙門)에서 시키는 부역이 반드시 번거로울 터인데, 누가 그대들을 위하여 이를 견제(鐉除)하여 주려 하겠는가? 하늘이 인재를 낳은 것은 실로 고금(古今)이 똑같은 것이고, 하늘이 사람에게 양심(良心)을 준 것은 섬과 육지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마을이라도 어찌 고유(高維)·고조기(高兆基) 같은 준재(俊才)가 없겠는가마는 누가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려 하겠으며, 그곳 백성들 가운데 어찌 김평(金秤)·정씨(鄭氏) 열부(烈婦) 같은 효자와 절부가 없겠는가마는 누가 포양(褒揚)하려 하겠는가? 원목(元牧)과 산목(山牧)의 말

들을 번식시키는 데 있어 말을 해치거나 백성을 해치는 정사가 없으며, 포인(鮑人)과 선인(船人)이 편안한 삶을 누림에 있어 생업을 잃거나 거처를 잃는 탄식은 없는가? 옥송(獄訟)은 그 판결이 공평하여 과연 억울함을 품은 부류들이 없으며, 이서(吏胥)들은 가렴 주구를 엄격히 금단하여 과연 피곤하게 시달리는 걱정이 없는가? 이와 같은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완연히 떠올라 매양 남쪽을 바라볼 적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달갑지 않다. 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두가 나의 적자(赤子)인 것이요, 이제 나는 그대들의 부모인 것인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한밤중에 일어나 생각하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선부(選部)에 명하여 문신(文臣)·무신(武臣) 가운데 자급(資級)과 경력(經歷)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세 고을의 네 장리(長吏)를 바꾸어 앉혀 백성을 사랑하여 다스리는 정사를 새롭게 하게 하였다. 또 전 홍문관 응교 박천형(朴天衡)을 어사(御史)에 임명하여 가서 나의 속마음을 선포하고, 이어 과거(科擧)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게 하였으니, 이때가 바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재주가 있으면 반드시 쓰여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아! 그대 대소 군민(軍民)들은 내가 거듭 간곡히 내리는 하유(下諭)를 조용히 듣고 내가 채방(採訪)하려는 뜻을 잘 본받아서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아! 지난번 인복(引鰒)의 수효를 특명(特命)으로 감하게 한 것이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한 혜택이었지만, 혹 일푼 반푼이나마 효과가 있고, 여섯 가지 고역(苦役)의 윤회(輪回)를 혁파한 것과 각 산장(山場)의 횡축(橫築)을 창시(創始)한 것과 구점군(驅點軍)의 전규(前規)를 영구히 제거한 것과 우마감(牛馬監)의 권상(勸賞)을 새로 정한 것에 있어서도 또한 전에 견주어 헤아려 보면 유익한 점이 있는가? 그 나머지 민막(民瘼)과 읍폐(邑弊)에 관계된 것은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모름지기 어사에게 달려가서 호소하면 내 등문(登聞)되기를 기다려 그대들을 위하여 헤아려 처리하겠다."라고 하였다. 63)

△ 주제어: 제주, 삼읍, 윤음.

63) 이 내용은 ≪정조실록≫ 정조 5년(1781) 6월 26일 기사에도 확인되고 있음.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六日 丁酉

○ 辛丑六月二十六日卯時, 上御涵仁亭. 諸承旨與肅拜人員入侍時, 都承旨嚴璹, 左承旨徐有防, 右承旨李在學, 左副承旨金尙集, 右副承旨趙時偉, 假注書趙衍德·李敬行, 記事官文采五·李集斗, 以次進伏, …… 祥雲察訪張漢喆進伏, 上曰, 以濟州之人, 果能善爲矣. …….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6일(정유)

□ 상운찰방(祥雲察訪) 장한철(張漢喆)이 임금을 알현함

○ 신축년 6월 26일 묘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승지들과 숙배할 인원이 입시할 때 도승지 엄숙(嚴璹),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좌부승지 김상집(金尙集), 우부승지 조시위(趙時偉), 가주서 조연덕(趙衍德)·이경행(李敬行), 기사관 문채오(文采五)·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상운찰방(祥雲察訪) 장한철(張漢喆)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사람으로서 과히 잘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장한철, 상운찰방.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七日 戊戌

○ 獻納尹長烈疏曰, …… 雖以今番濟州事言之, 道啓嚴祕, 雖不得其詳, 取觀其朝紙所出, 則逆如大燮, 何等凶獰, 渠以範賊之至親, 興賊之主人, 陰謀祕計, 無不綢繆, 則當初安置之命, 未免失刑之歸, 而渠敢自同平人, 惟意跳踉, 締結商賈, 出沒島中, 究厥指意, 閃忽叵測, 其所以誑脅無知之愚氓, 慫慂同罪之逆孽, 嘯聚徒黨, 潛爲異圖之狀, 明若觀火, 由前由後, 不可一刻置之於覆載之間, 兪音尙靳於舊啓, 輿論益切於新憤. 臣謂濟州牧安置罪人大燮, 亟令王府, 拿來嚴囚, 待用刑設鞫得情, 快正王法. 斷不可已也. 至於永綏, 逆翰之妻, 謂之骨肉, 假托疾病, 饋遺絡續, 頻送褊裨, 俾伸同氣之情, 備給棺板, 殆同無故之人, 敢引收屍之語, 作爲容護之計. 噫嘻, 永綏亦人耳, 苟有毫分嚴畏之心, 一段秉彝之天, 豈忍爲此絶悖之擧乎? 若如渠言, 凡係收孥之類, 輒敍親屬之誼, 則大義滅親四字, 將無所施也歟? 牧使卽一島之長, 而逆屬顧恤若是容易, 大燮輩之少無忌憚, 恣行胸臆, 不但永綏之莫之禁戢, 特永綏有以啓之也, 論其罪犯, 豈止於渠之一身自陷大戮而已哉? 嚴問之命旣下, 設鞫之請方張, 意謂覈實取服, 明施當律, 自有其時矣. 今者特降備忘, 遽然酌處, 使渠生出獄門, 貸息邊遠, 天網之太恢, 王章之不行, 孰有大於此者乎? 此而置之, 則將見幾晦之義理, 漸弛之法紀, 日就於窳塞頹敗, 莫可收拾之境, 豈不大可憂且懼哉? 伏願殿下, 更加三思, 亟寢會寧府安置罪人永綏酌處之命, 仍令牢囚王府, 待用刑設鞫嚴覈, 依律處斷.亦不可已也云云. 答曰, 省疏具悉. 悉諭諸批, 爾其勿辭察職.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7일(무술)

□ 제주목(濟州牧) 안치죄인(安置罪人) 홍대섭(洪大燮)과 김영수(金永綏)의 일에 관한 윤장렬(尹長烈)의 소

○ 헌납 윤장렬(尹長烈)의 소(疏)로 아뢰기를, "〈상략〉 비록 이번 제주(濟州)의 일로써 말을 하자면, 도백(道伯)의 장계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비록 그 상세한 내용은 얻지 못하였더라도 조지(朝紙)에 난 것을 취해서 보니, 홍대섭(洪大燮)과 같은 역적은 하등(何等)의 흉녕(凶獰)이어서, 그가 역적 홍상범(洪相範)의 지친(至親)으로, 흥적(興賊)하게 하는 주인(主人)이 되어, 비밀스런 계책을 음모(陰謀)한 것이 치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마땅히 처음에 안치(安置)하라는 명은 실형(失刑)하게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히

스스로 여느 사람과 같이 마음대로 날뛰기를 하여 상인들과 결탁하고 섬 안에 출몰하였으니, 지의(指意)를 구궐(究厥)하고, 번쩍하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바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광협(誑脅)하였으니, 동죄(同罪)의 역얼(逆孼)을 종용(慫慂)하여, 도당(徒黨)을 불러모으고, 몰래 이도(異圖)하려는 실상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앞뒤가 같으니, 일각(一刻)이라도 하늘 아래에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유음(兪音)을 오히려 구계(舊啓)보다 아껴시니, 여론(輿論)이 새로운 통분보다 더욱 애절합니다. 신은 제주목(濟州牧) 안치죄인(安置罪人) 홍대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엄하게 가두고, 형벌을 사용할 때를 기다려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캐어 내어 왕법을 바로잡는 것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영수(金永綬)에 이르러서는, 역한(逆翰)의 처(妻)를 골육(骨肉)이라고 하며, 질병을 거짓 핑계하고서 물건을 잇따라 보내고 부장(副將)을 빈번히 보내었습니다. 하여금 동기(同氣)의 정을 펼치고, 관판(棺板)을 마련해 지급해주었습니다. 거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 감히 수시(收屍)의 말을 끌어들여서, 용서해 보호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아! 김영수도 사람인데, 구차하게 박분(亳分)하게 엄외(嚴畏)하는 마음이 있어, 일단(一段)의 병이(秉彝: 타고난 것)의 천성으로, 어찌 차마 이처럼 매우 패려스러운 거조를 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의 말대로라면 무릇 수노(收孥)[64]에 해당되는 부류들과 이어져서, 문득 친속지의(親屬之誼)로 서임하니, 대의멸친(大義滅親)[65] 네 자가 장차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인가? 목사(牧使)는 곧 한 섬의 장이어서, 역속(逆屬)이 고휼(顧恤)하였습니다. 만일 이처럼 용이하다면 홍대섭이 무리들이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이 제마음대로 할 짓을 다 했습니다. 비단 김영수를 금집(禁戢)할 수가 없을지라도 특별하게 김영수가 이 일을 열어 준 것이니, 그 죄를 논하건대 어찌 그의 한 몸에 그쳐서 자신만 큰 벌을 받게 하는 것에 그칠 수 있겠습니까? 엄문(嚴問)하라는 명을 이미 내려져서, 국청을 설치하하라는 요청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실을 가려 취복(取服)하여, 명백히 당률(當律)을 시행하는 것은 본래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비망(備忘)을 내려, 갑작스레 작처(妁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옥문에서 나와, 변원(邊遠)에서 이식을 얻게 하면, 천망(天網)이 크게 헐거워져서 왕법을 실행할 수 없으니,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습니까? 이를 그대로 덮어 둔다면 장차 거의 어두워져 가는 의리를 보게 될 것이고 점차 이완되는 법기(法

64) 수노(收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속(家屬)을 모두 연좌시키는 것.

65) 대의멸친(大義滅親): 대의를 위하여 골육(骨肉)의 사정을 끊는 일. 주나라 주공(周公)이 나라를 위하여 그 형제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죽였고, 위나라 석작(石碏)이 나라를 위하여 그 아들 석후(石厚)를 죽인 일이 있음.

紀)가 두새퇴패(鞋塞頹敗)로 일취(日就)할 것이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어찌 크게 우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시 세 번 생각하여 회령부(會寧府) 안치죄인 김영수를 작처(酌處)하라는 명을 빨리 거두어서, 그대로 왕부(王府)에 뇌수(牢囚)하게 하였다가, 형벌을 사용할 때를 기다려 국청(鞫廳)을 열어 엄핵(嚴覈)하게 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게 하는 것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운."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았다. 여러 비답에서 모두 말하였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안치죄인, 홍대섭, 김영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八日 己亥

○ 辛丑六月二十八日辰時, 上御涵仁亭.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戶曹判書鄭尙淳, 開城留守鄭好仁, 漢城判尹金煜, 刑曹判書金魯鎭, 禮曹判書鄭民始, 咸春君李昌運, 戶曹參判徐有隣, 行訓鍊都正李柱國, 行副司直李敬懋, 行副司直蔡弘履, 行大司諫洪秀輔, 掌令尹行晉, 校理徐有成, 右副承旨趙時偉, 假注書李敬行, 事變假注書姜彙鈺, 編修官張顯慶, 記事官文采五,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李哥罪人, 自捕廳發捕乎? 敬懋曰, 御史旣下去, 故姑未發捕矣. 上曰, 御史雖下去, 自捕廳發捕可也, 而能無中間失捕之慮乎? 敬懋曰, 發捕則渠焉敢不就捕乎? 自前捕校出使時, 例給二馬牌, 今番則, 何以爲之乎? 上曰, 自政院給馬牌下送, 而御史如已捉治, 待其結末, 捕校執捉以來, 爲宜矣. 昌運曰, 臣廳, 亦當一體擧行矣. 上曰, 捕廳治盜事, 果已究竟耶? 敬懋曰, 徒黨中, 在逃五漢, 姑未捉得, 故未得結末矣. 時偉曰, 掌令尹行晉, 登筵之際, 多有失措, 不可無警,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上曰, 李在學, 今日何不仕進乎? 時偉曰, 有實蟋云矣. 上曰, 右承旨李在學, 聞有實蟋云, 許遞. 上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8일(신해)

□ 제주(濟州) 이가(李哥) 죄인의 발포(發捕)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6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호조판서 정상순(鄭尙淳), 개성유수(開城留守) 정호인(鄭好仁), 한성판윤 김익(金煜),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예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 호조참판 서유린(徐有隣), 행훈련도정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채홍리(蔡弘履), 행대사간 홍수보(洪秀輔), 장령 윤행진(尹行晉), 교리 서유성(徐有成), 우부승지 조시위(趙時偉), 가주서 이경행(李敬行), 사변가주서 강휘옥(姜彙鈺),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문체오(文采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이가(李哥) 죄인은 포청에서 발포(發捕)했는가?"라고 하였다. 이경무가 아뢰기를, "어사가 이미 내려갔으므로 아직 발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비록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포청에서 발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능히 중간에 실포(失

捕)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이경무가 아뢰기를, “발포하면 그가 어찌 감히 취포(就捕)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에 포교(捕校)에서 출사했을 때는 전례에 따라 두 개의 마패(馬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원(政院)에서 마패를 내주고 내려 보내고, 어사가 착치(捉治)하면, 그 결말을 기다려서, 포교가 집착(執捉)하여 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창운이 아뢰기를, “신(臣)의 청(廳)도 마땅히 일체로 거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청이 치도(治盜)하는 일은 결말을 구핵했는가?”라고 하였다. 이경무가 아뢰기를, “도당(徒黨) 가운데, 도망 중인 오한(五漢)이 있는데, 잠시 착득(捉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말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시위가 아뢰기를, “장령 윤행진(尹行晉)이 경연에 올랐을 때 실착(失措)을 많이 해서, 경칙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이재학(李在學)은 오늘 어째서 사진(仕進)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조시위가 아뢰기를 “실로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우승지 이재학이 들으니, 병이 생겼다고 하니 체차를 허락하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 이가, 포청, 발포.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六月 二十九日 庚子

○ 以備忘記, 又傳于曰, 下送諭書, 到牧到縣日, 次次一件式, 面傳邑宰, 卽又聚會父老民人, 讀宣, 仍以音釋布告後, 詳問疾苦, 還朝日, 逐段登聞, 又若搜才恤獄等事, 一依筵敎及事目, 着意擧行, 年前六弊之革罷, 在予嗣服之初, 伊後果無更擾之弊乎? 一體審察. 此外諸件, 亦依筵敎爲之, 而最是按査一事, 得宜甚難, 體予前席之諭, 無或失之太嚴, 如以傷殺爲主, 法將安用? 前人之失, 在所當念, 而亦不可一分放忽處, 竝須參量事, 下諭于濟州御史處.

❖ 정조 5년(1781) 신축년 6월 29일(경자)

□ 제주어사(濟州御史)에게 하유하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로 또 전하기를, "내려보낸 유서(諭書)가 목이나 현에 도착하는 날에 차례로 1건씩을 면전에서 읍재(邑宰)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즉시 부로(父老)와 민인(民人)들을 불러 모아서, 읽어서 선양하게 하고, 그대로 음석(音釋)으로 포고한 뒤에 질고(疾苦)를 상문(詳問)하고 조정에 돌아오는 날에 사항에 따라 등문(登聞)하게 하라. 또 만약 수재(搜才)와 휼옥(恤獄) 등의 일은 한번에 연교(筵敎)와 사목(事目)에 따라, 착의(着意)하여 거행하게 하라. 연전(年前)에 6폐(六弊)를 혁파(革罷)했는데,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 다스리던 초기에도 있었다. 이후에 과연 어지럽히는 폐단이 없었는가? 일체를 심찰(審察)하라. 이외에 여러 건도 연교한 것에 따라 하라. 그리고 가장 안사(按査)할 일 하나는 마땅함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전석(前席)에서 유시했던 내용은 혹 너무 엄중한 잘못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살상을 주로 하게 되면 법을 어디에 적용하겠는가? 앞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유념해야 할 바이고, 일 푼이라도 방홀(放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모두 모름지기 참량(參量)할 일로 제주어사(濟州御史)에게 하유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비망기.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二日 壬寅

○ 以前濟州牧使金著耉, 封進馬擇捧間遷延事狀啓, 傳于趙時偉曰, 馬政, 奚但有國重事? 馬簿之愆期不修納, 此乃紀綱所在, 前亦有此等前例與否, 令該寺, 考例草記. 近年以來, 無論歲貢馬與遞任馬, 不玄黃則虺隤, 大率愈往愈甚, 騋牝之盛尙已, 闕額之數此多, 實是牧官輩, 不能事事之致. 爾於到牧後, 前後牧官, 一併各別嚴棍懲勵, 更觀來頭擧行, 復或如前, 不可不嚴刑遠配, 以此意嚴飭. 又其不善馴養, 不善蕃息之故, 爾必詳詢博探, 可以便宜釐正者, 到卽蘇革, 還朝後登聞事, 濟州御史處, 自本院, 下諭.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2일(임인)

□ 임금이 제주어사(濟州御史)에게 하유(下諭)하는 일에 관해 조시위(趙時偉)에게 전교함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의 봉진마(封進馬) 택봉(擇捧) 간천연사(間遷延事) 장계에 대해 조시위(趙時偉)에게 전교하기를, "마정(馬政)은 어찌 다만 국가의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마부(馬簿)를 연기(愆期)하여 수납(修納)하지 않은 것은 기강(紀綱)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전에도 이러한 전례들이 있었는지를 해시(該寺)로 하여금 전례를 참고하여 초기(草記)하게 하라. 근년 이래로 세공마(歲貢馬)와 체임마(遞任馬)를 논할 것 없이, 곳곳이 모두 병이 들지 않았으며, 대개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내빈(騋牝: 騋馬와 牝馬)이 성한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궐액(闕額)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로 이 목관(牧官) 무리들이 일마다 잘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너는 목(牧)에 도착한 뒤에 앞뒤의 목관을 한꺼번에 모두 각별하게 엄곤징려(嚴棍懲勵)하고, 다시 앞으로 올 것을 봐서 다시 혹 전과 같이 하고, 엄형(嚴刑)하고 원배(遠配)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뜻을 엄칙하게 하라. 또 훈양(馴養)을 잘하지 못한 것, 번식(蕃息)을 잘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너는 반드시 상순박탐(詳詢博探)하라. 편의(便宜)로 이정(釐正)할 수 있는 것은 도착하는 즉시 소혁(蘇革)하고, 도정에 돌아온 뒤에 등문(登聞)할 일을 제주어사에게 본원에서 하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제주목사, 김시구.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四日 甲辰

○ 李晉圭,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因濟州前牧使金著耉狀啓, 有馬簿之愆期不修納, 此乃紀綱所在, 前亦有此等前例與否, 令該寺, 考例草記之命矣. 溯考前例, 則昨年馬籍, 或於今年七月貢馬上來時, 因便修納, 又或有拖至八九月之例, 而今此狀內所論, 則與年例修納之馬籍有異, 代徵馬盡爲責立後, 禾毛色, 成冊修正上送, 乃是前例, 而前前牧使及前牧使, 皆以追後修送之意, 煩達於啓聞中, 欲爲遷就彌縫之計者, 事未前聞, 有關後弊, 其間委折及責立與否, 更令新牧使, 詳查馳啓, 以爲憑考稟處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4일(갑진)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의 마부(馬簿) 장계에 관한 이진규(李晉圭)의 계

○ 이진규(李晉圭)가 사복시 관원과 일이(一二)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의 장계에, 마부(馬簿)를 시기가 지나도 수납하지 않은 것은 기강에 있어서 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해시(該寺)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초기(草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전례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작년 마적(馬籍)이 혹 올해 7월 공마 올라왔을 때, 편의상 수납(修納)하고, 또 혹 8, 9월에 이른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장계 안에 대해 논한 바는 해마다 통상적으로 수납한 마적과 달라서, 대징(代徵)한 말을 다 책립(責立)한 뒤에, 화모색(禾毛色)을 성책하고 수정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러나 전전(前前) 목사와 전 목사 모두가 추후에 수송(修送)할 뜻으로 계문(啓聞) 안에 번달(煩達)하여, 지체하여 미봉(彌縫)하려고 한 계획은, 일에 있어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뒷날의 폐단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간의 위절(委折)과 책립(責立) 여부를 다시 새 목사로 하여금 상사(詳査)하여 치계(馳啓)하게 하고, 그것을 빙고(憑考)로 하여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김시구, 마부, 마적.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四日 甲辰

○ 又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二匹舡中故失, 四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一百九十四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4일(갑진)

□ 제주(濟州)에서 선운(先運) 출래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과 일이(一二)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선운(先運)으로 출래한 세공마(歲貢馬) 200필 안에, 2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4필은 금천(衿川)애서 병으로 남기고, 실제 납마(納馬)는 194필인데, 화모색(禾毛色)은 별단으로 서입(書入)하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세공마.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八日 戊申

○ 李晉圭,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 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山屯馬七十匹, 凶沓駑駘馬二十匹, 合一百五十八匹內, 二匹, 船中故失, 實納馬一百五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8일(무신)

□ 제주(濟州)에서 출래한 연례진상마에 관한 이진규(李晉圭)의 계

○ 이진규(李晉圭)가 사복시 관원과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래한 뒤에 운반한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산둔마 70필, 흉구노태마 30필을 합한 158필 안에, 2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여, 실제 납마(納馬)는 156필인데, 화모색(禾毛色)은 별단으로 서입하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삼명일 진상마, 산둔마, 흉구노태마, 별단.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八日 戊申

○ 李晉圭,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宋重鉉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8일(무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이진규(李晉圭)의 계

○ 이진규(李晉圭)가 사복시 관원과 일이(一二)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화모색(禾毛色)을 별단으로 서입하게 하여,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송중현,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八日 戊申

○ 辛丑七月初八日申時, 上御涵仁亭. 科次入侍時, 弘文提學李命植, 對讀官尹曖·趙城鎭, 直閣徐鼎修, 右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記事官趙錫晦·金鳳顯, 以次進伏訖. …… 有防曰, 實錄郎廳賞格帖, 當以院隷齎送于旌義·大靜兩邑, 而旣非印符, 則有難越海, 且有厨傳之弊, 姑令置之, 恐合宜矣. 上曰, 該縣監遞來後, 傳給, 可也.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8일(무신)

□ 정의(旌義)·대정(大靜) 현감에 대한 상격첩(賞格帖)에 관한 서유방(徐有防)의 계

○ 신축년 7월 초8일 신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과차(科次)하여 입시할 때 홍문제학 이명식(李命植), 대독관 윤확(尹曖)·조성진(趙城鎭), 직각 서정수(徐鼎修),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조석회(趙錫晦)·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실록 낭청의 상격(賞格)에 대한 첩(帖)은 마땅히 원예(院隷)가 정의(旌義)·대정(大靜) 두 고을에 재송(齎送)하게 하였으나, 이미 인부(印符)하지 않아서 바다를 건너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전(厨傳)의 폐단이 있어서 잠시 두게 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현감(縣監)이 체직 되어 온 뒤에 전급(傳給)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정의, 대정, 서유방, 상격첩.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九日 己酉

○ 辛丑七月初九日卯時, 上御涵仁亭.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戶曹判書鄭尙淳, 開城留守鄭好仁, 吏曹判書李衍祥, 行副司直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江華留守徐浩修, 刑曹判書金魯鎭, 御營大將李昌運, 戶曹參判徐有隣,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都正李敬懋, 行副司直蔡弘履, 行大司諫洪秀輔, 持平宋銓, 副校理尹曖, 左副承旨金宇鎭,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姜彙鈺,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命善曰, 此濟州前牧使金著耉狀啓也. 以爲山馬監牧官之任, 以獻馬人金萬鎰子孫中擇差, 而爲其後孫者, 不思報效之道, 其所用奸, 不一其端, 監牧之任, 若一任其族, 則山屯之馬, 將未免有名無實之歸, 而牧子輩, 亦無支保之勢, 此後則更爲定式, 監牧官鄕人中, 各別擇差. 不然則革罷監牧官, 付諸各其地方官, 一依元屯例, 擇定馬監, 使之看養事, 請令廟堂稟處矣. 金萬鎰子孫之世爲牧官, 其來已久, 到今猝然變通, 亦涉重難, 然果有許多弊端, 將至山馬無實牧子難支之境, 則渠輩落莫, 有不暇顧, 存罷當否, 令本州御史, 詳探事情, 出意見論啓後, 更爲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命善曰, 卽見濟州前牧使金著耉狀啓, 則以爲前山馬監牧官金光煐, 再昨年代徵馬分徵之際, 加徵白木, 復斂賻布於遭其母艱之時, 時監牧官金商皓, 欲爲加徵馬四十六匹於貧殘牧子處, 計雖不成, 心實無嚴, 兩人罪狀, 竝令該寺稟處矣. 渠輩不思朝家差任之德意, 視作家計, 貽弊牧場之習, 萬萬痛駭, 時監牧官金商皓, 爲先罷黜後, 從重決棍, 前監牧官金光煐, 旣已遞職, 罰無所施, 更加從重決棍, 以爲懲礪之地事, 分付濟州牧使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命善曰, 金永綏之負犯, 非比尋常罪囚, 其子何敢一刻晏然於字牧之任乎? 意謂罷狀, 不日來到, 今過一念, 尙無消息, 道臣事, 誠甚訝惑. 慶尙監司李文源從重推考, 咸陽府使金樂豐罷職, 其代, 令該曹口傳差出, 待下批, 卽令辭朝,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9일(기유)

□ 산마감목관 차정(差定)과 김광혁(金光煐), 김상호(金商皓)의 대징(代徵) 처리 건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7월 초9일 묘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호조판서 정상순(鄭尙淳),

개성유수 정호인(鄭好仁), 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행부사직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강화유수 서호수(徐浩修),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어영대장 이창운(李昌運), 호조참판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채홍리(蔡弘履), 행대사간 홍수보(洪秀輔), 지평 송전(宋銓), 부교리 윤확(尹矱), 좌부승지 김우진(金宇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강휘옥(姜彙鈺),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蓍耉)의 장계입니다.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임명하는 것으로, 헌마인(獻馬人) 김만일(金萬鎰)의 자손 가운데 택차(擇差)하였는데, 그 자손인 사람으로서, 보답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간사한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목(監牧)의 직임을 만약 그 족속에게 일임하면 산둔(山屯)의 말을 장차 유명 무실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牧子) 무리도 지보(支保)할 형세가 없게 됩니다. 이 후에 다시 정식(定式)으로 하여, 감목관은 향인(鄕人) 가운데 각별하게 택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목관을 혁파하여, 여러 각 지방관에게 붙여서 한결같이 원둔(元屯) 예(例)에 따라 마감(馬監)을 택정(擇定)하고 그로 하여금 간호(看養)하게 할 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처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김만일 자손에 목관을 세습하게 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변통(變通)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히 허다한 폐단이 있더라도 장차 산마가 무실(無實)하고 목자가 지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실망하는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존파(存罷)의 타당 여부는 본 고을 어사로 하여금 사정을 상탐(詳探)하게 해서, 나온 뜻으로 논계한 뒤에 다시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곧 전 제주목사 김시구의 장계를 보니, 전 산마감목관 김광혁(金光爀)이 재작년에 대징(代徵)한 말을 분징(分徵)할 때에, 흰 무명을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다시 그 어머니가 간난한 때를 당하여 부포(賻布)로 거두어 들일 때, 감목관 김상호(金商皓)가 빈천(貧賤)한 목자들에게 말 46필을 더 거두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마음 쓰는 것이 실로 무엄하니, 두 사람의 죄상을 모두 해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조가(朝家)에서 차임(差任)한 덕의(德意)를 생각하지 않고, 가계(家計)로 보고서 작란하니, 폐단이 목장의 습속으로 미쳤으니, 아주 놀랐습니다. 때에 감목관 김상호를 우선 파출(罷黜)하게 한 뒤에 종중(從重)에 따라 결곤(決棍)하게 하고, 전 감목관 김광혁은 이미 체직

(遞職)했으니, 처벌을 베풀 데가 없으니 다시 종중에 따라 결곤하게 하고, 징력(懲礪)하게 할 일로 제주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김영수(金永綬)가 범한 것은 심상한 죄수에 비할 바가 아니니, 그 아들을 어찌 감히 일각이라도 자목(字牧)[66]의 직임을 안연(晏然)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뜻으로야 파직하라는 장계를 내려야 하지만, 내일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지금 잘못하는, 한 생각은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도신(道臣)의 일은 참으로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경상감사 이문원(李文源)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게 하고, 함양부사 김낙풍(金樂豐)을 파직하고 그 대신은 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차출하게 하고, 하비(下批)를 기다려서, 즉시 사조(辭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김시구, 산마감목관, 김만일, 김광혁, 김상호, 김영수, 감목관.

66) 자목(字牧): 원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힘을 길러 줌.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十二日 壬子

○ 大司諫趙瑍疏曰, …… 以今番濟州事言之, 罪人大燮, 卽範逆之至親, 興賊之主人. 論其負犯, 宜置重辟, 而當初安置之命, 雖出好生之德, 其爲刑政之失大矣. 渠乃締結商賈, 出沒海島, 恣意跳踉, 行跡叵測, 潛聚逆孽, 謀爲陰圖, 可以揣知, 豈不凜然? 噫, 彼永綏, 以逆翰之妻, 謂之至親, 相與往來, 厚加饋遺, 率去逆婢之同氣, 至有板材之備給, 少無嚴畏之心, 敢爲顧護之計者, 究厥情跡, 萬萬痛惡. 遽然酌處, 實是天綱之太恢, 關係旣重, 罪犯難貸, 此不嚴誅, 將至於國不國而臣不臣矣. 臣謂大燮·永綏, 亟令王府, 拿來嚴囚, 以待繡衣之按査, 設鞫究覈, 依律嚴處, 斷不可已也. 省疏具悉. 所陳, 業已悉諭, 爾其勿辭察職.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12일(임자)

□ 죄인 홍대섭(洪大燮)과 김영수(金永綏)의 처단을 청하는 조환(趙瑍)의 상소

○ 대사간 조환(趙瑍)이 상소하기를, "〈상략〉 또한 이번 제주(濟州)의 일로 말씀드리자면, 죄인 홍대섭(洪大燮)의 일은 즉시 홍상범(洪相範)의 지친(至親)과 흥적(興賊)의 주인(主人)이니, 그가 범한 죄를 따져서 마땅히 중벽(重辟)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안치(安置)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형정(刑政)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저놈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바다섬에 출몰하여, 마음대로 날뛰었습니다. 행적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역얼(逆孽)을 모아서, 모의하여 음도(陰圖)한 것을 헤아려 알 수 있으니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 저 김영수는 역한(逆翰)의 처를 지친(至親)이라고 이르면서, 서로 더불어 왕래(往來)하고 두터이 더욱 궤유(饋遺)하고, 역비(逆婢)의 동기(同氣)를 거느리고 가서, 판재(板材)를 비급(備給)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엄히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히 고호(顧護)하려고 계획한 자의 정적(情跡)를 따져보면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갑작스레 작처(妁處)한 것은 실로 하늘에서 악인(惡人)을 잡는 그물이 매우 넓어서, 관계가 이미 중대하여 죄범(罪犯)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엄주(嚴誅)할 수 없어서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신(臣)은 홍대섭과 김영수를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엄수(嚴囚)하게 하고, 수의(繡衣)의 안사(按査)를 기다려서, 설국(設鞫)하여 구핵(究覈)하게 하고, 율에 따라 엄처(嚴處)하는 결단에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를 자세히 보았다. 아뢴 것은 이미 다 하유하였다. 너는 사직하지 말고 일을 보살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홍대섭, 김영수, 조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二十日 庚申

○ 大司憲金文淳疏曰, …… 至於耽羅事, 亦可謂駭惋矣. 唯彼大燮, 以逆範之至親, 作賊輝之主人, 前後凶計, 爛漫綢繆, 而尙此假息於覆載之間者, 揆以國法, 已不成說, 而渠反自同於平人出沒市場, 交結販商, 行止詭祕, 肆然闕點, 則其誘脅島氓, 陰圖罔測之狀, 昭不可掩, 而永綏則身爲一島之長, 不惟不能禁戢此輩, 乃敢身親犯之, 以載翰妻, 謂之至親, 而送裨來往, 厚加餽恤, 棺板木綿, 無不備給. 如此忘君負國之徒, 若不窮覈置法, 將何以勵遠俗而杜亂萌乎? 大燮·永綏之設鞫嚴囚, 以待用刑, 亦不容少忽, 而大燮之論啓, 尙今靳許, 永綏之酌處, 遽下不意, 此豈不大可憂鬱者乎? …… 答曰, 省疏具悉. 已處分矣.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20일(경신)

□ 탐라(耽羅)의 죄인 홍대섭(洪大燮)과 김영수(金永綏)의 처단을 청하는 김문순(金文淳)의 상소

○ 대사헌 김문순(金文淳)이 상소하기를, "〈상략〉 탐라(耽羅)의 일에 이르러서도 참으로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저 홍대섭(洪大燮)은 홍상범(洪相範)의 지친(至親)으로서, 적휘(賊輝)의 주인을 일컸으니, 앞뒤의 흉계(凶計)가 난만하게 주무(綢繆)하였는데, 아직도 하늘과 땅 사이에 살려 두신 것은 국법으로 헤아려 보건대 이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놈은 도리어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시장에 출몰하여, 상인들과 결탁하고, 행동이 수상하고, 사연(肆然)히 궐점(闕點)하였습니다. 그 도맹(島氓)을 유협(誘脅)하여, 음도(陰圖)하려는 망측(罔測)한 실상은 분명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수는 자신이 한 섬[一島]의 우두머리로서, 이 무리들을 잘 금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몸소 이를 범하였으니 한처(翰妻)를 실어서 지친(至親)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장(裨將)을 보내 왕래(來往)하고, 후하게 궤휼(饋恤)하고, 관판(棺板)과 무명[木綿]은 비급(備給)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무리들에게 만약 궁핵(窮覈)하여 치법(置法)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원속(遠俗)을 장려하고 난(亂)의 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홍대섭·김영수는 국청을 열어 엄수(嚴囚)하게 하고, 용형(用刑)할 때를 기다려는 것에도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대섭의 논계(論啓)는 아직까지도 허락하시지 않았고, 김영수의 작처(酌處)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렸으니,

이 어찌 크게 걱정하고 울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를 보고 다 알았다. 이미 처분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홍대섭, 김영수, 김문순.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七月 二十四日 甲子

○ 掌令申致權疏曰, …… 惟彼耽羅一島, 卽凶孼淵藪, 而諸罪人之陰慘情迹, 道啓嚴祕, 雖不得其詳, 至於大燮, 何等凶逆, 而尙今假息, 跳踉闕點, 往來行商, 不待繡啓, 而罪已彰露. 且罪人永綏, 寬暇凶賊, 顧恤逆婢之罪, 前後供辭, 渠旣自服焉. 敢逭護逆之律, 而酌處遽下, 止於島配, 俱是失刑之大者, 臣謂大燮·永綏, 自王府拿來嚴囚, 以待用刑之日, 設鞫得情, 快正王法. 宜矣. …… 答曰, 省疏具悉. …… 至又不緊二字還收之請, 終不知其爲緊, 不允. 爾其勿辭察職.

❖ 정조 5년(1781) 신축년 7월 24일(갑자)

□ 탐라 홍대섭(洪大燮)과 김영수(金永綏)의 처단을 청하는 신치권(申致權)의 상소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상소하기를, "〈상략〉 저 탐라(耽羅) 한 섬의 일을 생각하건대, 곧 흉얼(凶孼)이 모여드는 곳이니, 여러 죄인의 음흉하고 참혹한 정황은 도계(道啓)가 엄밀하고 비밀스러워, 비록 그 자세한 것을 알아내지는 못했을지라도 홍대섭(洪大燮)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흉악한 역적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고 제멋대로 궐점(闕點)하여, 행상(行商)으로 왕래하였으니 숙계(繡啓: 어사의 서계)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죄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죄인 김영수(金永綏)는 흉적(凶賊)에게 너그러이 여가를 주고, 역비(逆婢)에게 고휼(顧恤)한 죄는 앞뒤의 공사(供辭)로, 저놈이 이미 자복(自服)하였습니다. 감히 역적을 비호하는 형률을 피하였는데 참작하여 처분하라는 명을 갑자기 내렸으나 도배(島配)에 그쳤으니, 모두 형벌을 크게 잘못 적용한 큰 죄에 해당합니다. 신은 홍대섭과 김영수를 왕부(王府)에서 잡아다 엄수(嚴囚)하게 하고, 용형(用刑)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설국(設鞫)하여 득정(得情)하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 잡을 것을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를 보고 다 알았다. 〈중략〉 또한 긴요하지 않은 두 자 환수(還收)하라는 청에 이르러서는 끝내 긴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윤허하지 않는다. 너는 사직하지 말고 일을 보살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홍대섭, 김영수, 신치권.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八月 十二日 辛巳[壬午]

○ 洪明浩, 以義禁府言啓曰, 旌義前縣監宋重鉉, 令該府刻期拿來, 嚴囚東間事, 傳旨, 前已啓下矣. 宋重鉉今方拿來, 着枷杻足鎖, 嚴囚東間之意, 敢啓. 傳曰, 待明朝所當嚴問捧供, 而係是具格式囚東間之重囚, 判堂開坐然後, 發問目擧行, 自是前例, 判義禁蔡濟恭, 各別催促上來, 事屬懲討, 尤不可一刻遲滯, 上來與否知入.

❖ 정조 5년(1781) 신축년 8월 12일(신사[임오])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의 나래(拿來)와 처단을 청하는 홍명호(洪明浩)의 계

○ 홍명호(洪明浩)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기일을 엄수하여 나래(拿來)하게 하고, 동간(東間)에 엄수(嚴囚)하게 할 일의 전지(傳旨)를 전에 이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송중현을 방금 나래(拿來)하여, 목에 칼을 씌우고 손을 묶고 발에 쇠사슬을 채울 것 동간(東間)에 엄수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아침을 기다려 마땅히 엄문(嚴問)하여 봉공(捧供)하라. 이것은 격식을 갖추어 동간(東間)에 엄히 가두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다. 판서가 개좌(開坐)한 뒤에 문목(問目)을 내어 거행하고, 이것을 전례에 따라 판의금 채제공(蔡濟恭)이 각별하게 재촉하여 징토(懲討)하는 일은 더욱 일각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니, 올라왔는지의 여부를 알아서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송중현, 홍명호.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八月 十二日 辛巳[壬午]

○ 又以左右捕盜廳言啓曰, 濟州罪人李光復, 今日捉來, 嚴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待明朝合坐嚴問取招, 次對時, 持草供入侍.

❖ 정조 5년(1781) 신축년 8월 12일(신사[임오])

□ 제주(濟州) 죄인 이광복(李光復)의 엄수(嚴囚)을 청하는 좌우포도청의 계

○ 또한 좌우포도청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죄인 이광복(李光復)을 오늘 붙잡아와서 엄수(嚴囚)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내일 아침 압좌(合坐)하여 엄문(嚴問)하고 추최(取招)한 것을 기다렸다가, 차대(次對) 때 공초(草供)를 가지고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광복.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八月 十三日 癸未

○ 辛丑八月十三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開城留守鄭好仁, 吏曹判書李衍祥, 漢城判尹金煜, 行副司直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戶曹判書鄭民始,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大司憲李坤, 校理李宗燮, 獻納金翊休, 右副承旨徐鼎修, 假注書李祖承, 事變假注書李萬榮, 記事官金鳳顯, 別兼春秋林錫喆, 纂輯堂上刑曹判書金魯鎭, 戶曹參判徐有隣, 兵曹參判鄭昌聖, 漢城右尹洪良浩, 大司成閔鍾顯, 副司直李秉模, 以次進伏訖. …… 命善曰, 三更後, 臣始見之矣. 上曰, 近來政院擧行, 何乃若是其慢忽耶? 至於昨日濟州事, 有所書啓, 而亦以還渡江書之, 海與江, 不能分別, 而有此誤書, 至有惶恐待罪之擧, 此果成說乎? 命善曰, 如李在學者, 可謂純熟, 而何以至此乎? 上曰, 昨日坐直, 則是洪明浩, 然李在學·徐有防, 老於政院之人, 而漸不如初, 每事反爲生疎, 誠可怪也. …….

❖ 정조 5년(1781) 신축년 8월 13일(계미)

□ 제주(濟州)의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8월 1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개성유수 정호인(鄭好仁), 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한성판윤 김익(金熤), 행부사직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호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대사헌 이갑(李坤), 교리 이종섭(李宗燮), 헌납 김익휴(金翊休), 우부승지 서정수(徐鼎修), 가주서 이조승(李祖承), 사변가주서 이만영(李萬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임석철(林錫喆), 찬집 당상관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호조참판 서유린(徐有隣), 병조참판 정창성(鄭昌聖), 한성우윤 홍양호(洪良浩), 대사성 민종현(閔鍾顯), 부사직 이병모(李秉模)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삼경(三更) 뒤에, 신(臣)이 비로소 그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승정원에서 거행한 것은 어째서 이와 같이 태만하고 소홀할 수 있는가? 어제 제주(濟州)의 일에 이르러서는, 서계(書啓)가 있는데 또한 강을 건너도 강을 건너서 썼고, 바다와 강을 능히 분별하지 못하여 이 오서(誤書)가 있으니, 황공스럽게도 대죄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만일 이재학(李在學)이란 자가 아주 숙련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좌직(坐直)한 사람은 홍명호(洪明浩)이다. 그러나 이재학(李在學)·서유방(徐有防)은 정원(政院)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서 점차 처음만 못해져서, 매사에 있어서 도리어 생소(生疎)하니, 참으로 이상하였다."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서계, 이재학, 홍명호, 서유방.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八月 十六日 丙戌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金耆耉, 拿囚之意, 敢啓. 傳曰, 捧供以聞.

❖ 정조 5년(1781) 신축년 8월 16일(병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耆耉)의 나수(拿囚)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또한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耆耉)를 나수(拿囚)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초를 받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시구, 나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八月 十七日 丙戌[丁亥]

○ 禁府啓目, 濟州前牧使金著耉原情云云, 傳旨問目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 勿爲請, 旣有先朝受敎, 上裁何如, 判付啓. 營校之探得, 卽其矣所指揮之事, 而仍令錄告道臣是如爲有則, 與當初所料, 頗甚逕庭舍除良, 比之旌義之倅所爲, 不啻相反, 而狀聞之不能別白, 雖由於審量, 而然不可全然白放, 罷職放送爲旀, 向日拿處傳敎中, 要掩後時之罪, 妄生先發之計, 此二句到今不無非其情之歎, 原傳旨中抹去爲良如敎.

❖ 정조 5년(1781) 신축년 8월 17일(병술[정해])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의 원정(原情)과 처단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 계목(啓目)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著耉)가 원정(原情) 운운했는데, 전지(傳旨)의 문목(問目) 안의 사연을 보면, 범범하게 지만(遲晩)했다고 하니, 마땅히 형추할 것을 청하오되,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내면 청하지 못한다고 이미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있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재단(裁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여 판부(判付)가 아뢰었습니다. 영교(營校)가 심득(探得)하니, 저놈이 지휘(指揮)한 바의 일이어서, 그대로 도신(道臣)에게 녹보(令錄告)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초에 소료(所料)한 것과 더불어 자못 매우 차이[逕庭]가 있을뿐더러 정의(旌義)의 읍쉬(邑倅)가 한 바와 비교해보더라도 서로 어긋한 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문(狀聞)에 명백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심량(審量)한 것에 말미암더라도 전연 백방(白放)할 수가 없어서, 파직(罷職)하여 방송(放送)하였으며, 앞으로 나처(拿處)하라는 전교(傳敎) 안에, 때에 뒤진 죄를 덮기 위해서 망령되이 먼저 고발할 계교를 품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도리어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원래의 전지(傳旨)에 말거(抹去)하라고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시구, 원정, 정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八月 十八日 戊子

○ 禁府啓目, 旌義前縣監宋重鉉原情云云, 傳旨問目內辭緣, 嚴加施威, 多般詰問是白乎矣, 全事發明, 終不直告, 論其罪狀, 萬萬痛惡, 平問之下, 難以取服, 刑推得情何如? 判付啓. 國無法, 久矣, 此等邑倅, 若不別樣嚴繩, 逆擘凶徒之暗地嘯聚, 將至莫敢誰何之境是如乎, 其矣所供, 甚爲沒實, 大燮之不知去處, 經歲捕捉等事, 其矣所犯, 死有餘辜, 更良施威嚴問取服爲良如敎.

❖ 정조 5년(1781) 신축년 8월 18일(무자)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의 원정(原情)과 처단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 계목(啓目)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의 원정(原情) 운운하였습니다. 전지(傳旨)의 문목(問目) 안 사연에, 엄히 시위(施威)를 더하여 다반(多般)으로 힐문(詰問)하사오되, 모든 일의 발명(發明)을 끝내 직고(直告)하지 않아서, 그 죄상(罪狀)을 논한 것이 참으로 통악(痛惡)합니다. '평문(平問)을 하면 승복(承服)을 받기가 어려울 것인데, 마땅히 형벌로 문초하여 정상을 밝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여 판부(判付)가 아뢰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 오래되었다고 하나, 이들 읍쉬(邑倅)를, 만약 각별한 양으로 엄승(嚴繩)하지 않으면, 역얼(逆孼)과 흉도(凶徒)들이 암지(暗地)에서 소취(嘯聚)하여 장차 감히 힐문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온데, 그의 소공(所供)이 매우 부실하였다. 홍대섭(洪大燮)이 간 곳이 어디인지 몰랐다가 한 해가 지나서야 체포했다고 한 것 등의 일은, 그의 소범(所犯)이 죽어서도 죄가 남을 것이어서, 다시 시위(施威)하여 엄문(嚴問)하고 취복(取服)하여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송중현, 원정, 홍대섭.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九月 十一日 庚戌

○ 辛丑九月十一日酉時, 上御誠正閣. 坐直承旨入侍時, 右承旨徐有防, 同副承旨徐鼎修, 記事官趙興鎭, 別兼春秋徐龍輔·鄭東浚, 以次進伏訖. 上命分讀濟州牧使及御史狀啓, 有防·鼎修讀奏. 上曰, 以狀啓觀之, 則所謂李光福, 多有可問之端, 而大燮之必欲越海情節, 亦綻露無餘矣. 有防等曰, 聖敎至當矣. 大燮之特假一縷, 寔出於我聖上好生之德意, 而渠敢放恣跳踉, 至以圖得百金, 則可以越海等說, 與光福·潤德, 爛漫酬酢者, 誠萬萬凶獰矣. 上曰, 大燮所謂膂力足當六七人之說, 尤極絶悖矣.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9월 11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와 어사(御史)의 장계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9월 11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좌직승지가 입시한 자리에,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조흥진(趙興鎭), 별겸춘추 서용보(徐龍輔)·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제주목사(濟州牧使)와 어사(御史)의 장계를 나누어 읽으라고 하자, 서유방·서정수가 읽어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계를 보니, 소위 이광복(李光福)은 심문할 만한 단서가 많았다. 그리고 홍대섭(洪大燮)이 반드시 바다를 넘으려고 했던 정절(情節)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한다."하고 하였다. 서유방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홍대섭을 특별히 실날같은 목숨을 살려 준 것은 실로 우리 성상께서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그가 감히 방자하게 날뛰면서 백금(百金)을 얻기를 도모함에 이르렀으니,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이광복·박윤덕(朴潤德)을 난만하게 수작(酬酢)한 것은 참으로 매우 흉녕(凶獰)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대섭은 소위 여력(膂力)으로 넉넉하게 6, 7인의 말로 감당할 것이니, 더욱 매우 도리에 어그러집니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목사, 어사, 이광복, 홍대섭.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九月 十二日 辛亥

○ 辛丑九月十二日午時, 上詣摛文院. 齋宿入侍時, 行都承旨嚴璹, 左承旨徐有防, 右承旨金尙集, 左副承旨趙時偉, 右副承旨金宇鎭, 同副承旨徐鼎修, 記事官趙興鎭, 假注書趙衍德, 記事官金鳳顯, 別兼春秋林錫喆, 以次隨駕. 上具翼善冠·衮龍袍, 乘輿出協陽門, 下敎曰, 右副承旨先入侍後謝恩事, 分付. 賤臣承命出, 與金宇鎭偕入隨駕. 上曰, 領相持洪忠監司狀啓, 入侍事, 遣史官傳諭. 賤臣承命出, 與徐命善偕入進伏. …… 命善曰, 卽見濟州御史朴天衡狀本, 則逆鍊之子衡之, 卽後樂之甥姪, 同居切隣, 朝夕相從, 衡之之弟甲乭, 又配旌義, 故互相往來, 無所顧忌云. 兄第叔姪, 同配一島, 殊非嚴防限絶交通之意, 分付該府, 使之分配他道,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5년(1781) 신축년 9월 12일(신해)

□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장본(狀本)과 정의(旌義) 유배 죄인의 처리에 관해 논의함

○ 신축년 9월 12일 오시에 임금이 이문원(摛文院)에 이르렀다. 재숙(齋宿)하는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행도승지에 엄숙(嚴璹),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김상집(金尙集), 좌부승지 조시위(趙時偉), 우부승지 김우진(金宇鎭), 동부승지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익선관과 곤룡포을 갖추어 여(輿)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와 하교하기를 우부승지가 먼저 입시한 뒤에 사은하라고 분부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김우진과 함께 들어와 수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은 홍충감사(洪忠監司)의 장계를 가지고 입시하도록 사관을 보내 전유(傳諭)하자,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서명선과 함께 들어오고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장본(狀本)을 보니, 역적의 아들은 형지(衡之)이니, 곧 한후락(韓後樂)의 생질(甥姪)로서, 이웃과 동거하며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종하였으니, 형지의 동생 갑돌(甲乭)도 정의(旌義)에 유배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왕래하여,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고 합니다. 형제와 숙질(叔姪)이 한 섬에 함께 유배를 갔으니, 특별히 한절(限絶)로 교통(交通)하는 것을 엄하게 막지 않았다는 뜻을 해부에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도로 분배(分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장본, 정의, 형지, 한후락, 갑돌.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九月 十四日 癸丑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鍊之子衡之, 卽後樂之娚姪, 同居切隣, 朝夕相從, 衡之弟甲乭, 又配旌義, 故互相往來, 無所顧忌云. 兄弟叔侄同配一島, 殊非嚴防限絶通交之意, 分付該府, 使之分配他島事, 擧條啓下矣. 全羅道濟州牧爲奴罪人衡之, 康津縣薪智島爲奴, 旌義縣爲奴罪人甲乭, 興陽縣呂島爲奴, 而令刑曹依例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9월 14일(계축)

□ 제주목(濟州牧)과 정의현(旌義縣) 유배 죄인을 다른 배소로 이배하기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역적의 아들 형지(衡之)는 곧 한후락(韓後樂)의 생질(娚姪)로, 함께 가까운 이웃으로 살며 아침저녁으로 상종하였습니다. 형지 동생 갑돌(甲乭)도 정의에 유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왕래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제와 숙질(叔侄)이 한 섬에서 함께 유배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한절(限絶)로 교통하는 것을 엄하게 막지 않았다는 뜻을 해부에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섬으로 분배(分配)할 일로 거조(擧條)를 내어 계하하였습니다.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서 노(奴)로 삼게 한 죄인 형지(衡之)는 강진현 신지도(薪智島)에서 노로 삼게 하고, 정의현(旌義縣)에서 노로 삼게 한 죄인 갑돌은 흥양현 여도(呂島)에서 노로 삼게 하고, 형조(刑曹)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형지, 갑돌, 한후락.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九月 二十一日 庚申

○ 辛丑九月二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各司舊任郎廳·輪對官同爲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吏曹判書李衍祥, 禮曹判書金熤, 兵曹判書李性源, 江華留守徐浩修, 漢城判尹李命植, 刑曹判書金魯鎭, 戶曹判書鄭民始,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徐有鄰[徐有隣],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左承旨徐有防, 右承旨金尙集, 左副承旨趙時偉, 右副承旨金宇鎭, 記事官李祖承, 事變假注書李萬榮, 記事官金鳳顯, 別兼春秋林錫喆, 久任郎廳戶曹正郎徐邁修, 佐郎趙翼鉉, 兵曹正郎李夔·沈基泰, 刑曹正郎尹耆東[尹耆東], 漢城判官宋翼洙, 宣惠廳郎廳沈公猷·徐簡修·趙鎭憲·金鼎鎭, 司僕寺僉正李命杰, 判官鄭東協, 掌藥院主簿李集星, 軍資監主簿洪仁基, 廣興倉副奉事李普衍, 成均館博士金命彦, 養賢庫主簿崔大恒, 訓鍊都監從事官鄭東浚·洪仁浩·申光祜·宋載德, 把摠李栢然, 禁衛營從事官徐龍輔·閔致協, 御營廳從事官金載瓚·吳毅常, 輪對官尙瑞院副直長李復燮, 東部奉事李攀龍, 義盈庫奉事李趾馨, 東氷庫別提韓慶會, 西氷庫別檢趙時淳, 典設署別提朴賢秀, 司圃署直長韓世裕, 議政府司錄白師坤,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御史事, 其果何如耶? 大變已爲梟示云, 梟示之律, 只可行之於軍門, 則以惡逆而梟示者, 亦有其法乎? 此亦不無後弊矣. 故將臣張鵬翼, 以結案後梟示事, 已有定式, 則御史之事, 太不審愼矣. 命善曰, 雖未知其間事狀之何如, 而至於此事, 則似爲徑先矣. …….

❖ 정조 5년(1781) 신축년 9월 21일(경신)

□ 제주어사(濟州御史)가 홍대섭(洪大燮)을 효시한 일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9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 각 관서의 구임 낭청·윤대관(輪對官)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예조판서 김익(金熤),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강화유수(江華留守) 서호수(徐浩修), 한성판윤 이명식(李命植),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호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鄰[徐有隣]),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김상집(金尙集), 좌부승지 조시위(趙時偉), 우부승지 김우진(金宇鎭),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사변가주서 이만영(李萬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임석철(林錫喆), 구임낭청 호조정랑 서매수

(徐邁修), 좌랑 조익현(趙翼鉉), 병조정랑 이기(李夔)·심기태(沈基泰), 형조 랑 윤기동(尹耆東[尹耆東]), 한성판관 송익수(宋翼洙), 선혜청낭청 심공유(沈公猷)·서매수(徐邁修)·조진헌(趙鎭憲)·김정진(金鼎鎭), 사복시 첨정 이명걸(李命杰), 판관 정동협(鄭東協), 장악원 주부 이집성(李集星), 군자감주부 홍인기(洪仁基), 광흥창부봉사 이보연(李普衍), 성균관박사 김명언(金命彦), 양현고주부 최대항(崔大恒), 훈련도감 종사관 정동준(鄭東浚)·홍인호(洪仁浩)·신광호(申光祜)·송재덕(宋載德), 파총 이백연(李栢然), 금위영 종사관 서용보(徐龍輔)·민치협(閔致協), 어영청 종사관 김재찬(金載瓚), 오대상(吳毅常), 윤대관 상서원 부직장 이복섭(李復燮), 동부 봉사 이하룡(李攀龍), 의영고 봉사 이지형(李趾馨), 동빙고 별제 한경회(韓慶會), 서빙고 별검 조시순(趙時淳), 전설서 별제 박현수(朴賢秀), 사포서 직장 한세유(韓世裕), 의정부 사록 백사곤(白師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일은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홍대섭(洪大燮)은 이미 효시(梟示)하였다고 하는데, 효시의 율(律)은 단지 군문(軍門)에서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악역(惡逆)한 자를 효시하는 것도 그 법이 있는 것인가? 이 또한 후폐(後弊)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신(將臣) 장붕익(張鵬翼)이 결안(結案)한 뒤에 효시한 일로 이미 정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사의 일은 크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비록 그간의 일의 실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에 이르른 것은 경솔하게 앞질러 한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홍대섭.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九月 二十四日 癸亥

○ 辛丑九月二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吏曹判書李衍祥, 開城留守鄭好仁, 禮曹判書金熤, 工曹判書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漢城府判尹李命植, 刑曹判書金魯鎭, 戶曹判書鄭民始,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徐有隣, 行訓鍊院都正李敬懋, 左副承旨趙時偉, 記事官李祖承, 事變假注書李萬榮, 記事官金鳳顯, 別兼春秋林錫喆,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御史事, 何以處之, 則爲好耶? 罪人幾至致斃之境, 故乃有此擧云. 雖出於輿憤所激, 亦關後弊, 不可無警, 大臣之意, 何如? 命善曰, 此固出於人得以誅之意也, 查事尙未究竟, 都試設行, 似在近日, 若於此時勘罪, 則恐有掣礙之端矣. 上曰, 諸備堂各陳意見, 仍命時偉, 讀奏濟州御史狀啓. 善復曰, 臣於前日鞫獄時, 慣知此賊之罪惡, 至今傅生, 已是生刑之大者, 雖令寸斬, 尙有餘罪, 而旣非當律, 則御史此擧, 似爲輕先, 然查事未竟, 而遽爲勘罪, 則亦必有妨礙之端矣. …….

❖ 정조 5년(1781) 신축년 9월 24일(계해)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일에 대한 처리를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9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개성유수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익(金熤),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한성판윤 이명식(李命植),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호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 행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좌부승지 조시위(趙時偉),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사변가주서 이만영(李萬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임석철(林錫喆)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죄인 몇 명이 죽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어 이러한 거조가 있었다고 한다. 비록 여론의 분함이 과격해지는 데서 나온 것일지라도, 뒷날의 폐단과 관계 있는 것이니 경책(警責)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신(大臣)의 뜻은 어떤가?”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진실로 사람을 죽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을 조사했으나 이직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했으니 도시(都試)를 설행하

는 것도 근일에 있을 듯합니다. 만약 이때에 감죄(勘罪)를 하면, 거둥하심에 지장이 있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비국 당상이 각각 아뢴 의견이 있으니, 이어서 조시위에게 명하여, 제주어사의 장계를 읽어 아뢰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구선복이 아뢰기를, “신이 전날 국옥(鞫獄)이 있을 때에, 이 적(賊)의 죄악(罪惡)을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생(傅生)[67]하고 있는데, 이미 형(刑)을 살린 것으로는 큰 것입니다. 비록 촌참(寸斬)하게 했더라도 아직도 여죄(餘罪)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땅한 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어사가 이것을 들어서 경선(輕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조사하여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장애가 되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67) 부생(傅生): 죽일 죄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 그 죄를 경감(輕減)시키어 목숨을 살려 줌.

❖ 乾隆 四十六年 辛丑 九月 二十九日 戊辰

○ 辛丑九月二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御史同爲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吏曹判書李衍祥, 工曹判書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禮曹判書徐浩修, 漢城判尹李命植, 刑曹判書金魯鎭, 戶曹判書鄭民始, 御營大將李昌運, 行副司直徐有隣·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大司憲李坤, 大司諫洪檢, 副校理李時秀, 御史徐龍輔, 左副承旨趙時偉,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萬榮, 記事官金鳳顯, 別兼春秋林錫喆, 以次進伏訖. …… 命善曰, 至於濟州事, 尙未出場, 是亦甚可悶矣. 上曰, 濟州狀啓, 自有分輕重條列, 庶有勘處之端, 而至於湖西事, 尤甚可悶矣. 上曰, 濟州狀啓, 盡在政院, 出給兩捕將, 詳考罪狀, 卽令開坐以問, 可也. 柱國承命先退. …….

❖ 정조 5년(1781) 신축년 9월 29일(무진)

□ 제주(濟州) 장계의 처리를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9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는 데에 입시하고, 어사(御史)가 함께 입시했을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 한성판윤 이명식(李命植),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호조판서 정민시(鄭民始), 어영대장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임주국(李柱國), 행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대사헌 이갑(李坤), 대사간 홍검(洪檢), 부교리 이시수(李時秀), 어사 서용보(徐龍輔), 좌부승지 조시위(趙時偉),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만영(李萬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일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으니 이 또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장계에 대해서는, 본래 경중(輕重)을 나누어 조목별로 나열하여서, 감처(勘處)하는 단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서(湖西)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근심스럽고 근심스럽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장계는 모두 승정원에 있으니 두 포장(捕將)에게 내주어서 그 죄상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즉시 개좌(開坐)하여 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주국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먼저 나갔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장계.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九日 戊寅

○ 辛丑十月初九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判府事鄭存謙·李徽之, 吏曹判書李衍祥, 江華留守金煜, 兵曹判書李性源, 禮曹判書徐浩修, 漢城判尹李命植, 刑曹判書金魯鎭, 行副司直徐有隣, 大司憲李坤, 行大司諫洪檢, 副校理鄭淵淳, 行左承旨金尙集, 假注書趙衍德, 記事官朴長卨·金鳳顯, 以次進伏訖. …… 尙集曰, 刑曹殺獄文案, 果齎送大臣, 而今已還來矣. 上曰, 待少間入之, 濟州文案, 亦爲入來, 則卽爲入之, 可也.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9일(무인)

□ 제주문안(濟州文案)이 들어오면 즉시 들이라는 임금의 하교

○ 신축년 10월 초9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판부사 정존겸(鄭存謙)·이휘지(李徽之), 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강화유수 김익(金煜),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 한성판윤 이명식(李命植), 형조 판서 김노진(金魯鎭),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 대사헌 이갑(李坤), 행대사간 홍검(洪檢), 부교리 정연순(鄭淵淳), 행좌승지 김상집(金尙集),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박장설(朴長卨)·김봉현(金鳳炫)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상집이 아뢰기를, "형조(刑曹)의 살옥문안(殺獄文案)은 과연 대신(大臣)에게 재송(齎送)하여, 지금 이미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소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제주문안(濟州文案)도 들어오는 즉시 들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문안.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九日 戊寅

○ 辛丑十月初九日未時, 上御誠正閣. 同副承旨與前一直提學入侍時, 前一直提學鄭民始, 同副承旨鄭志儉,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上曰, 濟州御史狀啓中, 罪人劉世輝, 自捕廳, 已爲捉囚乎? 知入. 賤臣, 承命出, 回奏曰, 姑未捉囚云矣. 上曰, 濟州狀啓中, 各罪人罪狀, 分等覆啓事, 遣史官傳諭大臣後, 仍爲持來事, 分付. 賤臣承命出傳.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9일(무인)

□ 제주어사(濟州御史) 장계에서 유세휘(劉世輝)의 착수(捉囚)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0월 초9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동부승지와 전 직제학이 입시한 자리에서, 전 직제학 정민시(鄭民始), 동부승지 정지검(鄭志儉),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장계 가운데, 죄인 유세휘(劉世輝)를 포청(捕廳)에서 이미 착수(捉囚)했다고 하는가? 아는 사람을 들이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잠시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장계 가운데, 각 죄인의 죄상을 분등하여 복계할 일로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전유(傳諭)한 뒤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전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장계, 유세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九日 戊寅

○ 辛丑十月初九日申時, 上御誠正閣.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敎曰, …… 其他干連諸囚, 竝參量決折, 待峻[竣]事卽爲復路之意, 回諭于濟州御史處. 又命書傳敎曰, 諸囚滯獄, 民邑之弊, 不可不念, 從當分等酌處, 而其中金愛·李奎景, 朝筵旣從大臣之請, 根因脈絡, 有難平問取服, 嚴刑得情, 斯速馳聞, 大臣擧條, 謄出一通, 與此有旨, 同爲下送于審覈使處, 向欲下敎而未果, 參覈官太多, 徒貽廚傳之弊, 量宜差定, 餘皆罷送事, 一體回諭. 又命書領議政箚批訖.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9일(무인)

□ 제주어사(濟州御史)에게 회유(回諭)한다는 임금의 전교

○ 신축년 10월 초9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상략〉 기타 간련(干連)한 여러 수인(囚人)은 모두 참량(參量)하여 결절(決折)하고, 끝낸 일을 기다렸다가 즉시 왔던 길을 되돌릴 뜻으로 제주어사(濟州御史)에게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회유.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二日 辛巳

○ 又以義禁府言啓曰, 宋煥億, 絶島定配事, 承傳啓下矣. 罪人煥億, 全羅道濟州牧大靜縣, 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無特敎, 則元無本牧定配所之規, 設欲爲之, 何不微稟? 有關後弊, 卿則推考, 本牧近作逋盜之藪, 觀於今番御使狀問, 而益可知之, 以楸子島, 更定配所, 可也.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2일(신사)

□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송환억(宋煥億)을 추자도(楸子島)로 배소를 바꾸라는 임금의 전교

○ 또한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송환억(宋煥億)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는 일은 전교를 받들어 계하하였습니다. 죄인 송환억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절도에 정배하고, 받든 전교 안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고, 전례에 따라 부의 서리를 발견하여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특교(特敎)가 없으면 원래 제주목에 배소(配所)로 하는 규식이 없다. 설사 하려고 했더라도 어찌하여 슬쩍 품(稟)하지도 않았는가? 뒷 폐단에 관계가 있으므로 경(卿)은 곧 추고(推考)하고, 제주목은 근래에 포도(逋盜)들의 소굴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어사의 장문을 보건대 더욱 알 만하였다. 추자도(楸子島)로 배소를 바꿔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배죄인, 송환억, 추자도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三日 壬午

○ 又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黃鱗采, 遞任進上馬三匹, 大靜前縣監羅潤祿, 遞任進上馬二匹, 合五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厩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3일(임오)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상래에 관한 사복시의 계

○ 또한 사복시의 관원과 일이(一二) 제조가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鱗采)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나윤록(羅潤祿)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을 합한 5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화모색(禾毛色)을 별단으로 서서 들였으니, 전례에 따라 내구(內厩)에서 입양하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대정현감, 황인채, 나윤록,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三日 壬午

○ 又以左右捕盜廳言啓曰, 濟州罪人李天柱及干連罪人朴潤德·金光澤, 奴申好等, 今日捉來嚴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3일(임오)

□ 제주(濟州) 죄인 이천주(李天柱)의 엄수(嚴囚)을 청하는 좌우포도청의 계

○ 또한 좌우포도청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죄인 이천주(李天柱)와 관련된 죄인 박윤덕(朴潤德)·김광택(金光澤), 노(奴) 신호(申好) 등을 오늘 붙잡아와서 엄히 가두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천주, 박윤덕, 김광택, 신호.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三日 壬午

○ 金尙集, 以義禁府言啓曰, 宋煥億絶島定配事, 承傳啓下矣. 罪人煥億, 全羅道靈巖郡楸子島, 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3일(임오)

□ 추자도(楸子島) 정배(定配) 죄인 송환억(宋煥億)의 압송에 관한 김상집(金尙集)의 계

○ 김상집(金尙集)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송환억(宋煥億)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한 일은 전교를 받들어서 계하(啓下)한 것입니다. 죄인 송환억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절도에 정배하고 받든 전교 안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고, 전례에 따라 부의 서리를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송환억.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四日 癸未

○ 辛丑十月十四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 刑曹堂上同爲入侍時, 領議政徐命善, 知中樞府事具善復, 吏曹判書李衍祥, 江華留守金煜, 工曹判書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禮曹判書徐浩修, 漢城判尹李命植, 刑曹判書金魯鎭,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徐有隣·李柱國, 大司憲李坤, 大司諫洪檢, 校理徐有成, 刑曹參議李義寬, 左承旨金尙集, 左副承旨李在學, 右副承旨徐鼎修,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萬榮,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命善曰, 濟州罪人光復等, 移囚捕廳, 聞今在囚, 爲六七人云, 卽令査決, 似好矣. 上曰, 該廳發捕, 卽一李光復, 而光復外不緊罪人, 亦皆捉來, 必是御使, 難於處置, 故爲移送該廳者此也, 許久牢囚, 亦甚可悶, 竝卽決放, 可也.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4일(계미)

□ 제주(濟州) 죄인 이광복(李光復)의 이수(移囚)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0월 14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형조 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강화유수 김익(金熤),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 한성판윤 이명식(李命植),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이주국(李柱國), 대사헌 이갑(李坤), 대사간 홍검(洪檢), 교리 서유성(徐有成), 형조참의 이의관(李義寬), 좌승지 김상집(金尙集), 좌부승지 이재학(李在學), 우부승지 서정수(徐鼎修),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만영(李萬榮),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죄인 이광복(李光復) 등을 포청으로 이수(移囚)하였습니다. 들으니 지금도 갇혀 있는데, 6, 7인이라고 합니다. 즉시 사결(査決)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청(該廳)에서 발포(發捕)한 것은 이광복 한 사람이고, 이광복 외에 중요하지 않은 죄인도 모두 붙잡아 왔으니, 필시 어사(御使)가 처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청에 이송하게 한 것이다. 이런 허구(許久) 뇌수(牢囚)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니 모두 즉시 결방(決放)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이광복, 이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八日 丁亥

○ 正言鄭在信疏曰, …… 惟彼大燮, 卽範逆之至親, 興賊之主人, 陰謀祕計, 無不爛熳綢繆, 則揆以國法, 宜施肆市之典, 而當初安置之命, 未免失刑之歸矣. 渠於諸賊叢中, 自同平人, 締結行商, 嘯聚徒黨, 出沒島中, 行止閃忽, 肆然闕點, 如或有一分畏忌之心, 渠安敢若是乎? 且永綏, 身爲一島之長, 不惟不爲禁戢, 乃反以一逆婢, 謂之骨肉, 顧恤愛護, 無所不至, 頻遣傔裨, 備給棺板, 無異常居之至親, 其心所在, 誠不可測. 諸賊之跳梁[跳踉], 實是永綏寬假之致, 倘使國法如是, 則竄逐豈爲勘罪之科, 堤坊[隄防]豈爲嚴懲之道? 臣謂濟州牧罪人大燮, 金甲島罪人永綏, 亟令王府, 拿來嚴囚, 待用刑設鞫嚴覈, 依律處斷. 斷不可已也. 臣無任瞻天望雲屛營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所陳已悉諭矣.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8일(정해)

□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대섭(洪大燮)과 금갑도 죄인 김영수(金永綏)의 처단을 청하는 정재신(鄭在信)의 상소

○ 정언 정재신이 상소하기를, "〈중략〉 저 저 홍대섭(洪大燮)은 바로 역적 홍상범(洪相範)의 지친(至親)이며, 흉적(興賊)의 주인이자 음모와 계략이 치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나라의 법으로 헤아려 볼 때 저자에서 처형하는 형전을 시행해야 마땅하겠으나 당초 안치하라는 명은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역적 무리들 중 스스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인들과 결탁하여 도당을 불러 모아 섬 안에 출몰하며 행동거지가 번쩍하고 방자하게 점고(點考)를 빼먹었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또 김영수(金永綏)는 한 섬의 우두머리인 몸으로 김영수는 한 섬의 우두머리인 몸으로 금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개 역비(逆婢)를 두고 골육(骨肉)이라고 하면서 돌보아 주고 보호하며 못하는 짓이 없어, 자주 비장(裨將)를 보내어 관판(棺板)을 갖추어 지급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다름없이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역적들이 발호(跋扈)하는 것은 실로 김영수를 관대히 용서해 준 소치이니, 만약 국법이 이와 같다면 찬축(竄逐) 하는 것이 어찌 죄인을 신문하고 처분하는 죄과(罪科)가 되는 것이겠으며 제방(隄防)을 막는 것을 어찌 엄하게 징계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신이 아뢰건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대섭(洪大燮)과 금갑도(金甲島: 지금의 진도) 죄인 김영수(金永綏)를 속히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와서 엄수(嚴囚)하게 하고, 용형(用刑)을 기다려서 설국(設鞫)하고 엄핵(嚴覈)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신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를 읽고서 다 알았다. 아뢴 것은 이미 유시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대섭, 김영수.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十八日 丁亥

○ 司諫李謙彬疏曰, …… 臣謂三水府安置罪人德相, 楸子島定配罪人煥億, 亟令王府, 具格拿來, 以待用刑, 設鞫得情, 快正王法. 斷不可已也. …… 答曰, 省疏具悉. 所陳當量處, 爾其勿辭, 救護母病.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18일(정해)

□ 추자도(楸子島) 정배한 죄인 환억(煥億)의 처단을 청하는 이겸빈(李謙彬)의 상소

○ 사간 이겸빈(李謙彬)이 상소하기를, "〈중략〉 신이 아뢰건대, 삼수부 안치한 죄인 덕상, 추자도(楸子島) 정배한 죄인 환억(煥億)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모두 형구를 채우고 잡아 오게 해서, 용형(用刑)을 기다렸다가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를 읽고서 다 알았다. 아뢴 것은 마땅히 헤아려서 처단하라.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病)을 구호(救護)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환억.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二十三日 壬辰

○ 正言鄭在信疏曰, …… 耽羅一島, 在我國, 便是要荒之外, 而惟我列聖朝, 撫摩之愛恤之, 其民之同囿於王化之中者, 厥有久矣. 不幸數年以來, 凶逆餘孽, 咸萃於此島, 便作逋盜之藪. 況其海路截遠, 邦禁至嚴, 衣糧凡節, 無以自措, 則此輩之怨憾煽動, 必無所不至, 以至於嚮來事出矣. 殿下旣擇守臣, 又遣繡衣, 俾有以宣揚聖化, 鼓舞仁澤, 而第其皮服之生涯, 旣接無糧之羈旅, 終日無所事, 而徒仰餔於主人, 則其難支之形, 不見可想, 而且其蠢愚之性, 易動於衆楚之咻, 國家之隱憂, 非細故也. 愚意則就其中酌量其情犯之差歇者, 移配於他島, 使島民, 咸知其爲渠輩區處之意, 則庶幾益見其愛戴之心矣. 今年穡事, 初則有豐登之望矣. 四朔長霖, 一竝消融, 或有穴農稍勝處而, 大抵八路, 皆不免歉歲也. 至於嶺南, 則諸般災害, 振古所無, 我殿下宵肝之憂, 若恫在已, 旣遣使而慰諭之, 又蠲稅而賙恤之, 庶幾有安堵奠生之望, 而第其懷保之方, 專係親民之官, 守令而不得其人, 則雖樂歲, 每患其疾苦之難蘇. 況當大歉之年, 必得公淸仁明之才, 然後可責其拯濟斯民. 伏願殿下, 申諭道臣與列邑守宰, 從長消詳, 無俾一毫相阻, 勉勵之指導之, 以期其共濟民事. 至於奸鄕猾胥, 專事欺瞞, 若値凶荒之歲, 則其賙賑之際, 糶糴之間, 舞弄尤甚, 畢竟公穀之逋縮, 民惠之壅閼, 皆由於此, 臣謂亦宜另飭, 道臣·守令, 嚴加束濕, 俾有懲戢之效焉. 臣不敢以職事自居, 而適値聖上求言之際, 粗效愚愛之忱, 猥陳狂妄之說. 伏願殿下, 哀之憐之, 不以人廢言, 千萬幸甚, 臣無任屛營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陳列根據, 方欲體念, 而其次湖獄事, 爾言, 是矣. 又其次湖西事, 爾言亦好, 當審處矣. 又其次耽羅事, 政若予意, 令該府·該曹, 徒流案抄出, 別單書入, 以待判下, 又其次嶺南事, 亦令備局, 申飭該道, 爾其勿辭察職.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23일(임진)

□ 탐라(耽羅)에 유배된 죄인들을 다른 배소로 이배할 것을 청하는 정재신(鄭在信)의 상소

○ 정언 정재신(鄭在信)이 상소하기를, "〈중략〉 탐라(耽羅) 한 섬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요황(要荒) 밖에 해당이 되지만, 오직 우리 열조(列朝)에서는 그곳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는 것을 왕화(王化) 안에 들어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수년 이래 흉역의 여얼(餘孽)들이 모두 이 섬에 모여 있어 곧바로 포도(逋盜)들의 소굴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해로(海路)가 너무 멀고 방금(邦禁)은 지극

히 엄하니, 이 무리들이 원망하여 선동하는 짓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번의 일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고 사는 그들의 생애에 식량이 없는 나그네들을 거접(居接)시켰으며 이들은 온종일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저 주인(主人)에게 먹여 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을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은우(隱憂)에 있어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의 우의(愚意)에는 그들 가운데 정범(情犯)이 조금 헐한 자들은 참작하여 헤아려 다른 도로 이배(移配)시킴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모두 그들을 구처(區處)하는 뜻을 알게 한다면, 거의 그들의 애대(愛戴)하는 마음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68]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략〉. 또 그다음 탐라의 일에 관해서는 바로 나의 뜻과 같으니, 해부(該府)·해조(該曹)로 하여금 도류안(徒流案)을 뽑아내어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게 한 다음 판하(判下)를 기다리게 하라. 영남의 일도 비국으로 하여금 해도(該道)에 신칙하라.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68) 이 내용은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23일 임진조에서 확인되고 있음.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二十六日 乙未

○ 李在學, 以刑曹言啓曰, 因本曹別單, 濟州三邑定配罪人中, 石奉, 金德麟, 奴一才, 寺奴世命·士善·碩童, 奴丁男·卜男·善玉, 奴十月金, 孫景完等, 竝令該曹, 移定配所後草記事, 命下矣. 依傳敎, 濟州牧定配罪人石奉全羅道康津縣古今島, 金德麟羅州牧智島, 爲奴罪人奴一才興陽縣蛇島, 大靜縣定配罪人碩童羅州牧黑山島, 爲奴罪人寺奴世明慶尙道巨濟府, 奴士善南海縣, 奴丁男全羅道興陽縣鹿島, 奴卜男靈岩郡楸子島, 旌義縣定配罪人善玉羅州牧黑山島, 奴十月金康津縣薪智島, 孫景完珍島郡金甲島, 竝移定配所, 卽爲押送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26일(을미)

□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 추자도(楸子島) 죄인의 배소 이정(移定)에 관한 이재학(李在學)의 계

○ 이재학(李在學)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本曹)의 별단으로 인해, 제주(濟州) 세 고을에 정배한 죄인 가운데, 석봉(石奉)·김덕린(金德麟), 노(奴) 일재(一才), 시노(寺奴) 세명(世命)·사선(士善)·석동(碩童), 노 정남(丁男)·복남(卜男)·선옥(善玉), 노 시월쇠[十月金]·손경완(孫景完) 등을 모두 해조로 하여금 배소에 이정하게 한 뒤에 초기(草記)할 일로 명하(命下)하였습니다. 전교(傳敎)에 따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석봉은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에, 김덕린은 나주목 지도에, 노로 삼게 한 죄인 일재는 흥양현 사도에,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석동은 나주목 흑산도에, 노로 삼게 한 죄인 시노 세명은 경상도 거제부에, 노(奴) 사선은 남해현에, 노 정남은 전라도 흥양현 녹도에, 노 복남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선옥은 나주목 흑산도에, 노 시월쇠는 강진현 신지도에, 손경완은 진도군 금갑도에, 모두를 배소에 이정하고, 즉시 압송하게 할 일을, 관문(關文)을 내어 해도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정의현, 배소, 이정.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月 二十六日 乙未

○ 辛丑十月二十六日巳時, 上御誠正閣. 右承旨入侍時, 右承旨李在學, 記事官趙興鎭·金鳳顯, 別兼春秋金載瓚, 以次進伏. ……上曰, 無論喪性與不喪性, 其爲驚悚, 當何如耶? 民始曰, 莫重之地, 有此變怪, 誠萬萬驚駭矣. 以禁府·刑曹·濟州三邑定配罪人別單, 命書傳敎曰, 禁府則皆是極逆應坐, 別無區別之人, 而刑曹發配中, 多有同罪疊配者, 奴石奉, 金德麟, 奴一才, 寺奴世明·士善·碩童, 奴丁男·卜男·善玉, 奴十月金·孫景完等, 竝令該曹, 移定配所後草記.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5년(1781) 신축년 10월 26일(을미)

□ 제주(濟州) 정배 죄인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0월 26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한 자리에,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기사관 조흥진(趙興鎭)·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상성[喪性, 실성]했는지, 상성하지 않았는지를 논하지 말고 그가 한 것은 매우 놀랍고 두려운 것이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막중한 땅인데, 이런 변괴(變怪)가 있으니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의금부·형조가 올린 제주(濟州) 세 고을에 정배된 죄인의 별단(別單)에 대해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의금부는 모두 극악한 역적으로 응좌(應坐)하여 특별히 구별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형조의 배소 가운데 같은 죄를 지어 중첩하여 정배된 자들이 있다. 노(奴) 석봉(石奉)·김덕린(金德麟), 노 일재(一才), 시노(寺奴) 세명(世明)·사선(士善)·석동(碩童), 노 정남(丁男)·복남(卜男)·선옥(善玉), 노 시월쇠[十月金]·손경완(孫景完) 등을 모두 해조로 하여금 배소로 이정(移定)한 뒤에 초기(草記)하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자,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정배 죄인, 이배.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一月 五日 癸卯

○ 辛丑十一月初五日辰時, 上御誠正閣. 朝講次對, 輪臺官·同敦寧·下直守令, 同爲入侍時, 領事徐命善, 同知事徐有隣, 特進官鄭昌聖·徐有寧, 大司憲李在協, 參贊官黃昇源, 侍讀官李謙彬, 檢討官姜彝正, 正言鄭在信, 左承旨趙時偉,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祥雲察訪張漢喆進伏, 上曰, 都政時, 此人爲郎廳矣. 命善曰, 此人居在濟州, 能善文而見其漂海錄, 則頗有可觀矣. 上曰, 漂到何處乎? 漢喆曰, 漂至安南國, 而其中有大明遺民子孫, 聞朝鮮人來到, 皆欣迎矣. 上曰, 爾道年事, 何如? 漢喆曰, 擧値歉歲, 而或有淺深之別, 至於襄陽·江陵, 頗勝矣. 上曰, 市價, 何如? 漢喆曰, 幾至五兩錢矣. 命退,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1월 5일(계묘)

□ 상운찰방(祥雲察訪) 장한철(張漢喆)이 임금을 알현함

○ 신축년 11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상운찰방(祥雲察訪) 장한철(張漢喆)이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정(都政)[69] 때에, 이 사람은 낭청(郎廳)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제주(濟州)입니다. 능히 문장에도 뛰어난데, 그의 『표해록(漂海錄)』[70]을 보면 자못 볼만한 것이 있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표도(漂到)한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였다. 장한철이 아뢰기를, "표도한 곳은 안남국(安南國)입니다. 거기에는 대명(大明)의 유민(遺民) 자손(子孫)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인(朝鮮人)이 내도(來到)한 것을 듣고서 모두 환영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도의 농사 형편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장한철이 아뢰기를, "흉년을 만나면, 간혹 천심(淺深)의 차이가 있으며 양양(襄陽)·강릉(江陵)에 이르러서는 제법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자의 값[市價]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장한철이 아뢰기를, "거의 다섯 냥(五兩)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했다. 〈하략〉.

---

69) 도정(都政): 해마다 음력으로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더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일. 도목 정사(都目政事)·도목정(都目政)·도목(都目)이라고도 함.

70) 『표해록(漂海錄)』: 조선 영조 때인 1771년(영조 47)에, 제주도 사람 장한철(張漢喆)이 한문으로 쓴 기록물. 그와 일행이 과거를 보러 배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류큐 열도에 표류하여서 돌아오기까지의 체험을 기록함.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주제어: 장한철, 상운찰방, 표해록, 제주.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一月 六日 甲辰

○ 以濟州御史朴天衡狀啓, 傳于金宇鎭曰, 觀此狀啓, 所引前例, 不可不從施, 況有令該曹趁速稟處之請, 若待回下御史等待之弊, 亦不可不念, 本牧三邑士庶人年八十以上加資, 一依舊例擧行. 將此狀本中, 後錄列名, 待明朝政官牌招開政, 下批官敎, 仍令明日內安寶成送, 御史還朝前, 一一聚集, 以尊高年之意, 勞問慰諭後, 頒給官敎, 擧行形止狀聞事, 亦令該曹, 分付濟州巡撫御史處.

❖ 정조 5년(1781) 신축년 11월 6일(갑진)

□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장계(狀啓)에 대한 임금의 전교

○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장계(狀啓)에, 임금이 김우진(金宇鎭)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건대, 인용한 전례(前例)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해조(該曹)로 하여금 속히 품처(稟處)해 달라는 청이 있었으니 만약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어사가 미리 기다리는 폐단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목(本牧) 세 고을 사서인(士庶人)의 나이 80 이상에게 가자(加資)하고, 한결같이 구례(舊例)대로 거행하라. 장차 이 장본(狀本) 안에 후록하여 열명(列名)하고, 내일 아침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하비(下批)하고 관교(官敎)를 내리게 하라. 이어 내일 내직의 어보를 찍어 올려 보내도록 하고, 어사가 조정에 돌아오기 전에 일일이 모아서 고년(高年)을 존중하는 뜻으로 위문하고 위유한 뒤에 관교(官敎)를 나눠 주고 거행하는 상황을 장문(狀聞)하라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에게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제주어사, 박천형, 장계.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一月 十一日 己酉

○ 辛丑十一月十一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安春君·同敦寧同爲入侍時, 領議政徐命善, 知中樞府事具善復, 吏曹判書李衍祥, 禮曹判書鄭尙淳, 行副司直趙竣·鄭好仁, 工曹判書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漢城判尹徐浩修, 刑曹判書李命植, 同知中樞府事徐有隣, 開城留守鄭昌順,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院都正李敬懋, 漢城右尹鄭一祥, 戶曹參判蔡弘履, 安春君㸃, 同敦寧李濬, 副校理李謙彬, 正言沈商賢, 左副承旨趙時偉,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徐有沂, 記事官金鎔·金鳳顯, 以次進伏訖. …… 命善曰, 此濟州牧使李養鼎分等狀啓也, 大靜置之稍實, 旌義置之之次, 本州置之尤甚, 仍以爲尤甚面里奴婢身貢米減三升, 男丁大同米減一升, 除番米則一斗式, 限麥秋停退, 各牧場驅馬御史, 纔已逐匹點烙, 放秋巡點烙, 不爲擧行, 臣營操鍊, 當此災年, 不可裹糧久留, 待明年從附近哨鍊, 恐合便宜, 蠲減停退等事, 固當稟旨, 恭竢處分, 而候風往來, 動費累朔, 故今亦依例擧行爲辭矣, 此是守臣, 先擧行後啓聞者, 竝依此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5년(1781) 신축년 11월 11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의 분등(分等) 장계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1월 11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는 데에 입시하고, 안춘군(安春君)과 동지돈녕부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이조판서 이연상(李衍祥),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부사직 조준(趙 竣)·정호인(鄭好仁),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한성판윤 서호수(徐浩修), 형조판서 이명식(李命植), 동지중추부사 서유린(徐有隣), 개성유수 정창순(鄭昌順),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한성우윤 정일상(鄭一祥), 호조참판 채홍리(蔡弘履), 안춘군(安春君) 이㸃(李㸃), 동지돈녕부사 이양이(李濬), 부교리 이겸빈(李謙彬), 정언 심상현(沈商賢), 좌부승지 조시위(趙時偉),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서유기(徐有沂), 기사관 김용(金鎔)·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이 분등(分等)[71]한 장계입니다. 대정(大靜)은 초실

71) 분등(分等): 연분등제(年分等第)로 조선조 세종 29년(1447)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 그 해의

(稍實)에 두고, 정의(旌義)는 지차(之次)에 두고, 제주(濟州)는 우심(尤甚)에 두었으며, 우심면리(尤甚面里)의 노비신공(身貢)으로 3되를 감하였으니, 남정(男丁) 대동미(大同米)는 1되를 줄이고 제번미(除番米)는 1말씩 보릿가을 때까지를 한도로 하여 정퇴(停退)하였습니다. 각 목장(牧場)의 구마(驅馬)는 어사(御史)가 막 축필(逐匹)하여 점낙(點烙)하고, 놓아 먹이고 추순(秋巡)의 점낙(點烙)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영에서 조련(操鍊)하고, 마땅히 이 재년(災年)에는 과량(裹糧)[72]을 구류(久留)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부근의 초련(哨鍊)을 좇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견감하고 정퇴하는 것 등의 일은 진실로 마땅히 품지(稟旨)하여, 처분만 삼가 기다립니다. 바람을 기다려서 왕래하는 데는 여러 달 비용을 허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전례에 거행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이 수신(守臣)이 먼저 거행한 뒤에 계문(啓聞)한 것을 모두 이에 따라 거행하게 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양정, 분등 장계, 제주, 대정, 정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었음.

72) 과량(裹糧): 먼 길을 떠날 때에 양식을 싸 가지고 감.

❖ 乾隆 四十六年 辛丑 十一月 二十日 戊午

○ 辛丑十一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禮曹判書鄭尙淳, 漢城判尹鄭好仁, 工曹判書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刑曹判書李命植, 戶曹判書鄭民始, 同知中樞府事徐有寧, 行副司直李柱國, 行訓鍊都正李敬懋, 漢城右尹鄭一祥, 戶曹參判蔡弘履, 大司諫林著喆, 掌令具修溫, 應敎朴天行, 右承旨趙時偉, 假注書李魯春, 事變假注書李敏采,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本寺與戶曹, 其無前例, 則等也, 第於本寺, 則有傍照之例, 珠絡, 卜定於濟州, 象毛責貿於巨達, 凡此數種, 皆自本寺擧行, 此足爲例, 都提調之言, 未知其合宜矣. 命善曰, 上敎雖如此, 臣意則奉行實難, 臣寧被譴何, 不可創始無前之例, 更令他提調擧行好矣.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1월 20일(무오)

□ 주락(珠絡)을 제주(濟州)에 지정(卜定)한 것 등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1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한성판윤 정호인(鄭好仁),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형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호조판서 정민시(鄭民始), 동지중추부사 서유녕(徐有寧),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한성우윤 정일상(鄭一祥), 호조참판 채홍리(蔡弘履), 대사간 임시철(林著喆), 장령 구수온(具修溫), 응교 박천행(朴天行), 우승지 조시위(趙時偉), 가주서 이노춘(李魯春), 사변가주서 이민채(李敏采), 편수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와 호조(戶曹)는 그에 대한 전례가 없는 것은 같지만, 본시에서 차례로 방조(傍照)[73]한 예가 있다. 주락(珠絡)[74]은 제주(濟州)에 지정(卜定)하고, 상모(象毛)는 거제(巨濟)에서 책무(責貿)하여, 무릇 이들 수종(數種)은 모두 본시에서 거행하는데 이는 충분히 예가 되니, 도제조의 말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

73) 방조(傍照): 절용할 만한 법문(法文)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법문을 참조함.
74) 주락(珠絡): 임금이나 벼슬아치가 타는 말에 붉은 줄과 붉은 털로 꾸민 치레.

와 같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봉행(奉行)하는 것이 실로 어렵습니다. 신은 정령 어떠한 견책(譴責)을 받게 되더라도, 전례가 없는 예를 새로 만들 수 없으니, 다시 다른 제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주락, 제주, 지정.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六日 甲戌

○ 有政. 吏批, 判書鄭民始, 參判金文淳, 參議沈念祖進, 左副承旨趙時偉進. 吏批啓曰, 濟州牧使今當差出, 而未準朔禁軍將竝擬, 何如? 傳曰, 允. 以李敬一爲副校理, …… 李文燁爲濟州牧使,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6일(갑술)

□ 이문혁(李文燁)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가 있었다. 〈상략〉.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금 당장 차출(差出)해야 합니다. 달수가 차지 않은 금군장(禁軍將)을 아울러 의망(擬望)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경일(李敬一)을 부교리로 삼고, 〈중략〉, 이문혁(李文燁)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이문혁, 제주목사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六日 甲戌

○ 辛丑十二月初六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洪樂性, 戶曹判書李衍祥, 行副司直鄭尙淳, 漢城判尹鄭好仁, 工曹判書徐有慶, 刑曹判書李命植, 禮曹判書金魯鎭, 吏曹判書鄭民始, 行訓鍊都正李昌運, 同知中樞府事徐有隣, 漢城左尹李柱國, 行副司直李敬懋, 戶曹參判蔡弘履, 大司諫趙尙鎭, 掌令尹曖, 修撰李敬一, 右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敏采, 記注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無明義錄云, 故印出入送, 欲使島民, 曉然知之矣. 命善曰, 好矣.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6일(갑술)

□ 제주(濟州)에 『명의록(明義錄)』을 보내는 건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2월 초 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행부사직 정상순(鄭尙淳), 한성판윤 정호인(鄭好仁),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이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행훈련도정 이창운(李昌運), 동지중추부사 서유린(徐有隣),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호조참판 채홍리(蔡弘履), 대사간 조상진(趙尙鎭), 장령 윤확(尹曖), 수찬 이경일(李敬一),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민채(李敏采), 기주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는 명의록(明義錄)[75]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출(印出)하여 들여보내서, 섬사람들로 하여금 뚜렷이 이를 알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명의록.

---

75) ≪명의록(明義錄)≫: 조선 정조 원년(1777)에 김치인 등이 편찬한 책. 벽파의 홍인한 등이 시파의 탄핵을 받아 제거된 전말을 기록함. 3권 2책의 인본임. 《속명의록(續明義錄)》은 조선 정조 2년(1778) 무술년에 김치인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명의록(明義錄)》의 속편. 1777년 7월부터 1778년 2월까지 있었던 홍상범(洪相範)의 옥사(獄事)를 적은 기록임.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六日 甲戌

○ 辛丑十二月初六日午時, 上御誠正閣. 藥房提調入侍時, 提調徐浩修, 副提調嚴璹, 假注書趙衍德, 記注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醫官吳道炯·徐命緯·金成五, 以次進伏訖. …… 命書傳敎曰, 新除授濟州牧使辭朝, 勿令許久遲滯, 歲前渡海事, 分付.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6일(갑술)

□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사조(辭朝)

○ 신축년 12월 초6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약방 제조가 입시할 때 제조 서호수(徐浩修), 부제조 엄숙(嚴璹),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의관 오도형(吳道炯)·서명위(徐命緯)·김성오(金成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쓰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사조(辭朝)를 하여 오랫동안 지체하지 말게 하고, 세전(歲前)에 도해(渡海)하게 할 일"이라고 분부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사조.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九日 丁丑

○ 有政. 吏批, …… 洪履健爲掌令, 許晛爲持平, 鄭淵淳爲獻納, 嚴思憲·鄭在信爲正言, 洪義榮爲戶曹正郎, 閔百恒爲仁同府使, 沈商賢爲務安縣監, 李鎭復爲寧海府使, 金魯成爲咸從府使, 李長益爲旌義縣監, 朴長卨爲長連縣監, 韓譱爲泰川縣監. 兵批, 判書李性源進, 參判鄭昌聖病, 參議尹冕東入直進, 參知趙鼎鎭差祭, 承旨趙時偉進. 以許任爲宣傳官, 鄭尙淳爲知事, 徐浩修爲都摠管, 鄭擇爲同知, 白師誾爲內禁將, 李嶠爲僉知, 權宜中爲五衛將, 金源爲忠翊將, 李養鼎爲副司直. 又以朴宗來·任希雨·李碩九爲副護軍, 以李祖源·李性吾·李一曾爲副司果.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9일(정축)

□ 이장익(李長益)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홍이건(洪履健)을 장령으로 삼고, 〈중략〉 이장익(李長益)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이장익, 정의현감.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九日 丁丑

○ 辛丑十二月初九日巳時, 上御誠正閣. 一二直提學·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知事具善復·洪樂性, 行戶曹判書李衍祥, 行副司直鄭尙淳, 漢城判尹鄭好仁, 兵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徐浩修, 刑曹判書李命植, 吏曹判書鄭民始, 行訓鍊都正李昌運, 同知中樞府事徐有隣, 漢城左尹李柱國, 戶曹參判蔡弘復, 行副司直李敬懋, 禮曹參判徐有寧, 大司諫趙尙鎭, 掌令金東稷, 副校理李敬一, 直提學沈念祖·鄭志儉, 左承旨徐有防, 假注書趙衍德, 記事官趙錫晦·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御史渡海狀啓, 今始入來, 故濟牧之特爲許遞, 良有意焉. 向來差遣, 無異投荒, 而年色垂暮, 又將過歲, 故特令內移矣. 命善曰, 濟牧之今番效勞, 亦已多矣. 上曰, 旌義縣監, 曾以侍下人勿爲差遣事, 有所下敎, 而只因該曹之循例擬入, 予果批下矣. 今經屢朔, 其今內擬, 可也.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9일(정축)

□ 제주목사[濟牧]의 허체(許遞)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2월 초9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일·이직제학,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지사(行知事) 구선복(具善復)·홍낙성(洪樂性), 행호조판서 이연상(李衍祥), 행부사직 정상순(鄭尙淳), 한성판윤 정호인(鄭好仁), 병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서호수(徐浩修), 형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이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행훈련도정 이창운(李昌運), 동지중추부사 서유린(徐有隣),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호조참판 채홍복(蔡弘復),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예조참판 서유녕(徐有寧), 대사간 조상진(趙尙鎭), 장령 김동직(金東稷), 부교리 이경일(李敬一), 직제학 심염조(沈念祖)·정지검(鄭志儉),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조석회(趙錫晦)·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의 도해 장계(狀啓)가 지금 비로소 들어왔다. 그러므로 제주목사(濟州牧使)를 특별히 허체(許遞)하는 것이 참으로 뜻이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차출하여 보낸 것은 황무지에 버려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이가 저물려하니 또한 해가 지나기 때문에 특별히 내직으로 옮기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목사는 이번에 공로가 많습니

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은 일찍이 하인(下人)을 시위(侍位)하여 차견(差遣)하지 말게 할이라고 하교(下敎)를 내린 바가 있다. 그러므로 단지 해조(該曹)에서 관례에 따라 주의(注擬)하여 들이니 내가 마침내 비답을 내렸다. 지금 여러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의망(擬望)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제주목사, 허체, 정의현감.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十日 戊寅

○ 備忘記, 濟州牧使李文燁下直, 長弓一張·長箭一部·片箭一部·筒兒一箇賜給.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10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燁)의 하직에 대한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燁)이 하직하자, 장궁(長弓) 1장·장전(長箭) 1부·편전(片箭) 1부·통아(筒兒) 1개를 내주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하직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十日 戊寅

○ 辛丑十二月初十日午時, 上御誠正閣. 左副承旨·同副承旨·守令同爲入侍時, 左副承旨趙時偉, 同副承旨鄭象仁, 假注書李魯春, 記注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濟州牧使李文燁, 豐基郡守李漢一, 寧海府使李鎭復, 長連縣監朴長卨, 泰川縣監韓潽, 竹山府使李彦忠, 咸從府使金魯成, 仁同府使閔百恒, 以次進伏訖. 上命守令以次進前. 濟州牧使李文燁進前, 上曰, 濟州今番騷撓之餘, 人心難以鎭安, 凡係戎務民事, 着意爲之, 宣諭聽于政院. 命退出.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10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爀)의 임금을 알현함

○ 신축년 12월 초10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좌부승지·동부승지·수령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좌부승지 조사위(趙時偉), 동부승지 정상인(鄭象仁), 가주서 이노춘(李魯春), 기주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제주목사 이문혁(李文爀), 풍기군수 이한일(李漢一), 영해부사 이진복(李鎭復), 장연현감 박장설(朴長卨), 태천현감 한선(韓潽), 죽산부사 이언충(李彦忠), 함종부사 김노성(金魯成), 인동부사 민백항(閔百恒)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수령(守令)들은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제주목사 이문혁(李文爀)이 앞으로 나아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이번 소요를 겪은 뒤에 민심을 진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군무(軍務)와 민사(民事)에 관계된 모든 일을 유의하여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명을 받들고 나갔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十五日 癸未

○ 辛丑十二月十五日辰時, 上御涵仁亭. 常參·次對同爲入侍時, 行都承旨嚴璹, 左承旨徐有防, 右承旨李在學, 右副承旨李世奭, 同副承旨李秉模, 假注書趙衍德, 記事官金鳳顯, 先行四拜禮, 以次陞殿. …… 坤·尙鎭等曰, …… 丙申之於今日, 已爲五六年之久, 久則人心易狃, 大義易晦. 近所謂討逆之論, 滔滔皆應文備例之言, 而昧昧乎探本塞源之義, 臺閣故紙, 雖有相福·瑩中鞫問之請, 而覈根之請, 深文之說, 已是亂逆之斷案, 有何情節之更鞫耶? 今雖藏刑, 至於湖西之獄, 耽羅之逆, 旣施王章, 則何獨於此兩賊, 不擧誅討之典乎? 臣等謂相福·瑩中, 明施邦刑, 亟拔亂本, 其餘諸賊, 一竝允從三司之請焉. 上曰, 業已悉諭矣【出擧條】…….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15일(계미)

□ 탐라(耽羅)의 역(逆)에 대한 처단을 대신들과 논의함

○ 신축년 12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갔다. 상참 차대에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엄숙(嚴璹),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우부승지 이세석(李世奭), 동부승지 이병모(李秉模),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고 차례로 전에 올라갔다. 〈중략〉 이갑, 조상진 등이 아뢰기를, "〈중략〉 아! 병신년(1776년)은 금일에 이미 5, 6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되다 보면 인심이 쉽게 익숙해져서 대의(大義)가 어두워지기 쉬운 것입니다. 근래 이른바 토역(討逆)의 논의는 모두 형식에 응하여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데도 근본을 탐지하고 근원을 막는다는 뜻에 어둡고, 대각(臺閣)의 오래된 계사에 비록 김상복(金相福)과 송영중(宋瑩中)을 국문하라는 청이 있었으나, 국문의 근원을 조사하자고 청한 것과 심문(深文)에 대한 말은 이미 난역의 단안(斷案)이니, 다시 국문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장형(藏刑)했을지라도 호서(湖西)의 옥사와 탐라(耽羅)의 역적에 이르러서는 이미 왕법을 시행했습니다. 어찌 유독 이 두 적에만 주벌하는 형전(刑典)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 등이 김상복과 송영중을 분명하게 나라의 형률을 시행하고, 속히 난역의 뿌리를 뽑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역적들은 한꺼번에 모두 삼사(三司)의 청을 윤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다 하유하였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탐라, 김상복, 송영중.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二十日 戊子

○ 以濟州御使朴天衡渡海狀啓, 傳于趙鼎鎭曰, 觀此狀本, 爾能無事渡海, 極可幸也. 歲前復命與否狀聞事, 回諭.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20일(무자)

□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장계(狀啓)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도해장계(渡海狀啓)에 대해, 조정진(趙鼎鎭)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본(狀本)을 보건대, 그대가 무사히 도해(渡海)를 했으니, 매우 다행스럽다. 새해 전에 복명(復命)할지 여부를 장계로 보고하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장계.

❖ 乾隆 四十五年 辛丑 十二月 二十一日 己丑

○ 辛丑十二月二十一日辰時, 上御春塘臺. 宣傳官試講入侍時, 左承旨徐有防, 右承旨李在學, 右副承旨趙鼎鎭, 記事官趙興鎭, 假注書趙衍德, 記注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一直提學沈念祖, 二直提學鄭志儉, 以次進伏訖. …… 東萊府使李秉模, 義州府尹申大升, 旌義縣監李長益, 帳殿謝恩訖. …….

❖ 정조 5년(1781) 신축년 12월 21일(기축)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이 사은함

○ 신축년 12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갔다. 선전관(宣傳官)이 시강(試講)하러 입시한 자리에,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우부승지 조정진(趙鼎鎭), 기사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장현경(張顯慶),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일직제학 심염조(沈念祖), 이직제학 정지검(鄭志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동래부사 이병모(李秉模), 의주부윤 신대승(申大升),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이 장전(帳殿)에서 사은(謝恩)을 마쳤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이장익.

역주

문숙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췌

고수미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노우정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교정·교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역사 자료총서 27

承政院日記 濟州記事Ⅶ

- 正祖代 (1776~1781) (下) -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4년 12월 일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기 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9-11-990438-2-4 93900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